KINU 정책연구시리즈 11-06

DMZ 총람: 개요, 정치 · 군사적 현황

손기웅

KINU 통일연구원

KINU 정책연구시리즈 11-06

DMZ 총람: 개요, 정치·군사적 현황

손기웅

KINU 통일연구원

DMZ 총람: 개요, 정치·군사적 현황

인 쇄 2011년 12월
발 행 2011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통일정책연구센터

등 록 제2-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3 (팩시밀리) 901-2543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주)예원기획 (T. 02-745-8090)
인 쇄 처 (주)예원기획

ISBN 978-89-8479-618-8 93340
비매품

ⓒ 통일연구원, 2011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타: · 매장: 734-6818 · 사무실: 394-0337

DMZ 총람:
개요, 정치·군사적 현황

본 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발간사 ····· xi

Ⅰ. DMZ 개요 ····· 1

1. DMZ 정의 ····· 3

2. DMZ의 자연환경 현황 ····· 6

3. DMZ의 인문지리 현황 ····· 20

Ⅱ. DMZ 정치·군사적 현황 ····· 55

1. DMZ 설정의 정치·군사적 의미 ····· 57

2. DMZ의 정치적 기구 ····· 65

3. DMZ의 정치적 사건 ····· 68

4. DMZ의 군사적 의미와 현황 ····· 88

5. 군사적 측면에서 DMZ 평화적 이용사례 ····· 110

참고문헌 ····· 116

부록 ····· 119

최근 발간자료 안내 ····· 271

표 목차

[표 I-1] DMZ 개요 ····· 5
[표 I-2] DMZ 일원의 하천 ····· 10
[표 I-3] DMZ 일원의 산 ····· 12
[표 I-4] DMZ 일원의 습지 ····· 16
[표 I-5] DMZ 일원의 천연기념물 지정지역 현황 ····· 19
[표 I-6] 민통선내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지정현황 ····· 20
[표 I-7] DMZ를 포함하는 행정구역 ····· 21
[표 I-8] 민간인통제구역 개요 ····· 22
[표 I-9] 접경지역지원법시행령에 의한 접경지역의 범위 23
[표 I-10] 접경지역지원법시행령에 의한
접경지역의 면적과 인구 ····· 25
[표 I-11] 파주시 현황 ····· 26
[표 I-12] 연천군 현황 ····· 27
[표 I-13] 철원군 (남한) 현황 ····· 28
[표 I-14] 화천군 현황 ····· 29
[표 I-15] 양구군 현황 ····· 30

표 목차

[표 I-16] 인제군 현황 ····· 31
[표 I-17] 고성군 (남한) 현황 ····· 32
[표 I-18] 판문군 현황 ····· 33
[표 I-19] 장풍군 현황 ····· 34
[표 I-20] 철원군 (북한) 현황 ····· 35
[표 I-21] 평강군 현황 ····· 36
[표 I-22] 김화군 현황 ····· 37
[표 I-23] 금강군 현황 ····· 38
[표 I-24] 고성군 (북한) 현황 ····· 39
[표 I-25] DMZ 및 민통선내 남북 관통 포장도로 ····· 41
[표 I-26] DMZ 및 민통선내 검토 중인 남북 연결도로 ···· 42
[표 I-27] 남북철도연결 현황 ····· 45
[표 I-28] DMZ 및 민통선내 마을 현황 ····· 48
[표 I-29] 민통선내 농업활동 ····· 52
[표 I-30] DMZ 전망대 ····· 53
[표 II-1] 2000년대 이후 판문점에서의 주요 남북회담 ····· 80

표 목차

[표 II-2] 주요 위반사건 현황 ····· 92
[표 II-3] GP사건일지 ····· 96

그림 목차

[그림 I-1] DMZ ····· 3
[그림 I-2] DMZ 일원의 지형구분 ····· 6
[그림 I-3] DMZ 일원의 하천 ····· 9
[그림 I-4] DMZ 일원의 산, 산맥 ····· 11
[그림 I-5] DMZ 일원의 습지 ····· 15
[그림 I-6] DMZ 일원의 보호지역 ····· 18
[그림 I-7] DMZ 일원의 행정구역 ····· 20
[그림 I-8] 군사시설보호구역 ····· 22
[그림 I-9] DMZ 일원의 도로, 철도현황 ····· 40
[그림 I-10] 경의선철도 ····· 43
[그림 I-11] 동해선철도 ····· 44
[그림 I-12] 경원선, 금강산선 예상노선도 ····· 46
[그림 I-13] 경의선주변 도로망 ····· 46

그림 목차

[그림 I-14] DMZ 및 민통선내 마을현황 ····· 47
[그림 I-15] DMZ내 공동경비구역(판문점), 대성동, 기정동 위치 ····· 49
[그림 I-16] 공동경비구역 현황 ····· 50
[그림 I-17] DMZ 일원의 농업지역 ····· 51
[그림 I-18] DMZ의 전망대 ····· 52
[그림 II-1] 30분 만에 작성된 38선 지도와 38선임을 알리는 표지판 ····· 60
[그림 II-2] 1950년 1월 애치슨이 발표한 극동방위선 ····· 63
[그림 II-3] 중립국감독위원회 ····· 66
[그림 II-4] 이수근 귀순환영식 ····· 83
[그림 II-5] DMZ 일원의 땅굴 위치 ····· 101
[그림 II-6] 제1땅굴 ····· 102
[그림 II-7] 제2땅굴 ····· 105
[그림 II-8] 제3땅굴 ····· 107
[그림 II-9] 제4땅굴 ····· 109

부록 목차

1. 정전협정 ····· 121

2. 남북기본합의서 ····· 136
   2.1 남북기본합의서의 부속합의서 1 ····· 139
   2.2 남북기본합의서의 부속합의서 2 ····· 142
   2.3 남북기본합의서의 부속합의서 3 ····· 145

3. 비무장지대 일부구역 개방에 대한 국제연합군과 조선인민군간 합의서 ····· 150

4.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도로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 ····· 151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155
   5.1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 180
   5.2 군사시설보호법 시행규칙 ····· 190

6. 접경지역지원법 ····· 196
   6.1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 ····· 227

7. 자연환경보전법 ····· 238

발간사

비무장지대(Demilitarized Zone: DMZ). 타의에 의해 주어졌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를 굴레처럼 휘감고 있는 단어. 그러나 우리는 DMZ를 모른다. 한반도의 허리를 몇 번이나 자르고 있는 철조망, 만리장성의 망루 마냥 우뚝 솟은 서로의 감시탑과 오가는 군인들. 이것이 과거에도 그렇듯이 현재의 DMZ를 상징한다.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지, 한반도 고유 토종의 생존 공간, 청정한 공기, 토양과 물. DMZ가 이러한 '생태계의 보고'라면서 너도 나도 주장을 해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 오히려 접경지역이 잘 보전되어 있는 반면에 DMZ 자체는 군사적 요구에 의해 훼손되어 잡목만 무성하다고 하는 이들도 있다.

DMZ는 한반도의 중심에 놓여 있다. 이 땅에서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고자, 평화 속에서 남북의 상생공영을 실현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의 노력은 DMZ를 피해갈 수 없다. DMZ가 포함되지 않는 한반도 평화의 꿈은 사상누각일 뿐이다. DMZ를 둘러싼 남북간 대립과 갈등이 존재하는 한, DMZ가 어느 때건 요동칠 가능성이 존재하는 한 이 땅에서의 평화회복과 평화유지는 탁상공론이다. 어떻게든 DMZ를 그 태어난 목적대로 '비무장지대화' 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그 전제는 DMZ에 대한 구체적 이해와 실상의 파악이다. 『DMZ 총람』 발간목적이 여기에 있다. 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현실에서도 가능한 한 DMZ를 소개해보고자 한다. 태생의 배경과 의미, 개념정의, 인문·자연

지리적 현황, 정치·군사적 의미와 현황. 환경·생태적 및 문화·관광적 의미와 현황 등.

먼저 그 중에서 DMZ의 개념과 정치·군사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DMZ에 관심을 가지는, 한반도 평화와 상생공영에 노력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I. DMZ 개요

1. DMZ 정의

[그림 I-1] DM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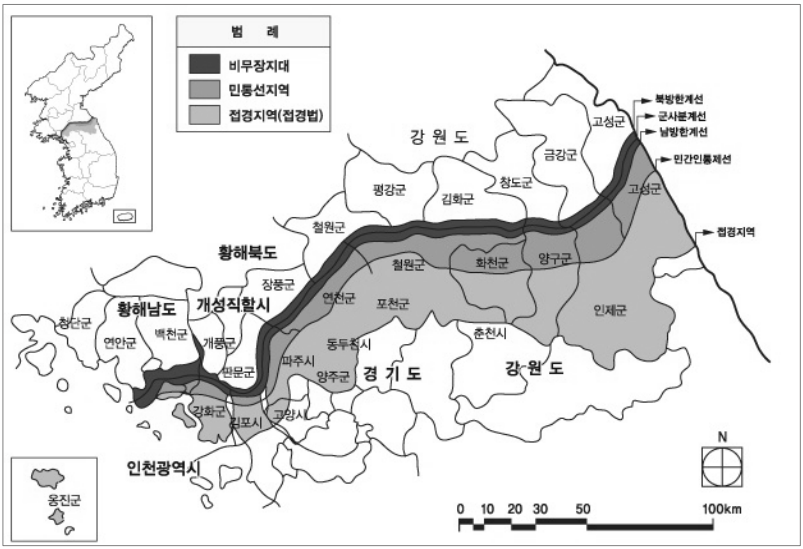

출처: 김귀곤·박미영·최희선, "DMZ자연생태계의 현황과 보전,"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편, 『DMZ생태계와 한반도 평화』 (서울: 아카넷, 2004), p. 221.

비무장지대(이하 DMZ)는 국가가 자신의 영토임에도, 국제법상 병력 및 군사시설을 주둔시키지 않을 의무를 가지는 특정 지역이나 구역을 지칭하는 말이다. 즉, 군사적 충돌이 이미 발생하였거나 혹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군사적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 둘 이상의 당사자 국가들이 일정한 지역을 비무장화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와 같이 비무장화가 약속된 지역을 DMZ라 한다. DMZ는 충돌 당사자들 사이에 완충지대를 두어 군사적인 직접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이고 상호감시가 가능한 격리공간을 만들어 둠으로써 기습적인 공격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다. 따라서 DMZ는 적대적인 국가 사이에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러한 상태의 지속을 통해 당사자들 사이의 신뢰를 쌓음

으로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다.

한국의 DMZ는 6·25의 전후 처리를 위해 1953년 7월 27일 국제연합군 총사령관과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 사이에 맺어진 정전협정 제1조[1]에 의해서 만들어 졌다. 이 협상에서 협상 당사자들은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남과 북 양측이 이 선으로부터 2㎞씩 물러나는 완충지대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기 위해서 휴전당시 유엔군과 북한군 사이의 전투 배치상황을 중심으로 임진강 하구에서부터 동해안 고성까지 천여 개의 군사분계선 표지판을 세웠고 이 표지판을 잇는 선이 군사분계선이 되었다. 이렇게 정해진 155마일(248㎞)의 군사분계선 남북으로 각각 2㎞너비의 DMZ가 만들어졌다. DMZ의 관리와 감시기관으로는 정전협정 제19항~제23항에 의해 설치된 군사정전위원회와 공동감시소조, 정전협정 제36항~제43항에 의해 설치된 중립국감독위원회와 중립국시찰소조가 있지만 DMZ에서 발생한 사건들의 처리는 대부분 군사정전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관리와 '감시'는 DMZ에 인접한 남북한의 군부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DMZ의 범위에 관해서는 DMZ 설정 당시 측정이 엄밀하지 못하였고 남과 북이 군사적 목적 등으로 인해 설정된 DMZ 안쪽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의 이유로 남북으로 2㎞씩 물러난다는 규정이 엄격하게 지켜진 것은 아니며 폭이 1㎞에 미치지 못하는 곳도 존재한다.

DMZ는 전체적으로 한반도의 '정중앙'을 동서로 나누면서 가로지르는 좁고 긴 띠 모양의 지역(對象地形)이며 파주, 철원 등지는 6·25 이

---

[1] 정전협정 제1조 1항에 DMZ에 관해서 "한 개의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線으로부터 각기 2㎞씩 후퇴함으로써 適對 군대간에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한다.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하여 이를 완충지대로 함으로써 적대행위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을 방지한다."라고 명시되었다.

전 교통, 농업 등의 요지가 많이 존재했던 곳이기도 하다. DMZ의 물리적 정의는 [표 I-1]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표 I-1] DMZ 개요

<table>
<tr><td rowspan="2">위치[2]</td><td>동서</td><td colspan="3">동경 126°2’ - 동경 128°35’</td></tr>
<tr><td>남북</td><td colspan="3">북위 37°34’ - 북위 38°36’</td></tr>
<tr><td>너비</td><td colspan="4">약 4㎞ (군사분계선 기준 남북 2㎞)</td></tr>
<tr><td rowspan="2">길이</td><td>경기도</td><td>103㎞</td><td rowspan="2">248㎞</td></tr>
<tr><td>강원도</td><td>145㎞</td></tr>
<tr><td rowspan="2">면적</td><td>경기도</td><td>375㎢</td><td rowspan="2">907㎢</td></tr>
<tr><td>강원도</td><td>529㎢</td></tr>
<tr><td rowspan="2">강수량[3]</td><td>경기도</td><td colspan="2">1,490.69㎜</td></tr>
<tr><td>강원도</td><td colspan="2">1,401.04㎜</td></tr>
<tr><td rowspan="4">DMZ포함 행정구역</td><td rowspan="2">남</td><td>경기도</td><td>파주시, 연천군</td></tr>
<tr><td>강원도</td><td>철원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td></tr>
<tr><td rowspan="2">북</td><td>개성직할시</td><td>판문군, 장풍군</td></tr>
<tr><td>강원도</td><td>철원군, 평강군, 김화군, 금강군, 고성군</td></tr>
</table>

[2]- DMZ의 남방한계선과 북방한계선을 기준으로 한 위치이다.
[3]- 1980년부터 2000년까지 접경지역을 기준으로 측정한 평균 강수량이다.

2. DMZ의 자연환경 현황

가. 지형개요

[그림 I-2] DMZ 일원의 지형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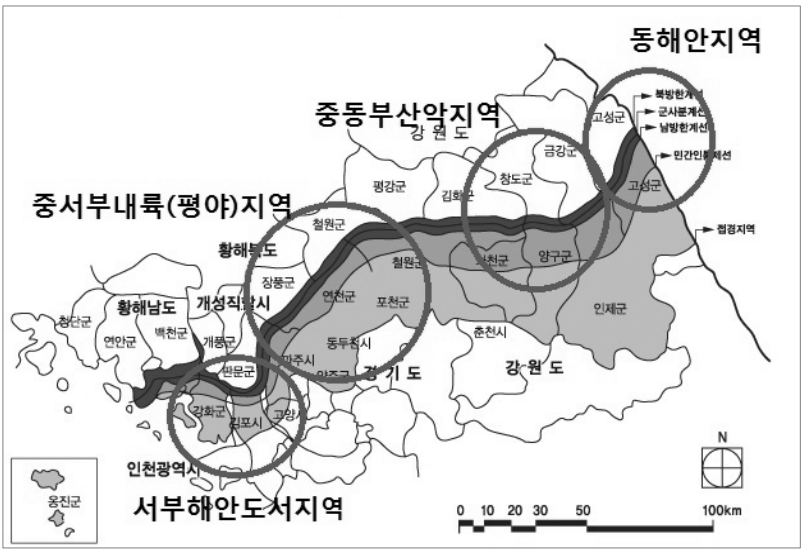

한반도의 동-서 단면은 일반적으로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한 동고서저(東高西低)의 형태를 띤다. DMZ의 지형 역시 이러한 한반도의 지형 특성을 따라 태백산맥 동부의 급사면과 서부의 완경사면이 비대칭으로 나타난다.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서쪽으로 고성, 인제, 화천 등은 표고 1,000~1,700m의 태백산맥의 장년산지가 이어져 있으며 서쪽으로 갈수록 낮아져 철원, 화천에 이르러 준산지와 표고 400m이하의 구릉지가 펼쳐진다. 파주, 김포, 강화를 거쳐 서해에 이르면서 평야지대와 하구저습지 등 평지지형을 형성한다. 태백산맥의 동쪽으로는 급경사가 이어지며 동해안에 접어들며 해안선을 따라 남북으로 뻗은 좁은 평

야를 만들어 낸다. 또한 한반도의 지질을 남북으로 양분하는 추가령 구조곡도 DMZ를 지나는데, 연천과 파주를 지나며 완만한 구릉지를 형성해 남과 북을 연결하는 통로 구실을 한다.

나. 지형구분

(1) 서부해안·도서지역

주로 낮은 구릉지와 넓은 충적지, 벌판 등이 펼쳐져 있는 지형이다. 임진강, 한강 하류에는 퇴적에 의해 발달한 넓은 갯벌이 이어진다. 이 벌판은 해안의 저습지 등과도 연결되어 넓게 펼쳐진 경관을 보여 준다. 농업과 교통 등에 유리하여 사람들의 활동이 많은 곳이며 개성을 중심으로 한 북한과의 경제 교류도 이 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2) 중서부내륙 평야지역

태백산맥의 완만한 서쪽사면을 타고 완만한 구릉지와 평야가 넓게 펼쳐진 곳이다. 임진강 등 수자원도 풍부하다. 이러한 이유로 예로부터 농업과 물류, 교통의 중심지였다. 특히 신생대 제4기에 현재 북측 DMZ 넘어 있는 평강군 검불랑과 오리산으로부터 용암이 천천히 분출되어 임진강 하류의 문산까지 흘러내린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러한 화산의 활동이 지금의 철원평강용암대지와 철원평야를 만들었다.

더불어 이 지역을 지나는 추가령 구조곡은 북북서쪽으로 완만한 구릉지가 뻗어나가는 지형을 만들어서 남과 북을 이어주는 귀한 통로가 되고 있다. 실제로 과거의 길과 철도가 모두 추가령 구조곡을 따라서 만들어 졌으며 경원선의 복원 역시 이 루트를 따르고 있다.

게다가 이 부근을 가로지르는 임진강도 연천 부근에서 얕은 여울을 형성하여 겨울 혹은 갈수기시 배 없이도 건널 수 있는 이점이 있어 고대로부터 유용한 교통로가 되었다. 광개토대왕의 남진, 북한 기갑사단의 서울침투, 1·21 청와대 무장공비 침투사건 등이 모두 이 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이유로 앞으로 논의될 DMZ 인근의 인문지리학적 대상물들의 가장 많은 수가 이 지역에 존재한다.

(3) 중동부 산악지역

화천, 양구, 인제 등의 지역을 가로지르는 태백산맥의 영향으로 험준하고 높은 지형을 이룬다. 인간활동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자연환경의 보존이 상대적으로 잘 되어 있으며, 좋은 경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4) 동해안 지역

태백산맥 동쪽의 급사면을 따라 이루어진 지형이다. 해안가는 기계적 풍화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모래가 쌓인 사빈(沙濱), 사취(砂嘴) 등의 지형이 발달하였고 석호(潟湖)등 특수한 해안지형이 많이 발달하였다. 따라서 농업이 발달하기는 어렵지만, 풍부한 수산자원 및 경관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다. 해안을 따라서는 좁지만 남북으로 긴 평지가 발달하여 한반도의 동부지역에서 남북을 이어주는 통로 역할을 한다.

다. DMZ 일원의 하천

[그림 I-3] DMZ 일원의 하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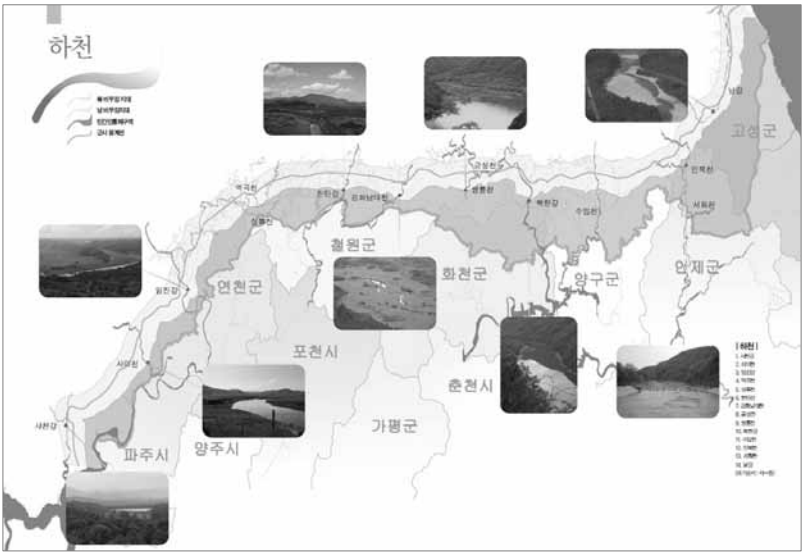

출처: 녹색연합, 『DMZ 155마일을 걷다: 2008 비무장지대일원 환경실태 보고서』(서울: 도서출판 작은것이 아름답다, 2008), pp. 41~42.

DMZ 및 민통지역에는 크게 5개의 강인 임진강, 한탄강, 북한강, 소양강, 남강이있으며 남강을 제외한 4개의 강은 모두 그 본류가 북한에서 흘러 남한으로 관통하여 최종적으로 서해로 빠져나간다. 이렇게 DMZ 일원에 걸쳐있는 이들 수계는 각각의 유역별로 지류가 형성되어 있는데, 임진강에서는 사미천, 사천천, 멸공천 등이 한탄강에서는 역곡천, 북한강에서는 두타연의 계곡, 소양강에서는 인북천, 서화천이, 남강에서는 사천이 그 유역에 포함되어 있다.

[표 I-2] DMZ 일원의 하천

수계명	구분	등급	발원지	기점	종점
임진강	사천강	지방 1	황해도 장단군 소남면, 백학면 경계 용호산	경기, 파주, 군내, 휴전선	경기, 파주, 장단, 임진강(국가)합류점
	사미천	지방 2	개성직할시 장풍군 서쪽 자라봉	경기, 연천, 백학, 두현리	경기, 연천, 백학, 임진강(국가)합류점
	임진강	국가	북강원도 법동군 용포리(룡포리)의 두류산	경기, 연천, 왕징, 휴전선	경기, 파주, 탄현, 한강(국가)합류점
	역곡천		평강군	철원읍 백마고지를 감싸고 돌아 서쪽으로 DMZ와 평행으로 흘러 강원도와 경기도의 경계	연천군 중면 적음리에서 임진강과 합류
	상류천		서방산 자락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내포리, 판교리	DMZ 안에서 역곡천과 합류
	한탄강	지방 1	북 강원도 평강군 장암산	강원, 철원, 근북, 휴전선	경기, 연천, 군남, 임진강(국가)합류점
	김화남대천	지방 1	북 강원도 금성면 어천리 수리봉	강원, 철원, 근동, 휴전선	강원, 철원, 김화, 한탄강(지방1)합류점
북한강	금성천		북 강원도 회양군 잠간덕산		강원도 철원군 DMZ에서 북한강과 합류
	쌍룡천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백마골 골짜기	남방한계선	DMZ에서 금성천과 합류
	북한강	국가	금강천(금강산 발원)이 강원도 철원군 원동면에서 금성천을 합친 후 북한강이라는 이름으로 흐름	강원, 화천, 화천, 휴전선	경기, 양평, 양서, 한강(국가)합류점
	수입천	지방 2	북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지혜산	강원, 양구, 방산, 휴전선	강원, 양구, 양구, 양구서천(국가)합류점

<표 계속>

수계명	구분	등급	발원지	기점	종점
	인북천	지방 1 지방 2	북 강원도 인제군 이포리 북쪽	강원, 인제, 서화, 가전리 휴전선	강원, 인제, 서화, 인북천 (지방1)기점
	서화천	지방 2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매봉산	강원, 인제, 서화, 동개동	강원, 인제, 서화, 인북천(지방2)합류점
동해안	남강		북 강원도 고성군 차일봉	군사분계선	동해로 합류

출처: 녹색연합, 『DMZ 155마일을 걷다』, p. 44; 최성록·박은진, "DMZ 일원의 주요자원의 보전가치 추정연구," (춘천: 강원발전연구원·서울: 경기개발연구원, 2010), p. 63을 근거로 작성.

라. DMZ 일원의 산, 산맥

[그림 I-4] DMZ 일원의 산, 산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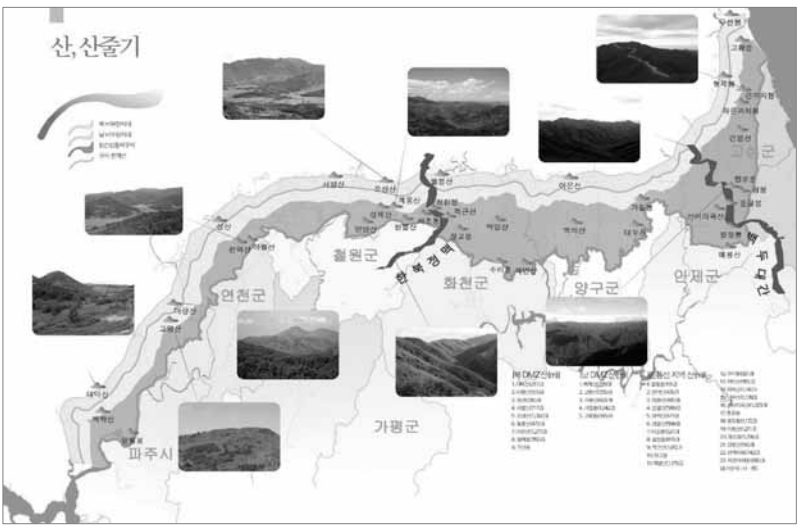

출처: 녹색연합, 『DMZ 155마일을 걷다』, pp. 41~42.

DMZ는 산지가 76.6%로 전체의 3/4을 차지하고 있다. 한반도의 일반적인 지형과 마찬가지로 태백산맥이 지나가는 동쪽 산악지역에 높고 험준한 산이 많이 발달하였다. 한북정맥이 지나가는 화천과 철원인근에도 약간 높은 산지가 발달하였는데, 그 사이에 있는 양구나 인제 등지에는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움푹 들어간 지형인 분지가 많이 발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산지가 많은 것에 비해서 삼림이 울창한 정도인 임목축적량(林木蓄積量)은 높지 않은데 이는 군사작전으로 인한 산불 등의 이유로 숲이 우거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최근 DMZ 일원의 개발이 가속화되는 현상과 맞물려 이러한 초지화는 산사태 등을 야기해 DMZ 일원의 산지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표 I-3] DMZ 일원의 산

구분	지역		이름(해발m)	위치
DMZ내	경기도	파주시	백학산(229.0)	진서면, 군내면 경계(남 DMZ)
			대덕산(237.0)	진서면, 연천 백학면 경계(북 DMZ)
		연천군	고왕산(355.0)	왕징면 고왕리(남 DMZ)
			마량산(315.0)	왕징면(북 DMZ)
			성산(290.0)	신서면 승양리(북 DMZ)
	강원도	철원군	서방산(717.0)	갈말읍 당원리(북 DMZ)
			오성산(1062.0	철원군 근동면(북 DMZ)
			계웅산(603.9)	철원군 김화읍 감봉리(남 DMZ)
			월봉산(472.0)	철원군 월봉리(북 DMZ)
		양구군	어은산(1277.0)	방산면 수청리(북 DMZ)
			가칠봉(1242.2)	동면, 해안면 경계(남 DMZ)

<표 계속>

구분	지역		이름(해발m)	위치
DMZ내	강원도	고성군	형제봉(350.0)	북 DMZ
			고황봉(365.0)	수동면, 현내면 경계(남 DMZ)
			구선봉	북 DMZ
	경기도	파주시	백학산(229.0)	진서면, 군내면 경계(남 DMZ)
			대덕산(237.0)	진서면, 연천 백학면 경계(북 DMZ)
		연천군	고왕산(355.0)	왕징면 고왕리(남 DMZ)
			마량산(315.0)	왕징면(북 DMZ)
			성산(290.0)	신서면 승양리(북 DMZ)
	강원도	철원군	서방산(717.0)	갈말읍 당원리(북 DMZ)
			오성산(1062.0	철원군 근동면(북 DMZ)
			계웅산(603.9)	철원군 김화읍 감봉리(남 DMZ)
			월봉산(472.0)	철원군 월봉리(북 DMZ)
		양구군	어은산(1,277.0)	방산면 수청리(북 DMZ)
			가칠봉(1,242.2)	동면, 해안면 경계(남 DMZ)
		고성군	형제봉(350.0)	북 DMZ
			고황봉(365.0)	수동면, 현내면 경계(남 DMZ)
			구선봉	북 DMZ
민통선 지역내	경기도	파주시	일월봉(191.2)	진동면
		연천군	천덕산(476.7)	신서면
			야월산(485.9)	연천군 신서면과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경계

<표 계속>

구분	지역		이름(해발m)	위치
민통선 지역내	강원도	철원군	안암산(588.0)	김화읍
			성제산(471.0)	근북면, 김화읍 경계
			천불산(584.8)	김화읍, 근동면, 근남면 경계
			비조봉(637.0)	근동면, 근남면 경계
			삼천봉(815.0)	근동면, 근남면, 원남면 경계(한북정맥 주능선)
			적근산(1,073.1)	원남면, 화천군 상서면 경계(한북정맥 주능선)
			장고봉	원남면, 화천군 상서면 경계
			백암산(1,179.2)	원동면, 화천군 화천읍 경계
		화천군	수리봉(921.9)	화천읍
			재안산(955.3)	화천읍
		양구군	백석산(1,140.1)	방산면
			대우산(1178.5)	동면
		인제군	산머리곡산(1,023.9)	서화면
			동굴봉	인제군 서화면, 고성군 간성읍 경계
			칠절봉(1,172.2)	인제군 서화면, 북면, 고성군 간성읍 경계
			매봉산(1,271.1)	서화면, 북면 경계
		고성군	향로봉(1,296.3)	고성군 수동면, 간성읍 경계(백두대간 주능선)
			건봉산(910.8)	수동면
			큰까치봉(742.0)	수동면, 현내면 경계
			작은까치봉(682.0)	수동면, 현내면 경계

출처: 녹색연합, 『DMZ 155마일을 걷다』, p. 49; 최성록·박은진, "DMZ 일원의 주요자원의 보전가치 추정연구," p. 62를 근거로 작성.

마. DMZ 일원의 습지

[그림 I-5] DMZ 일원의 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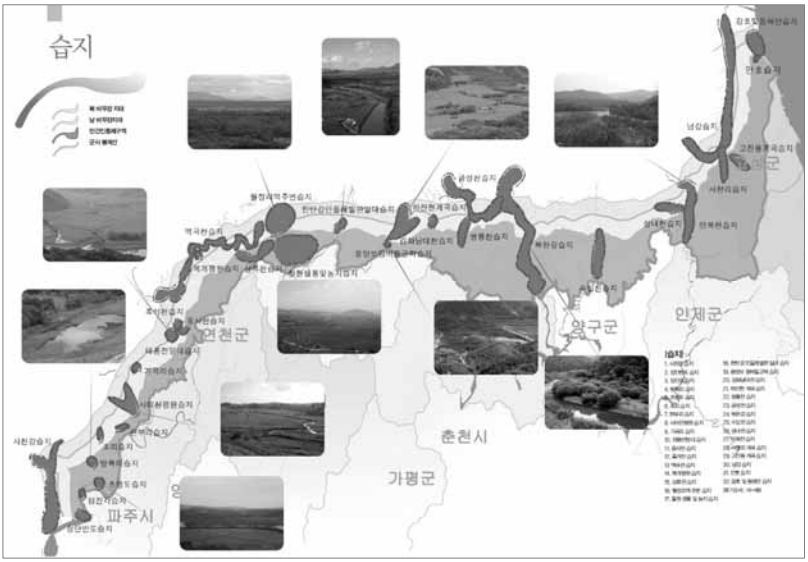

출처: 녹색연합, 『DMZ 155마일을 걷다』, pp. 41~42.

DMZ 일대의 특징적인 환경중 하나는 람사르 협약(Ramsar Convention)에 등재된 것으로 유명한 강원도 인제군 대암산의 '용늪'과 같은 습지의 발달이다. 강물과 바닷물이 섞이면서 동해안의 감호 같은 석호를 형성되기도 하여 해안습지가 자연적으로 발달하는 경우도 있지만 과거 농경지나 취락지가 60여 년의 기간 동안 묵논으로 방치되거나 농경을 위한 저수지 등이 방치됨에 따라 생겨난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다양한 습지의 분포는 DMZ 일원의 생태서식처의 가장 큰 특징이며 연구 및 보존과제가 되고 있다.

[표 I-4] DMZ 일원의 습지

지역	시도	이 름	위 치
DMZ	경기도	사천강 습지	개풍군, 파주시 경계, 사천강 유역
		사미천평원 습지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오음리, 청연리, 갈현리
		기곡리 습지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기곡리 일대
		태풍전망대 습지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고장리 일대
		중사천 습지	경기도 연천군 중면 중사리 일대
		흑석천 습지	경기도 연천군 중면 흑석동 일대
		역곡천 습지	경기도 연천군 중면,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역곡천 유역
		복개평원 습지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복개 일대
	강원도	월정리역 주변 습지	강원도 평강군 북면 월정리, 유정리, 철원군 동송읍 중강리 일대
		한탄강 민들레벌판 일대 습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근북면 경계, 남방한계선 한탄강 유역
		김화 남대천 습지	강원도 철원군 근동면 하소리, 신촌리, 방통리 일대 김화 남대천 유역
		하진현 계곡 습지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하진현 계곡 일대
		금성천 습지	강원도 철원군 원동면 금성천 유역
		성내천 습지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성내천 유역
		남강 습지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남강 유역
		감호 및 동해안 습지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감호, 동해안 일대
DMZ와 민통선	강원도	북한강 습지	강원도 철원군 원동면, 임남면 경계, 화천군 화천읍 북한강 유역
		수입천 습지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문등리, 건솔리 수입천 유역

<표 계속>

지역	시도	이 름	위 치
DMZ와 민통선	강원도	인북천 습지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장승리, 송노평, 가전리 인북천 유역
		사천리 계곡 습지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사천리 일대
		고진동 계곡 습지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고진동 계곡 일대
민통선	경기도	장단반도 습지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거곡리 장단반도
		임진각 습지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임진각 주변
		방목리 습지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방목리 일대
		초평도 습지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장산리 초평도
		초리 습지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초리 일대
		판부리 습지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판부리 일대
	강원도	상류천 습지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상류천 유역
		철원 샘통 및 농지습지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내포리, 외촌리, 천통리, 철원군 동송읍 하갈리 일대, 토교저수지 주변
		용양보 왕버들군락 습지	강원도 철원군 암정리 용양보 일대
		쌍룡천 습지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쌍룡천 일대
		안호 습지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통일전망대

출처: 녹색연합, 『DMZ 155마일을 걷다』, p. 52; 최성록·박은진, "DMZ 일원의 주요자원의 보전가치 추정연구," p. 65를 근거로 작성.

바. DMZ 일원의 자연보호지역

[그림 I-6] DMZ 일원의 보호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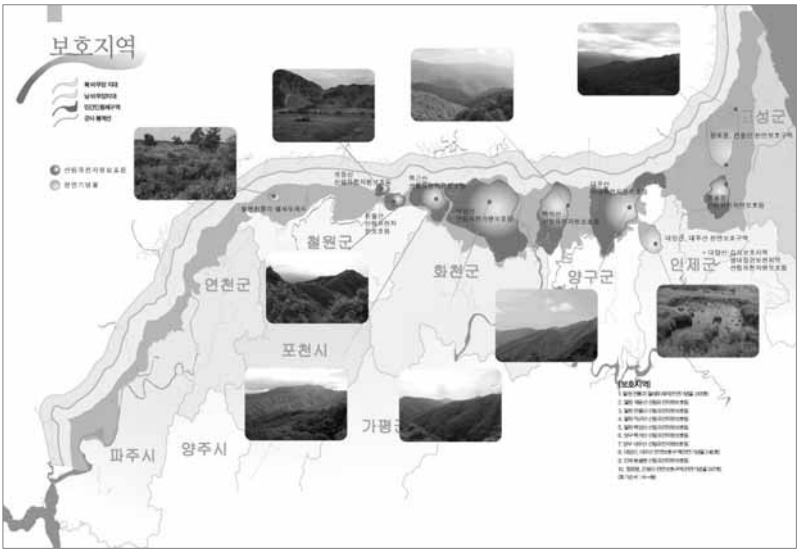

출처: 녹색연합, 『DMZ 155마일을 걷다』, pp. 41~42.

DMZ 일원은 인간의 손이 60년 동안 닿지 않고 지내왔기 때문에 자연환경이 잘 지켜져 왔다. 많은 멸종위기의 동물들이 DMZ 안에서 살아가고 있을 뿐 아니라, 한반도에서는 DMZ 일원에서만 자생하는 희귀한 생물종들이 많으며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반도에서 겨울을 나기 위해 날아오는 두루미 등 보호가 필요한 철새들에게도 DMZ는 귀중한 생존의 터전이 되고 있다. DMZ는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손꼽히며 생물종 다양성 및 환경 보전을 위한 노력이 현재도 DMZ 일원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I-5] DMZ 일원의 천연기념물 지정지역 현황

구분	천연기념물명	위치	지정면적	지정년도	천연기념물
접경지역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인천시 강화군	370,667,483㎡	2000	제419호
접경지역	파주적성면 물푸레나무	경기 파주시 적성면 무건리 465	약 441㎡	1982	제286호
접경지역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경기 파주시 교하면, 김포군 한강변의 충적퇴적지역	약 23,744,000㎡	1975	제250호
접경지역	양주남면 느티나무	경기 양주시 남면 황방리 136외	약 1,084㎡	1982	제278호
접경지역	연천은대리 물거미 서식지	경기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693-18번지 등	약 103,360㎡	1999	제412호
접경지역	한탄강 대교천 현무암계곡	경기 포천시 관인면 냉정리 1101 등	약 199,960	2004	제436호
접경지역	양구 개느삼 자생지	강원 양구군 양구읍, 한전리 산54, 동면 임당리 산148, 149	약 13,200㎡	1992	제372호
민통지역	대암산 대우산 천연보호구역	강원 양구군 동면 일부, 인제군 서화면 일부 및 북면일부	약 30,743,940㎡	1973	제246호
민통지역	철원 천통리 철새도래지	강원 철원군 철원읍 일부	약 396,696㎡	1973	제245호
접경지역	한탄강 대교천 현무암계곡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약 199,960㎡	2004	제436호
민통지역	향로봉, 건봉산 천연보호구역	강원 인제군 서화면 일부, 고성군 수동면 일부, 간성읍 일부	약 83,306,1㎡	1973	제247호
접경지역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강원도 속초시 인제군, 양양군 일부	약 173,691,246㎡	1965	제171호

출처: 코리아DMZ협의회, 『DMZ총람』 (서울: 늘품플러스, 2011), pp. 79~80.

[표 I-6] 민통선내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지정현황

명칭	지정년도	위치	면적
계웅산 산림유전자원보호림	2006.12.6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암정리, 감봉리	225ha
천불산 산림유전자원보호림	2006.12.6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용양리, 근남면 양지리, 근동면 광삼리	886ha
적근산 산림유전자원보호림	2006.12.6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화천군 상서면 마현리	1,849ha
백암산 산림유전자원보호림	2006.12.6	강원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세현리,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	8,617ha
백석산 산림유전자원보호림	2006.10.4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천미리	3,827ha
대우산 산림유전자원보호림	2006.12.6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오유리, 동면 비아리	3,657ha
동굴봉 산림유전자원보호림	2006.10.4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1,758ha

출처: 코리아DMZ협의회, 『DMZ총람』, p. 81.

3. DMZ의 인문지리 현황

가. DMZ일원 행정구역 현황

[그림 I-7] DMZ 일원의 행정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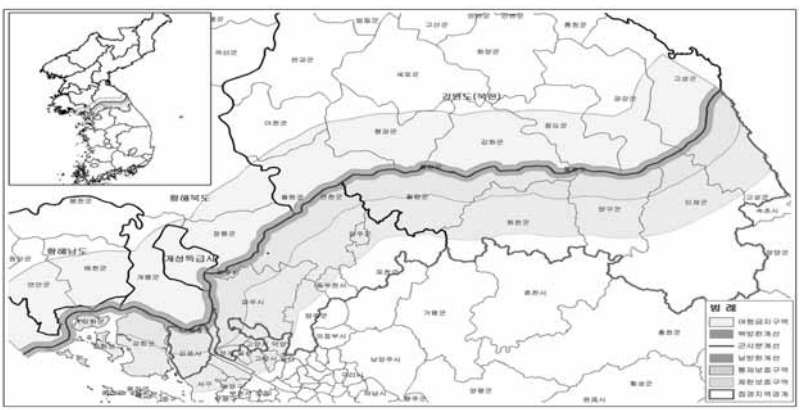

출처: 코리아DMZ협의회, <http://www.kdmz.org>.

(1) DMZ를 포함하는 행정구역

DMZ 일원에는 군사·안보적 목적 등에 의해 다양한 구역이 나뉘는데 대표적인 것이 DMZ, 민간인출입통제구역, 접경지역이다. 보통의 경우에는 DMZ 일원, 접경지역 등으로 통칭하여 쓰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구역을 구분하고 이 구분이 해당하는 지역이 어디인지 확인하여, 각 행정구역별 특징을 확인하고자 한다. 실제 DMZ를 포함하는 행정구역은 [표 I-7]과 같다.

[표 I-7] DMZ를 포함하는 행정구역

DMZ포함 행정구역	남	경기도	파주시, 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북	개성직할시	판문군, 장풍군
		강원도	철원군, 평강군, 김화군, 금강군, 고성군

(2) 민간인출입통제구역

민간인출입통제구역(民間人出入統制區域, Civilian Control Zone, CCZ, 민통선지역, 민북지역), 민통선은 처음에는 동해안에서 서해안까지, DMZ 남방한계선에서 5~20㎞ 간격으로 설정되었다. 하지만 북한과의 이념경쟁이 약화된 1990년 이후부터 민통선 내 주민들의 민통선 범위 및 제한요건 등에 대한 완화요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1997년에 민통선의 범위가 남방한계선 20㎞에서 15㎞로 축소되었다가 2007년 7월 국회 국방위는 기존 5~15㎞이던 민간인통제구역을 5~10㎞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표 I-8] 민간인통제구역 개요

면적 (1954)	경기도	480㎢	1,048㎢
	강원도	1,048㎢	
면적 (2002)	경기도	659㎢	2,720㎢
	강원도	1,889㎢	
	인천시	180㎢	
포함행정 구역	경기도	강화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양구군, 화천군, 인제군, 고성군	

(3) 군사시설보호구역

[그림 I-8] 군사시설보호구역

출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시장 영향은?," 『매일경제』, 2008년 9월 22일,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08&no=578491>.

민간인통제선과 유사한 또 다른 구분이 있는데 그것은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민간인통제지역'이다. 현행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하면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군사분계선 남방에 설정하는 구역이다. 민간인통제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서 설정된다.

(4) 접경지역

접경지역이란 일반적으로 인접하는 국가들 간의 국경지대를 일컫는 말이므로 DMZ일원 전체를 접경지역으로 볼 수 있으나 법적 의미에서 접경지역은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 제1호에서 지정한 곳을 말한다. 2000년 8월 28일 제정된 지원범위에서는 민통선 이남으로부터 20㎞내의 시·군에 속한 읍·면·동 행정구역으로서 인구증감률, 도로포장률, 상수도보급률, 제조업종사자 비율, 군사시설보호구역 점유비율의 5개 지표 중 3개 이상의 지표가 전국 평균보다 저조한 지역으로 한정한다.

[표 I-9] 접경지역지원법시행령에 의한 접경지역의 범위

구분	시·군 별	행정구역 (읍·면·동)
합계	15시·군	15읍·76면·7동 (합계 98)
인천광역시 (17)	강화군 (1읍·12면)	강화읍, 교통면, 삼산면, 서도면, 송해면, 양사면, 하점면, 내가면, 선원면, 불은면, 길상면, 화도면
	옹진군(4면)	대청면, 백령면, 연평면, 북도면
경기도 (46)	동두천시(4동)	불현동, 소요동, 보산동, 상패동
	고양시(3동)	송산동, 고봉동, 송포동

<표 계속>

구분	시·군 별	행정구역 (읍·면·동)
경기도 (46)	파주시 (3읍·10면)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교하면, 적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월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진서면
	김포시(5면)	월곶면, 통진면, 하성면, 대곶면, 양촌면
	양주군(5면)	남면, 은현면, 광적면, 백석면, 장흥면
	연천군(2읍·8면)	연천읍, 전곡읍, 군남면, 미산면, 청산면, 중면, 장남면, 신서면, 백학면, 왕징면
	포천군(6면)	관인면, 창수면, 영북면, 영중면, 신북면, 이동면
강원도 (35)	철원군(4읍·7면)	철원읍, 김화읍, 동송읍, 갈말읍, 서면, 근남면, 근북면, 근동면, 원동면, 원남면, 임남면
	화천군(1읍·4면)	화천읍, 사내면, 하남면, 간동면, 상서면
	양구군(1읍·4면)	양구읍, 동면, 방산면, 해안면, 남면
	인제군(1읍·5읍)	인제읍, 서화면, 남면, 북면, 기린면, 상남면
	고성군(2읍·4면)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토성면, 죽왕면, 수동면

출처: 김재한 외, 『DMZ Ⅲ - 접경지역의 화해·협력』 (서울: 소화, 2002), p. 25.

[표 I-10] 접경지역지원법시행령에 의한 접경지역의 면적과 인구

시·군별	읍·면·동		면적㎢		인구(명)	
	전체	대상	전체	대상	전체	대상
합계	175	98	9,665.89	8,097.17	1,987,659	656,472
옹진군	7면	4면	163.92	86.62	14,056	8,860
강화군	1읍·12면	1읍·12면	410.83	410.83	67,924	67,924
동두천	7동	4동	95.66	91.93	74,665	48,826
고양시	2구·35동	3동	267.31	57.76	772,390	22,337
파주시	2구·3읍·11동	3읍·10동	682.60	631.27	181,496	118,980
김포시	3동·6면	5면	276.59	217.61	148,066	56,378
양주군	1읍·6면	5면	309.77	224.02	108,309	55,412
연천군	2읍·8면	2읍·8면	696.33	696.33	53,766	53,766
포천군	2읍·11면	6면	827.09	493.81	144,912	46,268
춘천시	1읍·9면·15동	2면	1,116.35	367.55	248,370	4,016
철원군	4읍·7면	4읍·7면	898.82	898.82	53,946	53,946
화천군	1읍·4면	1읍·4면	909.46	909.46	25,544	25,544
양구군	1읍·4면	1읍·4면	700.68	700.68	23,756	23,756
인제군	1읍·5면	1읍·5면	1,646,33	1,646,33	34,090	34,090
고성군	2읍·4면	2읍·4면	664,15	664,15	36,369	36,369

출처: 김재한 외, 『DMZ III - 접경지역의 화해·협력』, p. 26.

(5) DMZ를 포함하는 행정구역 현황

여기에서는 DMZ를 포함하는 남북의 시·군별 행정구역의 현황과, 그 행정구역의 내부에서 실제 DMZ와 민간인통제선이 지나가는 읍·면·동·리의 목록을 표로 기재하였다. 특히 북측 읍·면·동·리의 목록에는 마주보는 남측의 행정구역을 기록하여 서로 비교할 수 있게 하였다. 모든 지명은 '서에서 동' 순이다.

(가) 남한지역

1) 파주시

[표 I-11] 파주시 현황

행정구역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교하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진서면, 금촌1동, 금촌2동 등 (5개읍 9개면 2개동) 시청소재지: 아동동 시청로
DMZ 경계	장단면 도라산리-군내면 점원리~방목리-진동면 초리
민통선 경계	문산읍 통일대교~마정리~장산리-파평면 전진교~장좌리
주요시설	JSA, 판문점, 도라산역, 임진각, 경의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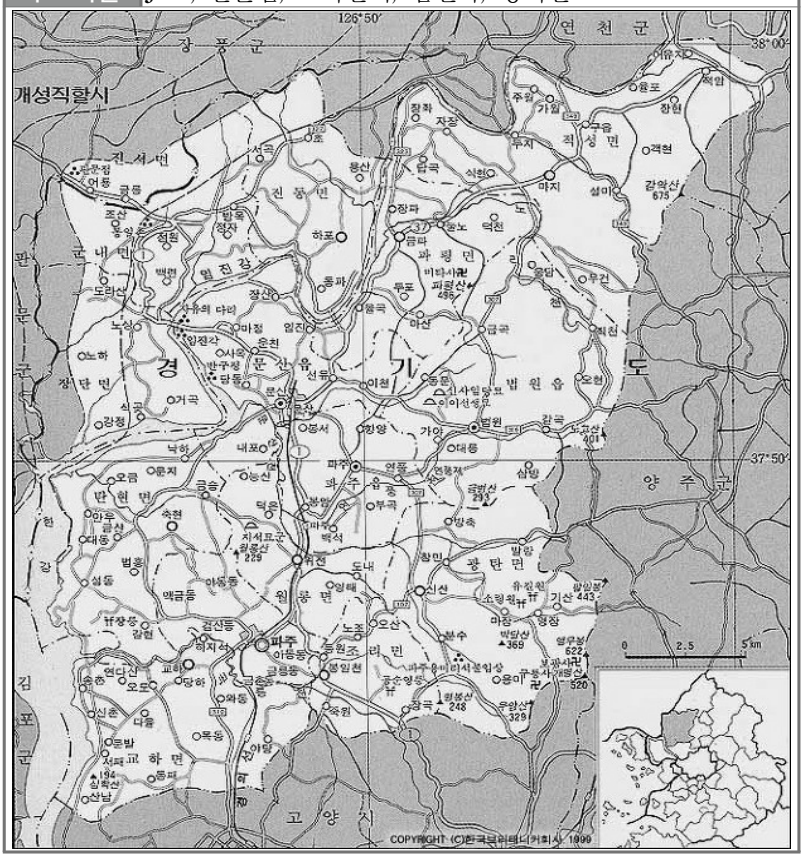

출처: 녹색연합, 『DMZ 155마일을 걷다』, p. 16; 『브리태니커백과사전』,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do?docid=b23p1027b>.

2) 연천군

[표 I-12] 연천군 현황

행정구역	연천읍, 전곡읍, 군남면, 청산면, 백학면, 미산면, 왕징면, 신서면, 중면, 장남면 등 (2개읍 8개면 96개 동리) 군청소재지: 연천읍 차탄리
DMZ 경계	장남면 반정리~고랑포리~판부리-백학면 갈현리-왕징면 고천하리-중면 횡산리~중사리~거리-신서면 신현리~덕산리
민통선 경계	장남면 반정리~고랑포리~자작리-백학면 전동리~두일리~백령리-왕징면 동중리~북삼리-중면 삼곶리~마거리-신서면 답곡리~마전리
주요시설	경원선, 열쇠전망대, 태풍전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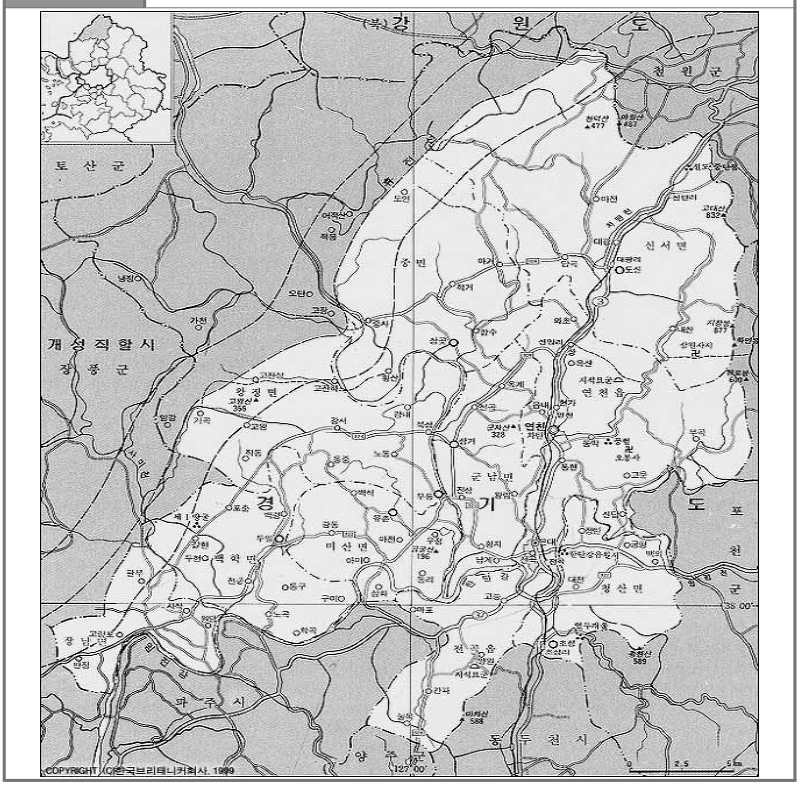

출처: 녹색연합, 『DMZ 155마일을 걷다』, p. 20; 『브리태니커백과사전』,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do?docid=b15a3409b>.

3) 철원군

[표 I-13] 철원군 (남한) 현황

행정구역	철원읍, 김화읍, 갈말읍, 동송읍, 서면, 근남면, 근북면, 근동면, 원동면, 원남면, 임남면 등 (4개읍 7개면 80개 동리), 근북면, 근동면, 원동면, 원남면, 임남면은 군사상 민간인 출입이 금지된 미 거주지역임. 군청소재지: 갈말읍 신철원리
DMZ 경계	철원읍 중사리~내포리-동송읍 월정리~중강리~강산리-갈말읍 정연리-근북면 유곡리-김화읍 생창리-근남면 마현리-원남면 주파리-원동면 등대리-임남면
민통선 경계	철원읍 판교리~관전리-동송읍 관우리~양지리~이길리-갈말읍 정연리-김화읍 도창리~청양리~학사리~운장리~암정리~용양리-근남면 마현리
주요시설	금강산철도, 경원선철도 예정지, 철원 옛 시가지, 태봉국도성, 가천의대 철원길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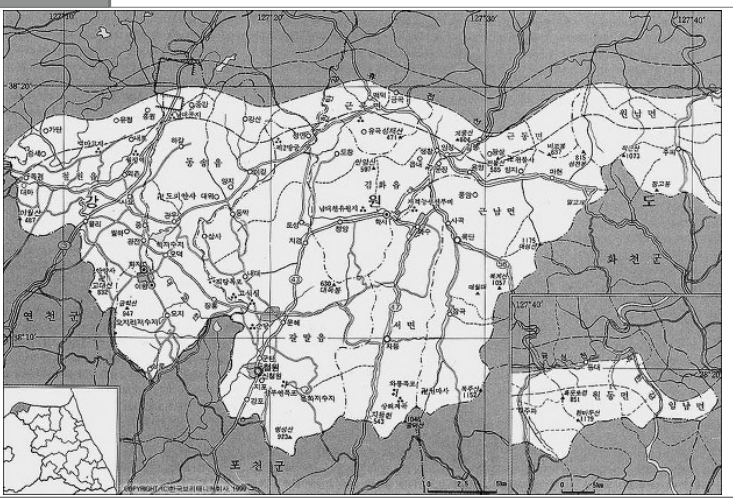

출처: 녹색연합, 『DMZ 155마일을 걷다』, p. 25; 『브리태니커백과사전』,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do?docid=b20c2347b>.

4) 화천군

[표 I-14] 화천군 현황

행정구역	화천읍, 간동면, 하남면, 상서면, 사내면 등 (1개읍 4개면 40개 동리) 군청소재지: 화천읍 아리
DMZ 경계	* 화천은 직접 DMZ의 경계와 접하고 있지는 않다.
민통선 경계	상서면 마현리~산양리-화천읍 수리봉~풍산리~해산터널~평화의 댐
주요시설	화천댐, 파로호, 평화의 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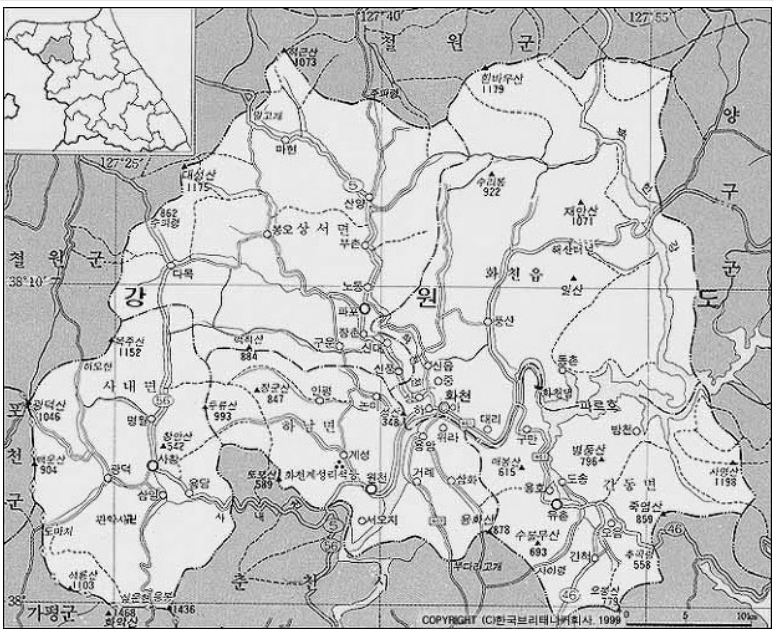

출처: 녹색연합, 『DMZ 155마일을 걷다』, p. 28; 『브리태니커백과사전』,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do?docid=b25h2394b>.

5) 양구군

[표 I-15] 양구군 현황

행정구역	양구읍, 남면, 동면, 방산면, 해안면 등 (1개읍 4개면 60개 동리) 군청소재지: 양구읍 하리
DMZ 경계	방산면-동면 사태리-해안면 이현리
민통선 경계	방산면 천미리~오천터널~오미리~현리~송현리~고방산리-동면 장가고개~임당리~월운리~팔랑리-돌산령-해안면 오류리~이현리~월산리
주요시설	을지전망대, 두타연관광지, 펀치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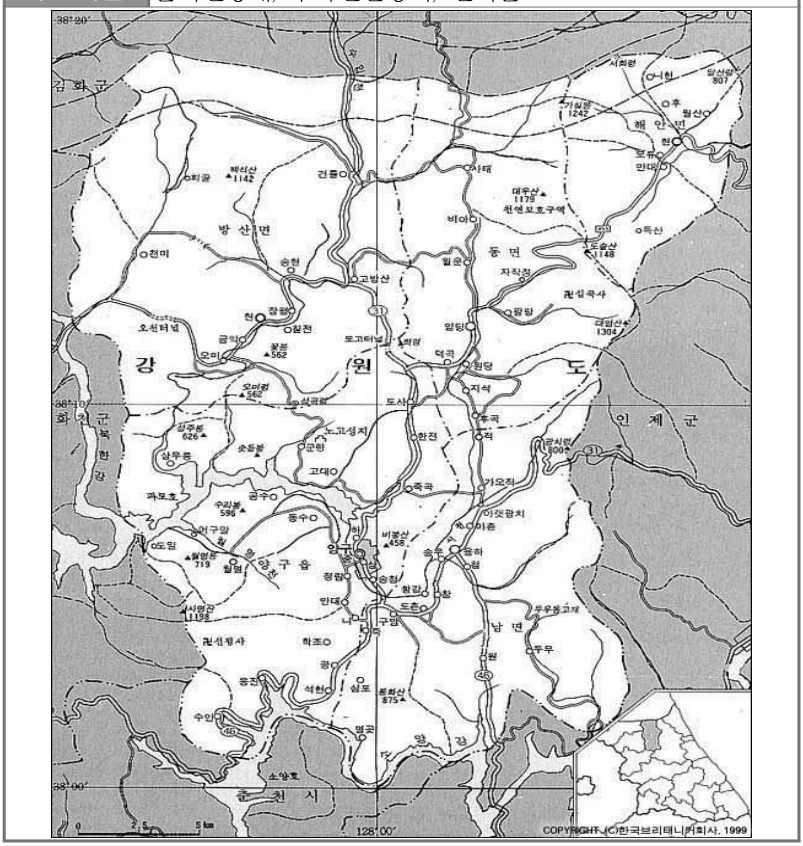

출처: 녹색연합, 『DMZ 155마일을 걷다』, p. 32; 『브리태니커백과사전』,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do?docid=b25h2394b>.

6) 인제군

[표 I-16] 인제군 현황

행정구역	인제읍, 남면, 북면, 기린면, 서화면, 상남면 등 (1개읍 5개면 41개 동리) 군청소재지: 인제읍 상동리
DMZ 경계	서화면 가전리
민통선 경계	서화면 후덕리~서화리-매봉산-진부령
주요시설	대암산 용늪, 한국DMZ평화생명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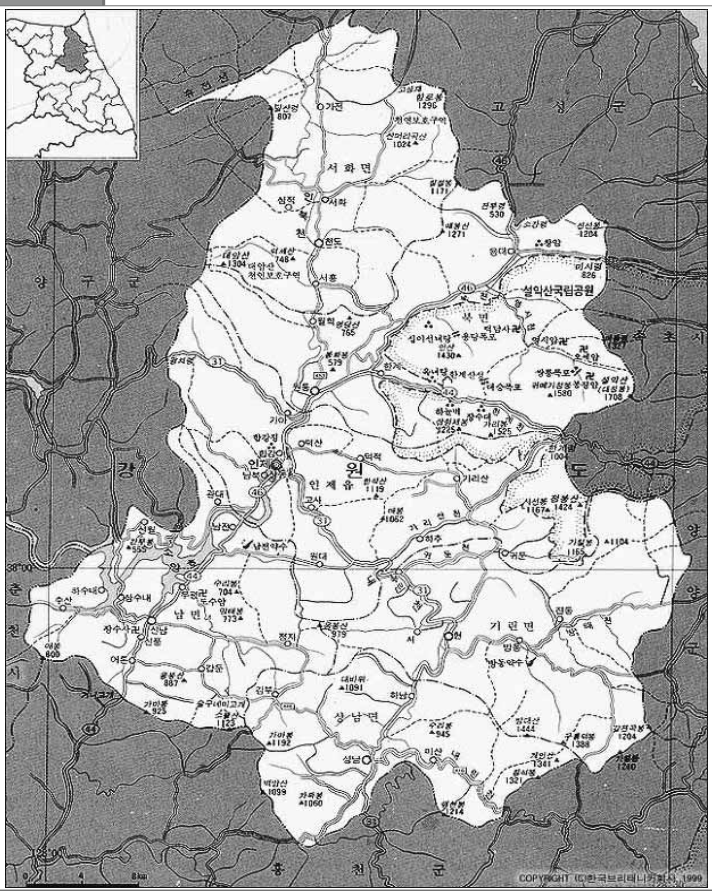

출처: 녹색연합, 『DMZ 155마일을 걷다』, p. 36; 『브리태니커백과사전』,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do?docid=b18a1263b>.

7) 고성군 (남한)

[표 I-17] 고성군 (남한) 현황

행정구역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수동면 등 (2개읍 4개면 88개 동리) 군청소재지: 간성읍 하리
DMZ 경계	수동면 사천리-현내면 송현진리
민통선 경계	간성읍 진부리~장신리~탑현리-거진읍 냉천리~노루목~용하리-현내면 화곡리~마달리~배봉리~명파리~저진리
주요시설	동해선, 동해7번국도, 통일전망대, DMZ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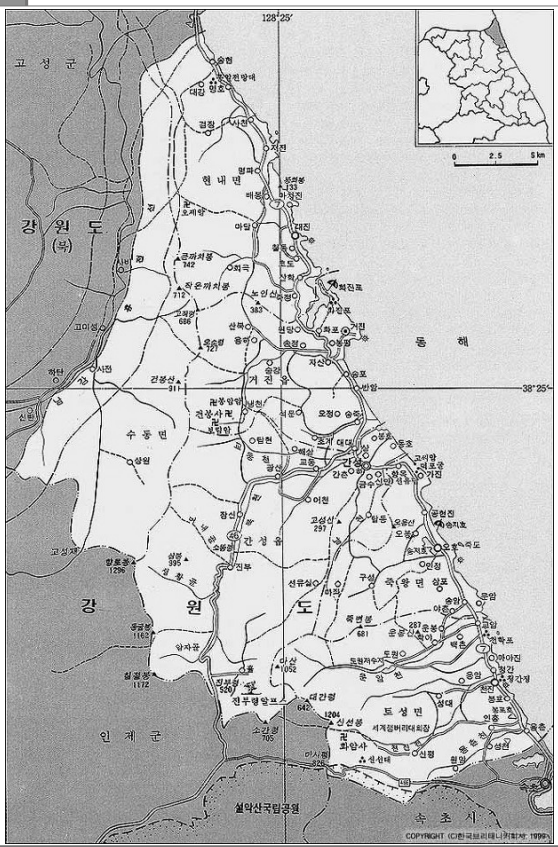

출처: 녹색연합, 『DMZ 155마일을 걷다』, p. 40; 『브리태니커백과사전』,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do?docid=b01g3985b>.

(나) 북한지역

1) 판문군

[표 I-18] 판문군 현황

시·도	개성직할시
면적	324.60㎢
기온	평균 10.6℃, 최한월(1월) 5.1℃, 최난월(8월) 24.7℃
강수량	1,237.8㎜
행정 구역	판문읍, 대련리, 대룡리, 덕수리, 동창리, 려정리, 림한리, 삼봉리, 상도리, 선적리, 신흥리, 월정리, 전재리, 조강리, 진봉리, 판문점리, 평화리, 화곡리 등 (1읍 17리) 군 소재지: 판문읍
DMZ 경계지역-인접 남측지역	((북측)령정리 - (남측)강화도)* ((북측)신흥리 - (남측)김포시 월곶리) ((북측)조강리 - (남측)김포시 월곶리) (북측)대룡리 - (남측)파주시 장단면 (북측)동창리 - (남측)파주시 장단면, 탄현면 (북측)판문점리 - (남측)파주시 군내면, 진서면 (북측)선적리 - (남측)파주시

*( )는 민통선지역

출처: 평화문제연구소, 『조선향토대백과 2: 남포시, 개성시, 라선시』 (서울: 평화문제연구소, 2005), pp. 392~429 참조.

2) 장풍군

[표 I-19] 장풍군 현황

시·도	개성직할시
면적	542.17㎢
기온	평균 9.4℃, 최한월(1월) 6.5℃, 최난월(8월) 약24℃
강수량	1,547.5㎜
행정구역	장풍읍, 가곡리, 가천리, 고읍리, 구화리, 국화리, 귀존리, 대덕산리, 덕적리, 라부리, 랭정리, 림강리, 사시리, 사암리, 석둔리, 석촌리, 세골리, 솔현리, 십탄리, 월고리, 자하리, 장좌리, 장학리, 항동리 (1읍 23리) 군 소재지: 장풍읍
DMZ 경계지역-인접 남측지역	(북측)대덕산리 - (남측)파주군 선적리, 진동면 (북측)사시리 - (남측)파주군 진동면 (북측)항동리 - (남측)연천군 (북측)사암리 - (남측)연천군 (북측)라부리 - (남측)연천군 (북측)귀존리 - (남측)연천군 왕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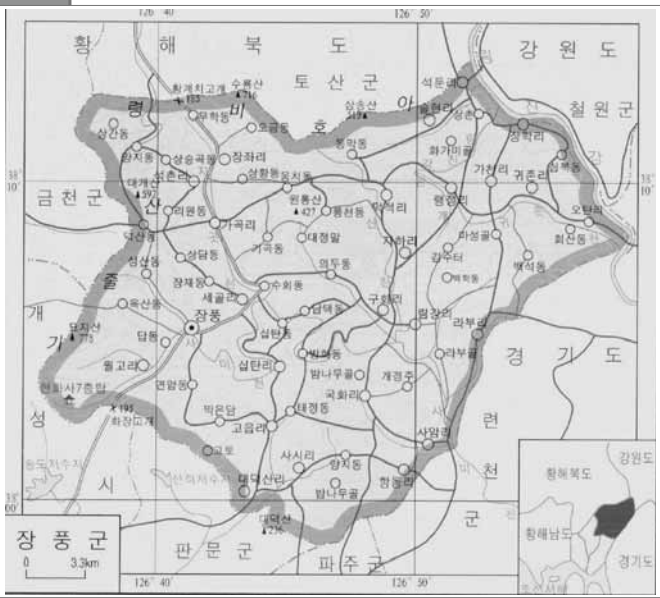

출처: 평화문제연구소, 『조선향토대백과 2』, pp. 436~390 참조.

3) 철원군

[표 I-20] 철원군 (북한) 현황

시·도	강원도
면적	553.92㎢
기온	평균 9.6℃, 최한월(1월) 6.8℃, 최난월(8월) 24.2℃
강수량	1,000㎜
행정 구역	철원읍, 가승리, 갈현리, 강산리, 검사리, 내문리, 대전리, 도밀리, 독검리, 룡학리, 류대포리, 립석리, 마방리, 마장리, 문암리, 밀암리, 반석리, 백로산리, 보막리, 부압리, 삼사리, 상마산리, 상하리, 송현리, 신진리, 오동리, 오탄리, 외학리, 월암리, 유정리, 저탄리, 적동리, 적산리, 정동리, 중강리, 하식점리, 회산리 (1읍 36리) 군 소재지: 철원읍
DMZ 경계지역-인접 남측구역	(북측)적산리-적동리-갈현리-송현리-도밀리 - (남측)연천군 (북측)독검리-삼사리-유정리-중강리-강산리 - (남측)철원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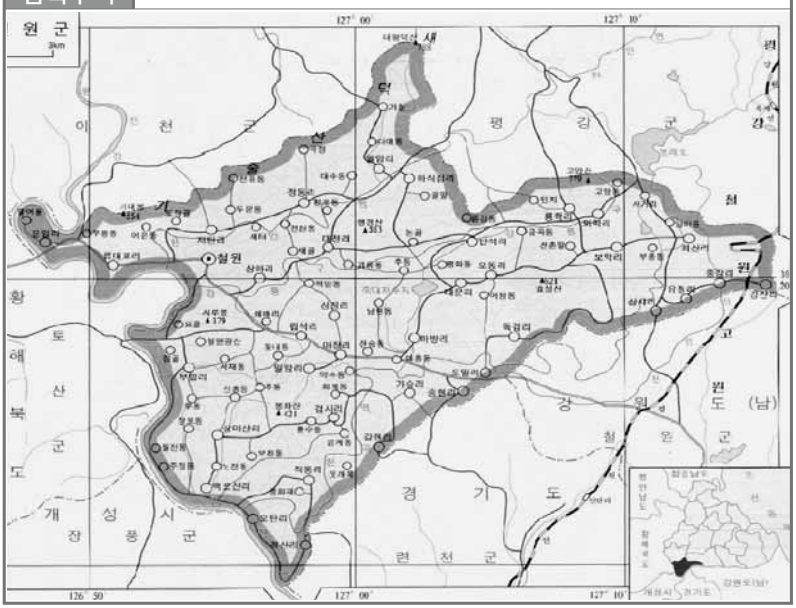

출처: 평화문제연구소, 『조선향토대백과 11: 강원도』 (서울: 평화문제연구소, 2005), pp. 740~785 참조.

4) 평강군

[표 I-21] 평강군 현황

시·도	강원도
면적	788.1㎢
기온	평균 8.0℃, 최한월(1월) 8.4℃, 최난월(7월) 22℃
강수량	1,455.8㎜
행정 구역	평강읍, 가곡리, 건천리, 근동리, 금곡리, 남양리, 내천리, 랑월리, 랑하리, 리수덕리, 문봉리, 문산리, 복계리, 봉래리, 상갑리, 상송관리, 상원리, 성산리, 수태리, 신정리, 압동리, 옥동리, 자원리, 전승리, 정산리, 천암리, 탑거리, 하송리, 하주리, 해방리, 화암리 (1읍 30리) 군 소재지: 평강읍
DMZ 경계지역-인접 남측구역	(북측)내천리 - (남측)철원군 (북측)건천리 - (남측)철원군 (북측)근동리 - (남측)철원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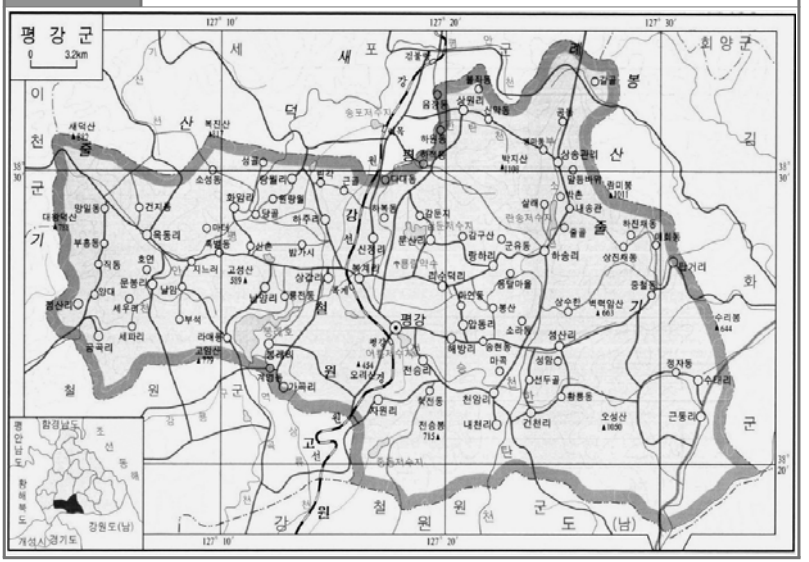

출처: 평화문제연구소, 『조선향토대백과 11』, pp. 906~957 참조.

5) 김화군

[표 I-22] 김화군 현황

시·도	강원도
면적	770.5㎢
기온	평균 8.1℃, 최한월(1월) 8.2℃, 최난월(7월) 22.5℃
강수량	1,314.4㎜
행정 구역	김화읍, 학방로동자구, 구봉리, 당현리, 룡현리, 법수리, 상판리, 신창리, 신풍리, 어호리, 원남리, 원동리, 원북리, 창도리, 초서리 (1읍 1구 13리) 군 소재지: 김화읍
DMZ 경계지역-인접 남측지역	(북측)원남리 - (남측)철원군 근동면, 원남면 (북측)룡현리 - (남측)철원군 원남면, 원동면 (북측)어호리 - (남측)철원군 원동면, 임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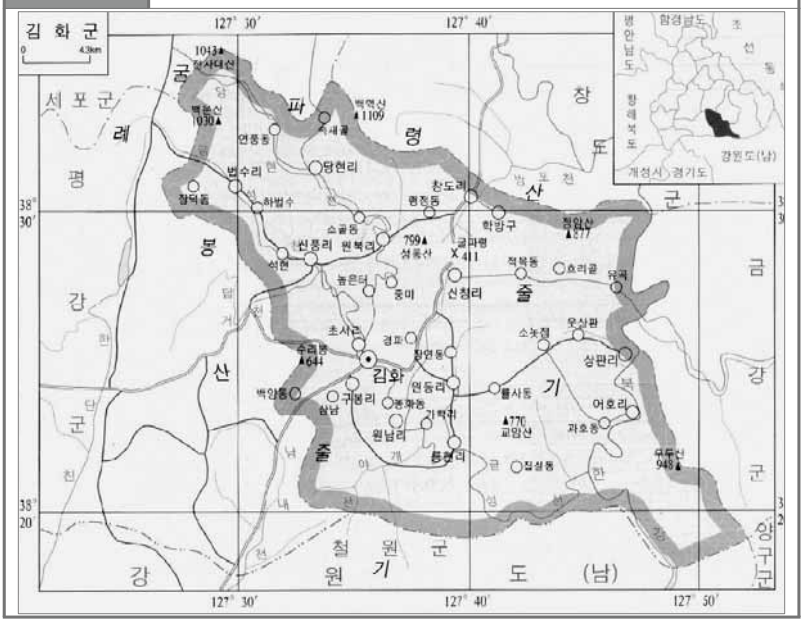

출처: 평화문제연구소, 『조선향토대백과 11』, pp. 384~424 참조.

6) 금강군

[표 I-23] 금강군 현황

시·도	강원도
면적	1472.82㎢
기온	평균 7.2℃, 최한월(1월) 8.5℃, 최난월(7월) 21.2℃
강수량	1,201.9㎜
행정구역	금강읍, 금천리, 금풍리, 내금강리, 단풍리, 룡암리, 문등리, 방목리, 백현리, 북점리, 세동리, 소곤리, 속사리, 송거리, 순갑리, 신교리, 신원리, 신읍리, 안미리, 오천리, 이포리, 청두리, 풍미리, 하회리, 현동리, 현리, 화천리 (1읍 26리) 군 소재지: 긍강읍
DMZ 경계지역-인접 남측구역	(북측)문등리 - (남측)양구군 (북측)청두리 - (남측)양구군 (북측)이포리 - (남측)양구군 해안면, 인제군 서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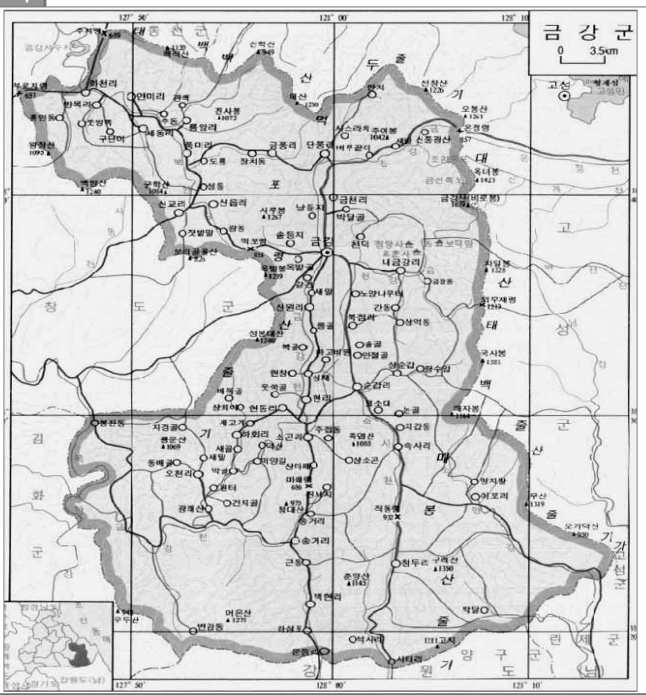

출처: 평화문제연구소, 『조선향토대백과 11』, pp. 332~382 참조.

7) 고성군

[표 I-24] 고성군 (북한) 현황

시·도	강원도
면적	1472.82㎢
기온	평균 7.2℃, 최한월(1월)−8.5℃, 최난월(7월) 21.2℃
강수량	1,201.9㎜
행정 구역	고성읍, 고봉리, 구읍리, 복송리, 봉화리, 삼일포리, 성북리, 순학리, 신봉리, 온정리, 운곡리, 운전리, 월비산리, 장포리, 종곡리, 주둔리, 초구리, 해금강리, 해방리 (1읍 23리) 군 소재지: 고성읍
DMZ 경계지역–인접 남측지역	(북측)월비산리 – (남측)고성군 수동면, 현내면 (북측)초구리 – (남측)고성군 최동단, 동해(東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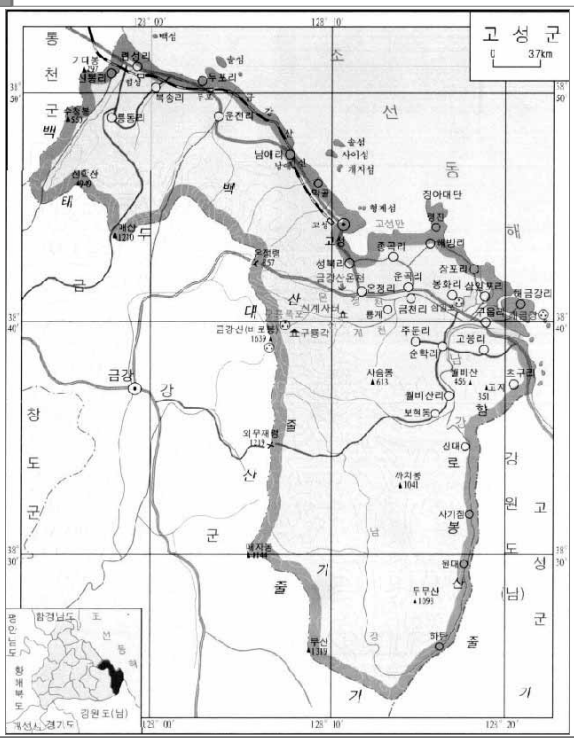

출처: 평화문제연구소, 『조선향토대백과 11』, pp. 266~328 참조.

나. 도로, 철도

[그림 I-9] DMZ 일원의 도로, 철도현황

출처: 녹색연합, 『DMZ 155마일을 걷다』, pp. 41~42.

(1) 도로

DMZ 일원의 도로와 철도는 남북 간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DMZ 일원의 관광자원화에 대한 관심이 높이지기 시작한 2000년대부터 많이 개발되고 있다. DMZ 일원의 도로와 철도의 연결은 대부분 기존에 존재했던 길이나 철도를 다시 복구하거나 연결시키는 형태이다. DMZ는 원시림으로부터 시작한 지역이 아니라 60여 년 전에는 한반도에서 가장 활발한 인구와 물자의 교통이 이루어지던 지역이었으며, 따라서 많은 도로와 철도가 이미 발달했었던 지역이다.

도로와 철도는 평지나 구릉지 등을 따라 굴곡이 없는 지형을 이용하

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파주와 개성을 연결하는 경의선, 철원의 추가령 구조곡을 이용한 경원선, 동해안의 좁게 펼쳐진 해안 평지를 따라 금강산으로 올라가는 7번국도와 동해선 등이 좋은 예이다. 이미 파주-개성, 고성-해금강간 도로와 같은 육로가 건설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도로가 건설될 예정이다.

[표 I-25] DMZ 및 민통선내 남북 관통 포장도로

명칭	지역	포장형태
장단면농어촌도로	경기도 파주군 장단면 노하리	2차선아스콘도로
경의선통일대교-개성공단도로	경기도 파주군 군내면-장단면 1번국도	민통선 4차선아스콘도로, DMZ 2차선아스콘도로
국도1호선-판문점-개성연결도로	경기도 파주군 군내면-진서면	2차선아스콘도로
사미천진입도로	경기도연천군장남면-백학면 농어촌도로	2차선아스콘도로
태풍전망대진입도로	경기도연천군중면 농어촌도로	2차선아스콘도로, 2차선콘크리트도로
열쇠전망대진입도로	경기도연천군신서면	2차선콘크리트도로
대마리 지방도463호선	강원도철원군철원읍 463지방도로	2차선아스콘도로
국도3호선 동송구간	강원도철원군철원읍 3번국도	2차선아스콘도로
평화전망대진입도로	강원도철원군철원읍 관광도로	2차선아스콘도로
양지리 제2땅굴진입도로	강원도철원군철원읍 농어촌도로	2차선아스콘도로

<표 계속>

명칭	지역	포장형태
한탄강지방도464호선	강원도철원군갈말읍-근북면 464지방도로	2차선아스콘도로
유곡리 농어촌도로	강원도철원군김화읍-근북면 농어촌도로	2차선아스콘도로
국도5호선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생창리 5번국도	2차선아스콘도로
승리전망대진입도로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관광도로	2차선아스콘도로
주파령 관통도로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철원군 원남면	2차선아스콘도로
북한강진입도로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기타도로	2차선아스콘도로
제4땅굴진입도로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기타도로	2차선아스콘도로
을지전망대진입도로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기타도로	2차선아스콘도로
국도7호선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7번국도	2차선아스콘도로

출처: 녹색연합, 『DMZ 155마일을 걷다』, p. 81.

[표 I-26] DMZ 및 민통선내 검토 중인 남북 연결도로

명칭	지역
지방도 78호선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백학면
임진강 도로	경기도 연천군 중면
국도 3호선	강원도 철원군
국도 5호선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근북면
국도 43호선	강원도 철원근 김화읍-근동면
국도 31호선	강원도 양구군 동면-방산면

출처: 녹색연합, 『DMZ 155마일을 걷다』, p. 80.

(2) 철도

남북간의 대규모 인적, 물적 교통의 중심에는 철도가 있다. 자동차 도로가 생기기 이전부터 한반도 근대화의 상징인 철도가 DMZ 일원에서는 달리고 있었다. 특히 철도는 한반도 내 교류를 넘어 남한이 시베리아와 유럽까지 육로로 연결되는 시발점이 된다. 분단으로 인해 남한은 지금까지 섬 아닌 섬으로 국제무대에서 존재했으나 끊어진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다시 연결된다면 무역과 수출입 및 국제교류에 큰 진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I-10] 경의선철도

출처: "남북 철로 17일 12시 10분 분계선 넘는다," 『한국일보』, 2007년 5월 11일.

[그림 I-11] 동해선철도

출처: 『한국일보』, 2007년 5월 11일.

[그림 I-10], [그림 I-1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남과 북의 철도 연결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경의선은 단지 27.2㎞, 동해선은 단지 25.5㎞의 복원만으로 남북 간의 끊어진 철도가 다시 연결될 수 있었다.

앞으로 추가령 구조대를 따라 북으로 올라가는 경원선의 복원과, 일제시대 관광을 위한 전기기차로 인기를 끌었던 금강산철도의 복구가 [그림 I-12]와 같이 계획 중인데 이러한 작업들이 완성된다면 남북관계의 진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림 I-13]은 최근 개성공단 인근의 발달된 교통망을 보여준다. 60년 이상 끊어졌던 남북의 교통로가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복구 되었다는 것은 DMZ가 교통의 요지임을 보여주는 실례라고 할 수 있다.

[표 I-27] 남북철도연결 현황

명칭	상태	길이(㎞)			출발지	종착지
경의선	연결	남	12.0	27.2	서울(문산역)	신의주(개성역)
		북	15.3			
동해선	연결	남	7.0	25.5	고성(제진역)	고성(금강산역)
		북	18.5			
경원선	예정				서울	원산(시베리아)
금강산선	예정				철원	내금강

[그림 I-12] 경원선, 금강산선 예상노선도

출처: 농심의 홈페이지 <http://blog.daum.net/corea6150/3712369> (검색일: 2011.9.9).

[그림 I-13] 경의선주변 도로망

출처: 유영호,『민통선-DMZ 통일맞이 나들이: 하나를 위하여』(서울: 선인, 2008), p. 140.

다. DMZ, 민통선내 마을

[그림 I-14] DMZ 및 민통선내 마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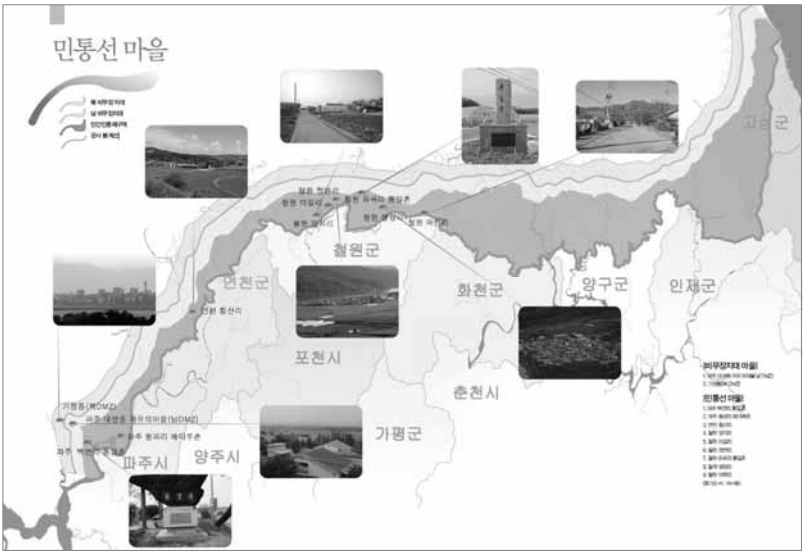

출처: 녹색연합, 『DMZ 155마일을 걷다』, pp. 41~42.

(1) 민통선 마을

현재 DMZ 내에는 2개 마을이, 민통선 안에는 10개의 마을이 존재한다. DMZ 일원은 민간인의 활동과 출입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장소이다. 하지만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선전, 이재민 이주 등의 이유와 목적으로 DMZ 인근에서 마을이 인공적으로 형성되었다. 물론 인공적이기는 해도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기존의 취락지를 활용했기 때문에 어색한 형태를 띠지는 않는다. [그림 I-1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분의 마을들이 DMZ 중서부 파주, 연천, 철원의 평야지대에 위치하는데 이것은 과거의 농업용 주거지역과 일치한다. DMZ와 민통선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출입과 이동에 많은 통제가 따르지만 정부의 지원과 청정지역 영농활동으로

인해 가구당 소득[4]은 나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표 I-28] DMZ 및 민통선내 마을 현황

구분	행정구역				명칭	가구	인구	조성년도
DMZ (북)	개성시		판문군	평화리	기정동 (평화촌, 선전마을)			1982
DMZ (남)	경기도	파주시	군대면	조산리	대성동 (자유의마을)	58	193	1953
민통선 (남)				백연리	통일촌	152	449	1973
			진동면	동파리	해마루촌	52	145	2001
		연천군	중면	황산리		53	134	1977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양지리		103	252	1972
				이길리		71	162	1971
			갈말읍	정연리		95	249	1972
			근북면	유곡리	통일촌	58	139	1973
			김화읍	생창리		110	283	1970
			근남면	마현 1리		185	384	1959
				마현 2리		112	225	1960

출처: 녹색연합, 『DMZ 155마일을 걷다』, p. 68을 보충하여 작성.

(2) DMZ내 마을

대성동 마을과 기정동 마을은 남북한 각각 하나씩 있는 DMZ 안쪽에 위치한 마을이다. 1953년 8월 3일 군사정전위에서는 "정전협정 이전에 비무

[4] DMZ, 민통선내 가구당 평균소득(2007년)은 조산리 대성동 6,700만원, 백연리 통일촌 4,000만원, 동파리 해마루촌은 4,000만원이라고 조사되었다. 유영호, 『민통선-DMZ 통일맞이 나들이』, p. 111.

장지대 내 거주자는 계속 입주를 허용한다"고 합의하였고, 그 때부터 북한은 기정동을, 유엔군사령부(이하 유엔사)는 대성동을 관할하게 되었다.

대성동 마을은 유엔사의 관할하에 있으며, 주민들은 국방과 납세의 의무가 없는 대신 외부인이 들어와 살지 못하며 농업활동을 할 때 판문점 경비대대의 경호를 받는다.

기정동은 북한의 대남선전 목적으로 지었다고 알려지고 있으며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외부와 차단되어 고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대성동에서는 100m높이의 태극기게양대가, 기정동에는 160m높이의 인공기게양대가 냉전이념경쟁의 상징으로 남아있다.

[그림 I-15] DMZ내 공동경비구역(판문점), 대성동, 기정동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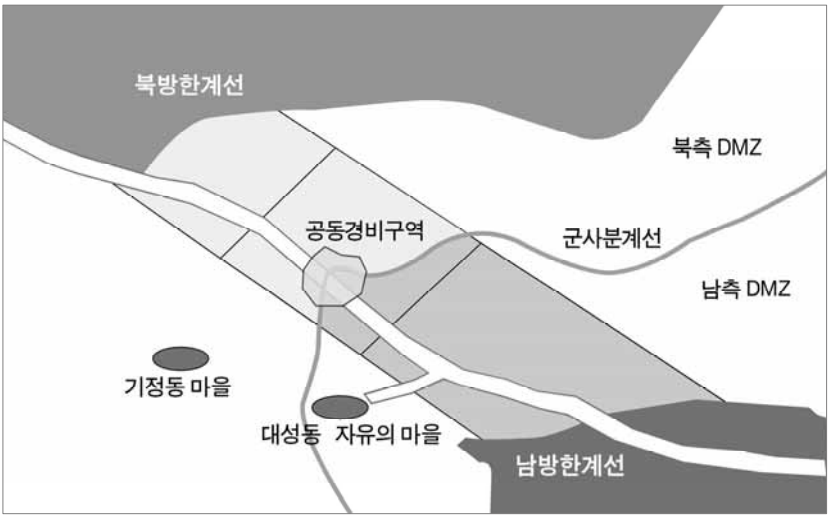

출처: 유영호, 『민통선-DMZ 통일맞이 나들이』, p. 171.

(3) 공동경비구역 (JSA, Joint Security Area)

DMZ, 군사분계선 바로 위에 세워진 '공동경비구역'은 DMZ안의 유일

한 남북공동시설이다. 군사정전위원회 유엔사측과 공산측(북한, 중국)이 군사정전위원회 회의를 원만히 운영하기 위해 1953년 10월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 군사분계선상 동서 800m, 남북 400m 장방형의 지대위에 세웠다. 널리 알려진 '판문점' 이라는 명칭은 지역의 이름이다.

처음 이곳에 천막을 치고 시작한 휴전회담은 1년 9개월을 끌었고, 휴전회담을 마친 뒤 정전협정 조인을 위해 부근에 목조건물을 지었으며, 그 후 본래 판문점보다 약간 남쪽의 현재 위치로 다시 이전했다.

공동경비구역이 설치된 이후 처음에는 북한과 유엔사측 경비병 등 모든 관계자들이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76년 8월 북측의 도끼만행사건 이후부터 양측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군사분계선을 표시하여 경비병을 포함한 모든 군인들은 군사분계선을 넘어 상대측 지역에 들어가지 못하며 개인적으로 북한군을 만나거나 말을 걸지 못하도록 정해져있다.

[그림 I-16] 공동경비구역 현황

출처: 새내기의 홈페이지, <http://blog.daum.net/hacker0410/338262> (검색일: 2011.9.13).

라. DMZ 일원의 농업지역

[그림 I-17] DMZ 일원의 농업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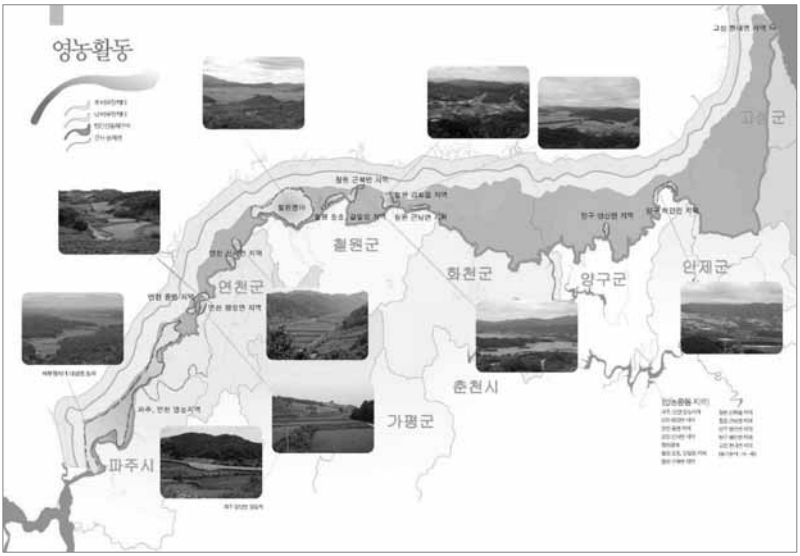

출처: 녹색연합, 『DMZ 155마일을 걷다』, pp. 41~42.

DMZ 일원에서는 민통선 마을을 중심으로 농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파주와 연천, 철원 등지의 평야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논농사 중심의 농업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현무암질 토질과 맑은 물, 깨끗한 환경으로 인해서 이 지역의 쌀은 경쟁력 있는 농업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 외 연천의 율무, 양구와 인제의 고랭지농업 등이 DMZ 일원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표 I-29] 민통선내 농업활동

지역			주요작물
경기도	파주	파주(연천)지역	논농사, 밭농사(콩, 인삼, 특수작물)
	연천	왕징면	논농사, 밭농사(콩, 인삼)
		중면	논농사, 밭농사(율무, 콩, 인삼)
		신서면	밭논사
강원도	철원	평야	논농사
		동송, 갈말읍	논농사
		근북면	논농사, 시설농업(오이, 고추)
		김화읍	논농사, 시설농업(오이)
		근남면	논농사, 시설농업(오이, 토마토, 피망)
	양구	방산면	논농사
		해안면	고랭지농업(무, 배추, 쌈채류)
	고성	현내면	논농사, 밭농사

출처: 녹색연합, 『DMZ 155마일을 걷다』, p. 86.

마. DMZ의 전망대

[그림 I-18] DMZ의 전망대

출처: 녹색연합, 『DMZ 155마일을 걷다』, pp. 41~42.

DMZ는 한반도의 중심이다. 반세기 넘게 인간의 간섭 없이 자연이 유지되어 오면서 곳곳에 자연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으며 독특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다. 더불어 다양한 생물군이 관람객들을 이끈다.

생태적인 이유 외에도 DMZ 남방한계선에서는 DMZ와 그 너머 북한땅을 바라볼 수 있으며 국군장병들이 휴전선을 지키는 모습도 견학할 수 있기 때문에 안보적 목적에 의해서도 전망대가 많이 운영된다. 남침용 땅굴이 발견된 지역에 전망대를 운영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다. 전망대는 DMZ 남방한계선 군사지역에서 운영되므로 방문시 필요한 절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표 I-30] DMZ 전망대

명칭	위치	경관	개방년도	문의전화
오두산 통일전망대	경기 파주 탄현면 성동리	임진강, 개풍군	92	031-943-3171
도라산전망대	경기 파주 군내면 점원리	송악산, 기정동	87	031-953-4744
태풍전망대	경기 연천 중면 횡산리	임진강, 오장동	91	031-839-2828
열쇠전망대	경기 연천 신서면 답곡리	DMZ 중서부	98	031-839-2828
평화전망대	강원 철원 동송읍 중강리	철원평야, 궁예도성	07	033-450-5060
승리전망대	강원 철원 근동면	북한초소, 오성산	02	033-450-5900
칠성전망대	강원 철원 원남면	금성천		033-440-2307
을지전망대	강원 양구 해안면 현2리	펀치볼, 금강산	88	033-481-9021
고성 통일전망대	강원 고성 현내면 명호리	동해선, 해금강	83	033-682-0099

Ⅱ. DMZ 정치·군사적 현황

1. DMZ 설정의 정치·군사적 의미

DMZ의 국제정치적 성격을 논하기 위해서는 DMZ의 생성배경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민족의 자체적인 결정이 아닌 일본의 식민지배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는 DMZ는 미국과 소련으로 대표되는 냉전이란 국제정치의 격랑에 따라 그 운명과 위상이 결정되었다.

DMZ는 6·25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6·25는 국내전인 동시에 국제전의 성격을 띠었다. 전쟁을 시작한 당사자인 공산측도 북한이 단독으로 전쟁을 시작한 뒤에 구소련(이하 소련)과 중국이 뒤늦게 참전한 것이 아니라, 전쟁개시 이전부터 김일성과 스탈린, 모택동 사이에 충분한 사전 협조와 조율이 있었다.[5]

또한 자유진영 측에서는 유엔군의 깃발아래 16개 국가가 직접 전투병을 파병하였고, 5개국이 의료진을, 32개국이 전쟁 중 전쟁 물자지원을, 7개국이 전후 복구를 지원하는 등 총 60개 국가가 참전하였다.[6]

따라서 6·25는 전 세계 국가의 절반이상이 참전한 국제전인 것이다. 이러한 전쟁의 결과로 만들어진 DMZ 역시 태생적으로 국제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는 전쟁을 중지시키면서 DMZ를 설치한 (국제)법적 기초가 되는 「정전협정문」에 서명한 국가가 남북한이 아닌 미

---

[5] 6·25의 발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박명림, 『6·25의 발발과 기원 1』 (서울: 나남, 1996) 참조.

[6] 그 동안 일반적으로 6·25에서 남한을 도운 국가는 41개 국가였던 것으로 알려져 왔었으나, 최근 국방부는 군사편찬연구소가 비밀이 해제된 미국 정부 문건과 UN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모두 60여개국이 6·25에서 남한을 도왔다고 발표했다. 1950년 당시의 독립국이 93개국이었음을 감안하면 전 세계 국가들의 63%가 한국을 지원한 것이다. 2011년 3월에 외교통상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 전문가들과 함께 내용을 최종확정한 뒤 국가공식기록물과 교과서등의 내용 수정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6·25 전쟁때 한국 지원국은 모두 60개국," 『연합뉴스』, 2011년 11월 15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319135>.

국, 북한, 중국의 3개국이며, DMZ에서 정전협정이 지켜지는지 관리하기 위한 기구로 '중립국감독위원회'가 존재하는 것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DMZ의 탄생의 성격은 당시 공산진영과 민주진영으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과 갈등을 반복하던 국제정치적 상황이 한반도 위에서 전쟁이라는 방법을 통해 격렬하게 표출된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가. 38선의 국제정치·군사적 기원

DMZ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에 의한 한반도의 분할선이었던 38선에서 그 원형을 찾을 수 있다. 일본은 조선을 강제병합 한 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모두 승리 하였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둔 일본은 진주만 기습공격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태평양전쟁에 뛰어 들었다. 진주만 공습으로 인해 미국도 제2차 세계대전 참전에 적극성을 띠기 시작했고 잘 알려진 대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함으로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받아냈다. 소련은 미국의 요청에 따라서 이 전쟁에 참전했었고 전후 처리를 위해 개최된 1945년 2월 얄타회담에서 한반도의 운명이 일본의 국권침탈에 이어 한번 더 외부에 의해 결정되었다. 얄타회담은 「해방유럽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Liberated Europe)」을 선택하였는데 이 선언은 독일로부터 해방된 유럽의 국가들 내에서 민주적 선거절차를 거쳐 독립국가를 건설하는데 협력하기로 한 합의문이었다. 하지만 식민지였던 국가들의 자치적인 독립에 관한 협력은 유럽대륙에 있는 국가들에 한정된 것이었고, 아시아의 국가들에 관한 내용은 이와는 달랐다.

아시아 국가들의 전후 처리에 관해서는 얄타회담의 1년 후인 1946

년에 공개된 미소양국간의 합의문서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 합의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독일이 항복하여 유럽에서 전쟁이 끝난 2~3개월 후에 소련이 아시아에서 일본과의 전쟁에 참여하고 그 대가로 소련은 아시아에서 1905년 러일전쟁의 패배로 제정 러시아가 잃어버린 이권들을 다시 가진다는 것이었다. 만주의 관동군이 일본 본토로 물러나서 결사항전을 벌일 경우 일본점령에 막대한 희생자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던 미국은 소련군이 만주의 일본 관동군을 무장해제 시켜주는 대가로 이를 수락하였다.

주변 열강들 사이의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한 한반도가 전후 어느 강대국의 완전한 영향력 아래로 편입되면 안된다는 전략적 인식을 갖고 있던 루즈벨트는 얄타회담 기간 중인 1945년 2월 8일 스탈린에게 한반도에 대한 신탁통치 실시 의사를 밝혔고 스탈린은 여기에 동의했다.

미국의 3성조정위원회(SWNCC)는 8월 10일과 11일 밤 사이에 북위 38도선을 한반도에서 일본의 항복을 받기 위한 군사분계선으로 황급하게 결정하고 전략정책단 정책과장인 본스틸(Charles H. Bonesteal) 대령은 지도상의 북위 38선을 따라 한반도를 분할한다는 내용을 단 30분 만에 작성하였다. 8월 13일 트루먼은 이 내용을 승인했으며 맥아더에게 보내는 일반명령 제1호(General Order No.1)에 일본군의 항복을 받는 구체적 절차를 명시한 이 내용이 포함되었다. 8월 14일 트루먼은 이 사실은 스탈린에게 통보했는데 스탈린은 한반도의 38도선 분할에 관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남한과 북한은 각각 미국과 소련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게 된 것이며 DMZ의 원형이 된 38선이 한반도 역사에 등장한 것이다.

[그림 Ⅱ-1] 30분 만에 작성된 38선 지도와 38선임을 알리는 표지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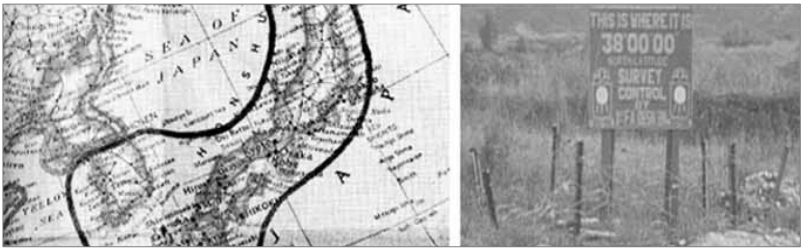

출처: DMZ지질공원, <http://dmzgeopark.com/>.

이후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미소가 한반도에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한 정당 및 사회단체들과 협의한 후 5년간의 신탁통치 기간을 거쳐 완전한 독립국가를 수립한다는데 합의함으로써 얄타회담 이후 가장 구체적인 안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남한의 우파단체들이 미소가 제출한 신탁통치안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대했는데 이러한 단체들도 협의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 등에 관한 논쟁이 미소 사이에서 지루하게 전개되었다. 그 결과 1946년, 1947년의 제1차,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는 한반도의 통일정부 수립절차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논쟁만을 거듭하고 있었다.

한반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가운데 미국은 1947년 6월 5일 마샬(George C. Marshall) 국무장관의 주도로 유럽 부흥계획인 마샬플랜(Marshall Plan)을 입안했다. 이는 미국의 서구 유럽국가에 대한 원조를 강화함으로 유럽에서의 지배권을 강화하고 동서양진영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대전략이었다. 미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얄타회담을 준수하면서 자신들의 입지의 공고화를 꾀하던 소련은 마샬플랜을 자신들의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동구권의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한다. 1947년 9월 소련은 즈다노프(Andrei A.

Zhadanov)의 자본주의권과 사회주의권의 대결을 상징하는 '양진영 이론'을 내세워 코민포름을 결성하고 동구권 국가들의 결속을 강화시키기 시작하여 미소냉전의 대결이 본격화하게 된다.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는 1947년 10월 18일 제62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완전히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고 이러한 교착상태를 타파하기 위해 미국은 소련에게 한반도 문제를 유엔으로 이관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소련은 이 제안을 거부함으로 38선은 남북 분단선으로 고착화된다. 38선의 성격은 지금까지는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해 군사편의적이며, 당시 최강국들이 아시아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임의로 그려놓은 선에 불과 하였지만, 이제는 미소 냉전대결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최전선으로 그 성격이 변화하게 되었다.

일본에 의해 식민지로 전락했던 한반도는 일본의 몰락으로 생겨난 아시아 지역에서 공백상태를 메우기 위해 이 지역에 진출했던 미국과 소련에 의해 점령된 이후 냉전의 격화로 인하여 동서 이념을 대변하는 두 적대적 분단국가가 되었고 38선은 실질적인 면에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경이 된 것이다.

나. DMZ의 국제정치·군사적 기원

1949년 10월 중국의 공산당은 장개석의 국민당 군대를 대만으로 몰아내고 공산당혁명을 성공시킨다. 이후 아시아에서는 공산권에게 유리한 전략적 상황이 만들어지고 38선이 DMZ로 성격이 변하는 계기가 되는 6·25가 발발하게 된다.

애초 소련의 스탈린은 미국으로부터 인정받은 극동아시아에서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려고 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얄타협정의

중요 합의사항 중 하나가 소련이 장개석의 국민당 정부를 중국의 정당성 있는 정부로 인정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중국의 공산화는 중국을 통해 아시아에서의 지배권을 행사하려고 했던 미국의 얄타체제적 구상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다. 중국 공산당은 혁명을 성공한 후 자신들의 권력과 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하여 열강의 간섭과 침략을 막기 원했고 이에 따라 소련과도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이른바 '신조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소련은 얄타회담의 골격을 지키기 위해서 과거의 조약들을 형식적으로 남겨두면서 실질적인 형태로 조약을 변경할 것을 원하였다. 소련의 원조와 지지를 통해 북한의 정권을 차지한 김일성도 지속적으로 소련에게 남침을 승인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스탈린이 이때까지도 38선은 미소의 합의에 의해 그어진 국제적 분할선임을 들어 북한의 무력통일 시도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소련은 마샬플랜을 통한 미국의 봉쇄정책에 압박을 느껴 무엇인가 대응책을 찾기 원하는 동시에, 얄타체제가 파괴됨으로 이를 통해 국제적 조약으로 보장받은 쿠릴열도 영유권 등의 이권이 상실되는 것도 두려워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결국 소련은 1950년 1월 결국 중국과의 신조약을 체결하였고 김일성에게 남침 승인 의사를 통보하였다. 이는 얄타회담에서의 미국과 맺은 조약들을 완전히 파기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냉전 대결에서 미국에 대한 아시아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중대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6·25 이후로 38선은 DMZ로 변하였고 그 위상과 의미에도 변화가 생겼다. 우선 이때까지 미소냉전의 주 전선은 동·서 유럽이었다. 1950년 1월 미국의 국방장관 애치슨이 발표한 극동방어선에서 한반도를 제외한다는 것도 이를 뒷받침해 준다. 하지만 6·25로 인해 동서냉전에서

가장 중요하고 위험한 전선의 위상은 DMZ로 넘어오게 되었다. 6·25 휴전과 함께 미국은 한국과 한미군사방위조약을 체결하고 20개 사단의 군대 창설을 지원한다. 또한 미군 2개 사단을 한국에 주둔시켜 한국에 대한 방위의지를 확고히 했다.

[그림 Ⅱ-2] 1950년 1월 애치슨이 발표한 극동방위선

출처: DMZ지질공원, <http://dmzgeopark.com/>.

다음으로는 DMZ는 잠재적 위협인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전략적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6·25에서 초기의 전황과는 달리 UN군의 참전으로 북한군은 압록강 유역까지 밀려나게 되었고 중국은

미군이 자신들의 국경근처까지 진격해 오는 상황에 직면했다. 북한과의 약속과 안보상의 고려 등으로 중국은 한반도의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고 미국과 직접적인 전투를 벌이게 되었다. 미군은 중국의 참전을 계기로 6·25를 완전한 승리로 결정짓지 못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미국 내에서는 중국위협론이 대두되게 되었고 DMZ는 초대형 공산국가로 아시아의 맹주 자리를 차지하게 될 잠재 위협세력인 중국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도 가지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DMZ는 주변 강대국의 냉전이 또 다른 전 세계적인 열전 즉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아주는 완충장치로서의 군사적 역할을 가지게 되었다.

다. 현재 DMZ의 국제정치·군사적 의미

이후 DMZ는 전쟁 발발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강대국들이 직접적인 충돌을 기피하였고, 남북한 또한 각각 정권들이 내부적 공고화를 꾀함으로 인해 안정화된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

현재는 소련의 붕괴와 중국의 자유시장화 등으로 인해 냉전이 해체되면서 DMZ의 국제정치적 의미는 많이 약화되었으며,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통로로서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2000년 6월 1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개최되었으며, 그 해 9월 제주도에서 남북국방장관회담이 개최되었는데, 여기에서 남북은 군사분계선과 DMZ 개방에 관한 남북한 관할지역 설정 및 관리와 관련된 사항들을 협의하였다. 이 회담에 기초하여 2000년 11월부터 2003년 1월말 사이에 총 16차례의 남북군사실무회담이 개최되었고 그 결과 남북한은 정전협정의 틀 안에서 일련의 군사보장합의서를 체결하였고, 2003년 1월

27일 DMZ를 관통하는 임시도로 통행과 관련된 군사보장합의서를 체결하여 50년 만에 국제정치의 영향력을 벗어나 남북한 자체적으로 DMZ의 성격을 새로이 규정하는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2. DMZ의 정치적 기구

DMZ를 관리하기 위한 대표적 정치적 기구로 중립국감독위원회와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공동경비구역(JSA)을 들 수 있다. DMZ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정치적 회담이 공동경비구역 안의 회담장에서 이루어졌다.

가. 중립국감독위원회

남과 북의 정전협정 이행여부를 확인 감독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중립국감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공산측이 지정한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 요원이 철수하기 전까지는 4개 국가요원들이 이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

정전협정에 근거하여 구성된 중립국감독위원회는 4개국으로써 유엔군이 지정한 스웨덴, 스위스와 북한군이 지정한 당시 공산국가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였다. 그러나 북한의 중립국감독위원회 무용화 의도에 의해 체코슬로바키아 대표단은 1991년 4월에, 폴란드 대표단은 1995년 2월에 본국으로 강제로 축출되었다.

현재는 유엔군 측에서 지정한 스웨덴, 스위스 국가 요원들만이 한국에서 위원회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폴란드 대표단은 북한의 불법적인 축출 조치에 아랑곳하지 않고 현재 본국에서 중립국감독위원회 기

능을 수행하고 있고 매분기 마다 열리는 판문점 회의에 출석하여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그림 II-3] 중립국감독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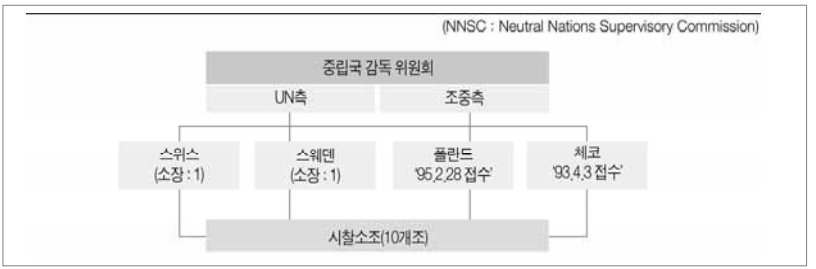

출처: 국제문화서비스클럽 홈페이지, <http://tourdmz.com/03jsa/p3-1.php>.

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공동경비구역은 DMZ내에서 남북이 서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다. 위도 상으로 북위 37도 57분, 경도상으로 동경 126도 40분에 위치하고 있다. 서울에서 북북서 방향으로 62㎞, 평양에서 남쪽으로 215㎞ 위치해있다. 널리 쓰이는 판문점이라는 말은 공동경비구역 소재지의 지명이다. 서울에서 개성을 가는 길에 있는 임진강의 지류인 사천강이 흐르는 곳으로 널판지로 만든 다리를 놓아서 사람들이 건너다니게 했다는 이유로 널문리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1951년 7월 8일부터 개성에서 열리던 휴전회담이 동년 10월 이곳으로 옮겨지면서 DMZ와 한반도 역사의 중심에 등장하게 된다. 휴전회담을 위한 중국어 표기를 위해서 판문점(板門店)으로 고쳐 쓰면서 지명으로 굳어졌다는 설도 있으며 그 이전부터 널다리를 건너기 전에 있던 주막을 사람들이 판문점(널다리가게)라고 불렀다는 설도 있다.

1951년 10월 22일 유엔측과 공산군측 연락장교단은 회담장소와 명칭을 이곳에 있는 네 채의 초가집을 중심으로 직경 1㎞를 원형지역으로 합의하고 그 위치를 지도에 표시하여 서로 교환한 것이 시초가 되었다. 1953년 7월 27일 조인된 정전협정에 따라 양측의 군대는 합의한 군사분계선에서 각각 2㎞씩 물러나 DMZ를 형성하게 되었고, 상호 협정준수 여부를 감시·감독하기 위한 기구로 '군사정전위원회'와 스위스, 스웨덴, 체코, 폴란드 4개국으로 이루어진 '중립국감독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전쟁 당시 휴전회담 등이 열렸던 원래의 회담 장소는 지금의 위치에서 약 1㎞ 북쪽에 있었으며, 앞에 언급한 네 채의 초가집 외에 회담장으로 이용되었던 가건물 두 채, 세 채의 퀀셋막사가 전부였다. 휴전이 성립되면서 다시 측정한 결과 원래의 회담 장소가 군사분계선 북쪽 1㎞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 군사분계선 중간지대로 옮겨지게 되었고 현재의 공동경비구역은 가로 세로 각각 800m정도의 장방형 공간이다. 여기에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 등 24동의 건물이 들어서 있다.

공동경비구역의 대표적 건물은 남쪽의 '자유의 집'과 북쪽의 '판문각'이다. 군사분계선을 마주보고 있는 이 두 건물 뒤편에는 양측이 회담장소로 사용하기 위해 건립한 '평화의 집'과 '통일각'이 있다. DMZ 내에서 일어나는 남북양측의 회담은 쌍방의 합의에 따라 이 두 건물 중 한 건물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공동경비구역은 DMZ 내에서 남북회담이라는 정치적 행동이 이루어지는 유일하고 가장 중요한 장소이다.

3. DMZ의 정치적 사건

DMZ는 일반적인 정치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개방되고 자유로운 공간이 아닌 남북 상호간의 엄밀한 감시·감독이 지속되며 민간인이 거주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한 정치적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지 않는다.

DMZ에서 전쟁 외에 정치적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남북한과 유엔 등이 정전체제의 이행을 상호 감시하고 협상의 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공동경비구역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판문점, 즉 공동경비구역에서 일어났던 정치적인 사건을 크게 두 가지 종류, 정치적 회담과 망명으로 나누어 정리하고자 한다.

가. DMZ에서의 남북회담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경쟁하는 양 집단이 모여서 대화와 토론을 하는 회담이다. 이러한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행동인 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DMZ 내부의 장소는 실질적으로 판문점(공동경비구역) 뿐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판문점에서 이루어진 남북회담을 시대별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 1950~1960년대

이 기간 동안 남북은 6·25로 인해 상호 불신과 적대감이 매우 컸었고, 따라서 판문점에서 이루어진 회담의 대부분은 실향민 문제 등과 같은 전후처리 문제가 중심이 되었다.

(가) 휴전협정

1951년 이후 전쟁이 지금의 DMZ 인근에서 고착화되자 유엔군과 공산군은 전쟁의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기 시작하였고 동년 7월 10일 개성에서 시작된 회담은 10월 28일부터 판문점으로 장소를 옮긴 후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완전히 체결되기까지 1,076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나) 실향민문제 해결을 위한 회담

전후 실향민의 서신교환 및 생사확인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53년 12월 11일부터 1954년 3월 1일 사이에 남북접촉이 이루어졌다. 국제적십자위원회를 통해 이 회의의 내용이 실현되는 방안을 모색하였으나 이산가족 상황을 양측이 교환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

(다) 1964년 도쿄 올림픽대회 남북 단일팀 참가

북한은 1962년 제59차 모스크바 세계올림픽위원회(IOC)총회를 통해, 1964년 도쿄 올림픽대회에 남북 단일팀이 참가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를 했고, 판문점에서 남북체육회담을 가질 것을 제의하였으나 대내외 선전 차원의 실천방안을 서로 주장하는 것에 그쳐 실현되지는 못하였다.

(2) 1970년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동서냉전이 약화되고 데탕트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 무렵 미국과 중국의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고 일본과 중국이 수교를 맺는 등 국제정치상의 훈풍이 불어왔다. 이러한 분위기가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쳐 20년 이상 단절된 대화가 DMZ·판문점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가) 남북적십자회담 (이산가족회담)

1970년 8월 15일 박정희 대통령의 '평화통일구상선언'과 북한측의 대화의지 표명으로 인하여 이산가족과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등에 대하여 1971년부터 대한적십자사(이하 한적)과 북한적십자사(이하 북적)사이에 일련의 회담이 이루어 졌다.

이를 위해 1971년 8월 20일부터 9월 16일까지 판문점에서는 5차례의 '파견원 접촉'이 있었다. 첫 파견원 접견은 악수와 서신 교환으로 4분 만에 종료되었으나, 이어지는 남북대화의 첫 걸음이라는 의미가 있었다.

한적과 북적은 1971년 9월 20일부터 1972년 8월11일까지 판문점에서 25회의 예비회담과 16번의 '실무회의'를 통해 적십자회담의 의제와 절차에 관한 사항을 확정했다. 이후 본 회담은 서울과 평양을 왕복하며 7차례 이루어졌다. 그러나 북측의 정치공세 등으로 인하여 적십자회담 본 회의는 1973년 7월 13일 7차 회담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었다.

1973년 11월 15일 북적의 요청으로 8차 본회담의 재개를 위한 준비작업이 시작되었다. 1973년 11월 28일부터 1974년 5월 29일까지 본회담 재개를 위한 '대표회의'가 모두 7차례 판문점에서 개최되었다.

1974년 5월 22일 제6차 대표회의에서 합의된 대로 1977년 12월 9일부터 3년간에 걸쳐 적십자회담의 본회담 재개 및 의제 설정을 위하여 25차례 '실무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를 통해 이산가족 방문과 우편물교환소 등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북한은 1978년 3월 19일 제26차 실무회의를 하루 앞두고 한미 합동군사훈련(팀스피리트 훈련)을 비난하면서 실무회의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였다.

(나) 비밀회담

제9차 남북적십자 예비회담 다음날인 1971년 11월 20일부터 1972년

3월 22일까지 한적의 정홍진 대표와 북적의 김덕현 대표가 판문점에서 11차례 비밀회담을 했다. 이 회담에서 지금까지의 남북관계를 재정립하는 '7·4 남북공동성명서' 발표를 위한 실무자 간 비밀접촉과 남측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북측의 김영주[7]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의 평양·서울 상호 방문을 조율하였다. 이 상호 방문의 사전 준비를 위해서 남측의 정홍진과 북측의 김덕현이 평양과 서울을 방문하였고, 이것은 남북이 사전 합의하에 DMZ를 왕래하기 시작한 효시가 되었다.

(다) 남북조절위원회 회의

'7·4 남북공동성명서'의 실행을 위하여 남북조절위원회 본회의를 앞두고 공동위원장 회의가 서울과 평양에서 있었고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이 합의서에 의거한 실무 운영기구인 간사회의가 1973년 3월 10일, 4월 24일, 5월 23일 세차례 판문점에서 개최되었다.

1973년 8월 28일 북측의 남북조절위원회 중단 선언으로 인해 중단되었던 회의의 재개를 위하여 1973년 12월 5일부터 1975년 3월 14일까지 남북조절위원회 개편과 위원회 재개를 위해 필요한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부위원장 회의가 10차례 있었다.

하지만 북측은 이후 남북조절위원회 회의 개최 대신 '민족통일준비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한 대표들을 파견하였고, 1979년 2월 17일, 3월 7일, 3월 14일에 판문점에서 개최된 회의는 아무런 합의점을 가지지 못한 채 종결되었다.

7- 이후락의 방북 이후, 북측은 건강상의 문제로 김영주 대신 박성철 내각 제2부수상을 서울로 보냈다.

(라) 남북탁구협회 회의

북측이 1979년 4월 25일 평양에서 개최되는 제35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여 출전할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 회담을 제의 하였고, 1979년 2월 27일부터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4차례에 걸쳐 개최되었다. 그러나 북측이 단일팀을 만들것만 고집하였고 남측선수들 개별출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임으로 인해 결국 이 회의도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하고 끝났다.

(3) 1980년대

이 기간은 이전 시기 보다는 정치, 적십자, 수해물자 인도, 체육, 경제, 국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판문점에서의 남북회담이 제기되었고 이루어졌다.

(가) 남북총리회담을 위한 실무대표 접촉

1979년 12월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한 이후 남한의 정세가 빠르게 변하는 가운데 북한이 1980년 1월 '남북총리회담'을 제의하였다. 이를 위해 1980년 8월 20일까지 판문점에서 남북총리회담을 위한 실무대표 접촉이 10차례 이루어졌다. 그러나 장소, 의제, 절차 등의 문제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고, 남한의 국내 상황의 비난 등을 반복하던 북한은 9월 24일 실무대표 접촉 중단을 일방적으로 선언하였다.

(나) 남북체육회담

북한은 1984년 3월 30일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김유순 북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한을 정주영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앞으

로 보내 제23회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 남북한 단일팀을 보낼 것을 제의하였다. 이를 위하여 1984년 4월 9일부터 5월 25일까지 3차례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회담이 개최되었다.

남측은 북측이 미얀마 아웅산 테러사건과 최은희·신상옥과 같은 납치사건 등으로 남북간 긴장과 대결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어 체육인들간의 교류에서도 불안감을 느끼게 한다는 점을 피력하였으나, 북측은 체육회담에 정치적인 문제제기는 옳지 않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이로 인해 체육회담은 성과없이 끝나고 말았다. 이 회담의 목적은 당시 아웅산 테러사건 등과 관련해서 국제사회의 대 북한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하나의 대외적 선전행위였다고 볼 수 있다.

(다) 수해물자 인도·인수를 위한 실무접촉

북한은 1984년 9월 8일 서울 경기 일원의 폭우로 생긴 수재민을 지원하겠다며 한적이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한적은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를 수락하고 인수절차를 논의하기 위해서 실무접촉을 진행하였다. 1984년 9월 18일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실무회담에서 해상운송 외에 육로를 통해 직접 수해지역을 방문하고 수재민에게 구호품을 전달하겠다는 요구를 하였으나 남측은 판문점 남쪽지역에서 구호품을 인도해 줄 것을 요구하여 회담이 결렬되었다. 하지만 북측은 다음날 남측이 요구한 방법으로 물자를 보내겠다고 밝혔으며,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물자지원이 이루어짐으로 막혔던 판문점 대화에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라) 남북적십자회담

수재물자 인도·인수를 계기로 남북적십자회담이 재개되었다. 1984년 10월 29일 남북적십자 본회담 재개를 위한 실무접촉을 북측이 제의해 오자 동년 11월 20일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실무회의가 개최되었고 1985년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에서 제8차 남북적십자 본회담이 개최되었다.

(마) 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단 교환을 위한 회담

제8차 남북적십사 본회담 직후 남북 양측의 합의에 따라 고향방문단과 예술공연단이 상호 교환방문 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위한 실무 회담이 판문점에서 3차례 개최되었다. 1985년 7월 15일에는 구체적인 절차가, 7월 19일에는 방문지에 관한 내용이 논의되었다. 8월 22일 3차 접촉에서 양측은 판문점을 통한 동시 교환방문형식을 취하기로 합의하였고 고향방문단 50명, 예술공연단 50명, 기자 30명, 지원단 20명의 인원수도 합의하였다. 동년 9월 20일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의 동시방문은 판문점 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라 실현되었다.

(바) 남북경제회담

1984년 10월 12일 남한의 신병현 경제기획원장관이 북한에 남북 간의 경제협력과 교류확대를 위한 상설기구 설치를 제안하였다. 제1차 경제회담이 11월 15일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를 통해서 남북 간의 '직접 교역'을 실시하는 문제가 논의되었다.

1985년 11월 20일까지 5차에 걸친 회담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서 명칭, 교류 대상 품목 명시에 관한 의견, 서명란에 국호를 사용하는 문제 등 부차적인 문제로 인해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가 1986년 1월

20일 제6차 회담을 이틀 앞 두고 팀스피리트 훈련을 구실로 북한이 모든 남북 대화를 연기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남북경제회담은 중지되고 말았다.

(사) 남북국회회담

1985년 4월 북측은 '남북한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에 관한 서한을 남측의 채문식 국회의원 앞으로 보냈다. 이에 따라 예비접촉이 1985년 7월 23일, 9월 25일 개최되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2년 10개월 후 1988년 7월 남한의 김재순 국회의장의 명의로 '서울올림픽대회에의 북한참가 촉구 결의문'을 담은 편지를 북한에 전달하였고 이를 기회로 남북국회회담을 위한 준비접촉이 1988년 8월 19일부터 1990년 1월 24일까지 판문점에서 10차례 있었다. 그러나 이 회담 역시 북측의 팀스피리트 훈련에 대한 항의 등으로 더 이상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였다.

(아) 학생단체 교류시도

1988년 3월 서울대 총학생회는 김일성종합대학교에 6월 10일 판문점에서 '남북학생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고, 김일성종합대학 학생위원회는 이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제지로 회의는 무산되었다.

(4) 1980년대 말~1990년대 중반

1980년대 말부터 소련 및 동구권 사회주의 체제가 급격하게 붕괴하였고 중국 등 아시아의 공산국가들도 급격하게 개혁·개방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더욱이 남한은 러시아, 중국,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과 수교를 맺으며 경제적으로 급격하게 성장하여 북한은 세계무대에서 외

교적으로 고립되었다. 더불어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도 겪게 되는데 체제의 유지와 생존을 위하여 남북관계 개선을 모색하게 되고, 이를 위해 판문점에서의 고위급회담과 민간교류가 활성화되게 되었다.

(가) 남북고위급회담

1988년 12월 28일 강영훈 국무총리는 북한의 연형묵 총리에게 '남북총리회담' 개최를 제의하였고, 연형묵은 '남북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제안했다. 남측에서 이를 수락하자 1989년 2월 8일부터 1990년 7월 26일까지 8차례 예비회담과 2차례 실무대표 접촉이 판문점 평화의 집과 통일각에서 번갈아 진행되었다.

이후 양측은 1990년 4월부터 1992년 2월까지 6차례에 걸린 고위급회담을 통해 상호 이견을 좁히고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와 '남북한 비핵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나) 남북체육회담

1989년 3월 9일부터 1990년 2월 27일까지 제11회 북경 아시아경기대회에 남북 단일팀을 구성·출전시키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9차례의 남북체육회담 본회담과 6차례의 실무대표 접촉이 판문점 평화의 집과 통일각에서 개최되었다.

결국 북경 아시아경기대회에는 남북 간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단일팀을 출전시키지는 못했지만 이후 이어진 회담을 통해 1991년 2월 12일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에 단일팀을 출전시키기로 합의하였다.

(다) 남북적십자회담

남북적십자 실무대표접촉은 1989년 9월 27일부터 1990년 1월 8일까지 8차례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여기에서 고향방문단과 예술공연단의 규모는 합의되었지만, 북측이 예술공연에 '피바다' 등 공산혁명의 내용을 담은 가극을 공연하고자 주장하여 결국 회담이 결렬되었다.

1992년 6월 5일부터 8월 7일까지 8차례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다시 이산가족노부모 방문단과 예술단의 상호 교환·방문 논의가 있었으나 당시 이슈가 되었던 핵문제,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의 송환문제,[8] 을지 포커스 훈련 등에 관한 의견 차이로 실무대표 회의는 아무런 성과 없이 중단되었다.

(라) 핵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특사교환 실무대표 접촉

1993년 3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자 이 문제의 해결이 급선무라고 판단한 남한이 대화를 요청했고, 북한은 현안을 다루기 위한 쌍방의 특사를 교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를 위하여 1993년 10월 5일부터 1994년 3월 19일까지 남북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대표 접촉이 8차례 판문점 평화의 집과 통일각에서 개최되었으나 결국 북한의 팀스피리트 훈련, 방어용 패트리어트 미사일 반입 등에 대한 반발로 회의가 중단되었다. 이 와중에 '서울 불바다'와 같은 전쟁 위협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8-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는 1993년 3월 19일 김영삼 정부에 의해서 판문점을 통해 북측으로 송환되었다.

(마)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준비 접촉

북한의 핵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1994년 6월 카터 전 미국대통령이 평양을 방문에 김일성과의 협상을 통해 북미고위급회담 개최에 합의하였다. 이와 함께 김일성은 카터를 통해 김영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제의하였고, 이를 위해 1996년 6월 28일 부총리급 예비회담이 판문점에서 비공개로 개최되었다. 이후 7월 1, 2일 실무대표 접촉이 있었고 7, 8일에는 통신과 경호에 관한 실무자 접촉이 있었으나, 7월 8일 김일성이 사망함에 따라 남북정상회담은 무기한 연기되었다.

(바) 민간교류

이 외에도 판문점에서는 1990년 10월 18일 평양에서 열린 '범민족통일음악회'에 남측 인사가 참가하기 위한 실무회의, 1991년 8월 12일 서울지역대학신문기자연합의 방북취재를 위한 예비회담, 1991년 9월 18, 24일 건국대 국어국문학과의 북한 사적지 답사 및 김일성대학 조선어문학부와의 자매결연 추진을 위한 학생실무대표 접촉, 1991년 11월 9일에는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국제 심포지엄에 북측 여성 대표를 초청하기 위한 실무회의, 1992년 2월 10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와 북한의 조선기독교도연맹의 제41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기총회 참석을 위한 대표접촉 등이 이루어졌다.

(5) 1990년대 중반 이후

1990년대 중반 이후 판문점은 남북의 정치적 대화의 장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북측이 현재의 정전체제를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에 있다. 북한은 현재의 불안

정한 정전체제를 무력화시키고 미국과 상호불가침을 명시하는 평화체제를 만들기 원하는데, DMZ와 판문점은 정전체제의 물리적 상징과도 같은 곳이다. 따라서 북한은 판문점을 회담장소로 사용하는데 기피하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남북한의 관계가 남북정상회담으로 개선된 이후 양측은 굳이 판문점을 대화의 장소로 삼지 않아도 개성, 금강산, 제주도 등 회담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가) 정주영 회장의 방북

1998년 6월 16일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은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도보로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을 지나 군사분계선을 넘어갔다. 정주영 회장이 북한에 제공한 소떼를 실은 트럭은 군사분계선을 넘어 통일각 옆에서 북측에 건네졌고, 트럭 기사들은 남측으로 돌아왔다. 남북간 회담은 아니지만 판문점을 통한 최초의 경제인 방북이라는 의미를 지니며 이후 정주영은 수차례 더 판문점을 통해 북한을 방문하였다.

(나) 남북정상회담 준비접촉

김대중 대통령의 베를린선언(2000년 3월 9일) 이후 남북관계 진전을 모색하던 남북한 당국은 북경에서 개최된 비공개 특사 접촉을 통해 2000년 4월 8일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합의하였다.

이를 위한 4월 22일부터 5월 18일까지 정상회담 개최에 따른 절차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준비접촉을 판문점에서 5차례 개최하였다. 이 접촉에서 통신, 보도, 의전, 경호 등의 내용이 논의되었다.

(다) 남북군사실무회담

남북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이루어진 국방장관회담의 협의에 따라 2000년 10월 18일에서 11월 16일 사이에 열린 유엔사와 북한 간 4차례 비서장급 회의를 열었는데 이를 통해 DMZ를 개방하여 남북관리구역으로 설정하는 문제를 협의하였다. 11월 16일 유엔사측과 북측은 남북관리구역을 설정하기로 최종 합의하고, 11월 17일 제11차 유엔사-북한군 간 장성급회담에서 '비무장지대 일부 구역 개방에 대한 합의서'를 비준·발효시켰다.

(라) 2000년대 이후

판문점에서의 회담의 숫자가 줄었다고 해서 남북 대화와 교류의 장으로서 판문점의 역할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며, 판문점에서 논의되는 회담의 성격이 과거에는 정치·군사적이었다면 이제는 경의선, 개성공단연결 도로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교류와 소통을 위한 장소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표 Ⅱ-1] 2000년대 이후 판문점에서의 주요 남북회담

일시	내용
2001.6.15	남북장관급회담 수석대표, 판문점 통해 남북공동선언 발표 1돌 기념 축하편지 교환
2002.9.14	제6차 남북군사실무회담 개최
2002.9.17	제7차 남북군사실무회담 개최: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도로 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 채택·발효
2002.10.3	남북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접촉

<표 계속>

일시	내용
2002.12.23	남북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접촉 개최: 경의선과 동해선 임시도로 통행에 대한 군사적 보장문제 논의
2003.1.26	비무장지대 통행 관련 남북군사실무회담 개최: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 합의서 채택
2003.5.27	남북 적십자사, 판문점에서 제7차 이산가족 상봉후보 200명의 명단이 담긴 생사·주소확인의뢰서를 교환
2003.6.4	남북 철도·도로 연결 관련 군사실무접촉 개최
2005.8.12	남북장성급 회담 제4차 실무대표회담
2006.2.2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실무대표 접촉3차 수석대표접촉: 2월말~3월말 이틀간 남북장성급회담 통일각 개최 합의
2006.3.2,3	제3차 남북장성급회담
2006.5.16~18	제4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2006.10.2	군사실무접촉 수석대표 접촉
2008.1.25	제36차 남북군사실무회담
2008.3.27,28	6자회담 경제·에너지 협력 워킹그룹 남북실무접촉
2008.6.5	경제·에너지 협력 워킹그룹 수석대표회의 대비 남북 사전준비접촉
2008.6.11	경제·에너지 협력 워킹그룹 수석대표회의
2008.10.2	남북군사실무회담

나. DMZ에서의 망명사건

(1) 이동준 프라우다지 기자 귀순

1959년 1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제96차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 속개중 구소련 프라우다 신문사의 평양지국 번역기자 이동준(당시 30세)이 귀순하였다. 그는 남루한 남색 양복에 흑색 외투를 걸치고 레닌 노동모를 쓰고 회담 장소에 나타났다. 아침 회담이 시작된 지 약 5분 후인 오전 10시35분 경 때마침 공산대표가 서방세계에 대한 비난조의 연설을 하는 동안 이동준은 UPI통신기자인 '케이'에게 월남할 의사를 밝혔다. 케이는 남측 공동일직장교에게 이 사실을 알린 후 이동준을 북한기자들과 군인들의 눈을 피해 회담장소 건물 바로 옆에 있는 공동일직 장교실로 안내 미군 전투복으로 갈아입힌 후 식사운반원으로 가장하여 식사운반차에 탑승, 무사히 귀순시켰다. 이동준은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이 1956년 프라우다지의 번역기자로 들어갔던 것도 귀순이 목적이었다고 말했다.

(2) 이중간첩 이수근 위장 귀순

알려진 대로 이수근은 당시 북한 중앙통신사 부사장으로 있으면서 조선노동당 대남사업총책 이효순으로부터 위장월남 귀순하라는 지령을 받고, 1967년 3월 22일 판문점에서 열린 군사정전위원회를 취재하다가 오후 5시경 회의가 끝나자 재빨리 UN군측 대표인 준장 밴 클리프트의 승용차에 뛰어올라 극적인 탈출에 성공함으로써 귀순하였다.

한국정부는 그가 북한의 언론계 거물이며 지식인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그를 대대적으로 환영하면서 주택과 정착금을 지급하고 결혼까

지 주선하는 등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당시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수근은 전국순회강연 및 TV·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북한실정을 폭로하는 척하면서 한국의 각종 기밀을 수집하여 당시 베트남에서 기술자로 일하고 있었던 본처의 조카 배경옥을 통해 북한으로 보내려고 시도했다고 한다. 그의 여러 가지 행동이 점차 수상해지자 한국정부의 정보 및 수사당국에서는 그를 주시하고 경계하기 시작하였으며 그는 더 이상 한국에 있을 수 없음을 눈치 채고 배경옥과 함께 위조여권을 만들어 비행기로 탈출, 홍콩·방콕을 거쳐 호치민에서 북한으로 귀환하려다 한국정부의 정보요원에 의하여 체포되었고 군용기편으로 압송되어 재판을 받고 1969년 7월 3일 사형이 집행되었다고 알려졌다.

[그림 Ⅱ-4] 이수근 귀순환영식

출처: 국제문화서비스클럽 홈페이지, <http://tourdmz.com/04dmz/p1-2.php>.

"이중간첩 이수근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수근의 귀순과 탈출은 1980년대 말부터 한국 언론매체들에 의해 중앙정보부 직원들의 증언을 빌어 "조작된"사건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2007년 1월 15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는 15일 "지난달 전원위원회를 열어 인권침해사건인 이수근 간첩 조작의혹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며 "중앙정보부(중정)는 이수근을 위장간첩으로 조작해 처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9]

진실화해위원회가 과거 중정 자료와 직원들을 면담 조사한 결과 "중정 직원들이 이수근은 간첩이 아니라고 증언하고 있다"며 "중정에서는 위장귀순 여부를 신문하고 판단관 회의를 거쳐 자진귀순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이수근한테는 간첩에게 필수적인 암호명이나 난수표 등도 없었고, 북한으로 보내고자 모스크바 교회로 발송했다는 비밀편지 또한 난수표에 의해 암호화된 것도 아니었으며, 국가기밀을 담고 있지도 않았다고 전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1967년 당시 이수근이 운전기사나 감찰실 직원들의 동향감시가 심했기 때문에 외부활동이 어려웠고, 따라서 국가기밀 탐지행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봤다. 특히 출국 당시 제3국 생활에 필요한 도구(영한사전, 한영사전)를 소지했고, 홍콩 도착 후 직접 마카오와 구룡반도를 경유해 주중 북한대사관으로 탈출할 수 있었는데도 제3국인 캄보디아 행을 고집했던 것은 이수근이 중립국에서 살려고 했다는 점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9- 『연합뉴스』, 2007년 1월 16일.

(3) 중립국감독위원회 요원망명

1981년 10월 30일 중립국감독위원회 소속 체코슬로바키아 대표부의 로버트(Robert Orszagn)는 부비서장인 코파트(Kopat)대위와 함께 일상적 업무인 유엔사측 공동일직사무실에서 문서수발 업무를 수행하던 중 8시 30분경 유엔사측 제 4초소로 와서 미군 헤익스(Hakes)중사에게 망명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유엔사측은 체코 대표측의 망명자 신변인도를 거부하고 망명자의 신변을 보호한 후 본인이 미국망명을 요청함에 따라 이를 주한 미대사관에 보고, 국제법에 따라 미국으로 망명조치 되었다.

(4) 소련 관광객 귀순(마쓰작 판문점 망명사건)[10]

1984년 11월 23일 평양주재 소련대사관에 소속돼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젊은 외교관 바실리 야고브레비치 마쓰작이 판문점을 관광하던 중 갑작스러운 월남함으로 인해 발생한 총격전 사건이다. 일명 '마쓰작 판문점 망명사건'이다. 당일 오전 11시 30분경 북한 측 외국인 방문객들이 판문각 계단을 내려와서 북쪽 출입구를 통해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을 구경하고 나왔을 때, 한 방문객이 다른 사람에게 카메라를 주면서 사진을 한 장 찍어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북한 경비원 옆으로 다가가는 척하다가 갑자기 유엔사 공동일직 장교사무실 쪽으로 사력을 다해 뛰기 시작했다. 군사분계선까지는 100m가 채 안됐다. 순식간에 군사분계선을 넘은 이 방문객이 유엔사 경비병(미군)에게 뛰어가 영어로 "나를 도와 달라," "나를 보호해 달라"고 외치며 신변보호를 요청하

[10]- 레드넷, <http://red2.net/bbs/bbs/board.php?bo_table=military&wr_id=5556>; 국제문화서비스클럽 홈페이지, <http://tourdmz.com>의 내용을 정리함.

는 찰나 북한 경비병이 권총 2발을 발사한 뒤 추격하기 시작했다. 북한 경비병 수는 4명으로 불어났다.

미군 경비병 한 명이 남쪽 출입구로 내려가는 길을 안내하기 위해 먼저 뛰었고 마쓰작은 뒤를 따랐다. 그러나 총소리가 바싹 쫓아오자 이들은 길옆에 있는 늪 속으로 뛰어들었다. 이때 북한 경비병의 수는 10여명으로 늘어났다. 이중 3명은 마쓰작을 잡기 위해 군사분계선을 월경, 군사분계선에서 150m나 떨어진 연못(현재는 정원)까지 내려왔다. 거기서 마쓰작이 숨은 늪을 향해 68형 자동소총으로 집중 사격했다. 이에 대항, 유엔사 경비병들도 발사를 시작했다. 이때 군사분계선을 침범한 북한 경비병은 총 17명이었으며 연못을 중심으로 30여 분간의 총격전이 이루어졌다.

북한군의 총격에도 불구하고 소련인은 무사하였으나 이 총격전으로 인해 한국군 병사 장명기 상병(당시 일병)이 사망하고 미군 1명이 부상하는 희생이 뒤따랐으며 북한군도 3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피해 규모로만 봐서는 최대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북한 측 일직장교가 11시 50분경 직통전화를 통해 북한 부상인원을 후송할 수 있도록 6명의 북한 측 인원들을 대동하고 분계선을 넘을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유엔사측 일직장교에게 요청했다. 11시 59분경 사격이 멎고 북한 측은 군사분계선을 다시 넘어와 사망자와 중상자들을 모두 후송해 돌아갔다. 북한은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쌍방 경비병들을 완전 격리시키기로 한 합의를 스스로 위반한 것을 의식해서 이 사건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다. 다만 마쓰작을 유엔군이 납치해 갔다고 주장했다. 마쓰작은 늪에 숨어 목숨을 건진 뒤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유엔난민판정 고등판무관으로부터 정치적 망명의사를 인정받아 미국으로 건너갔다.

북한은 마쓰작의 성별을 여자로 바꿔서 교육해왔는데, 이는 납치당했다는 주장을 그럴듯하게 꾸미기 위한 수단으로 판단된다. 당시 총격전 도중에 넘어온 북한군 여러 명이 땅에 총을 놓은 채 두 손을 번쩍 들고 어색하게 서있는 장면이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이는 사격중지 요청을 우리 측에서 받아들이기 전에 북한군은 이미 손을 들고 항복했다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휴전이후 한국군과 미군의 총 앞에서 북한군이 항복의 표시를 한 최초의 사건으로도 기록된다.

(5) 중공군 쭤슈카이(左修凱) 소교 부부 망명 사건

1989년 7월 29일 평소 진급에 대한 불만과 천안문 대학살사건 등으로 중국정부에 대한 혐오감을 느끼던 중국군 소교(소령) 쭤슈카이 부부가 미국으로의 망명을 결심하고 기회를 보던 중 오전 11시 10분경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 남측 출입문을 통과하여 도로를 직선으로 횡단하여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 맞은편 숲속을 통과하였다. 그들은 곧 구(舊)평화의집 유엔사측 경비병의 보호를 받아 유엔사측에 인계되었다. 당시 중국과의 외교관계가 개선되어가던 상황이었지만 중국의 줄기찬 송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희망에 따라 1989년 8월 6일 미국으로의 망명이 이루어졌다.

(6) 변용관 상위 귀순

변용관은 야간 근무를 서면서 남쪽 사병들과 연계를 가지게 되고 1998년 2월 2일 탈출을 결심하기로 하였다. 북측 1초소에 들어가 근무를 하던 중 변용관은 남측 1초소까지 접근했다. 변용관은 근무 중이던 남측 초소장에게 월남 의사를 표시했으나 남측 초소장은 이를 무시하

고 시간을 지연시켰다. 교대시간이 다가오자 다급해진 변용관은 일단 되돌아간 후 다음날 야간근무시 다시 탈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침상에 누워 탈출방법을 곰곰이 생각하던 중 야간 근무 시간보다 오히려 아침 7시쯤이 탈출에 더 적당하다 생각하여 다음날인 2월 3일 아침 7시 20분 즈음 군사분계선을 넘었는데 남측의 반응이 없자 계속 남하하여 판문점 주 진입로에 도착 후 한국군에게 신병이 인도되어 귀순했다.

4. DMZ의 군사적 의미와 현황

'DMZ'란 국제법상 국가가 군사병력의 주둔 및 군사시설의 유지를 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하는 그 국가의 영토(영해, 하천, 운하 및 그 상부 영공 포함) 중 특정 지역이나 지대(Specified Areas or Zones)를 말한다.[11] 즉, 이미 무력충돌을 경험하였거나 또는 장래 그것의 예방에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둘 또는 그 이상의 당사자가 일정한 지역을 비무장화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와 같이 비무장화가 약속된 지역을 DMZ라고 한다. DMZ의 설치 목적은 전쟁당사자들이 접경지역을 비무장화함으로써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신뢰구축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잠재적 또는 현재적 무력충돌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 간에 접경지역을 비무장 완충지대화 내지 중립화함으로써 장래 예상되는 국제분쟁을 미리 방지하려는데 있다. 말하자면 DMZ는 잠재적인 분쟁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서로 대립하는 힘을

---

[11] Jost Delbrük, "Demilitarization," in Rudolf Bernhardt (ed.),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EPIL)*, Vol. I (Amsterdam: Elsevier Science Publishers, 1992), p. 999.

관리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다.[12]

DMZ는 본질적으로 국제법상 제도로, 국제법에 의해 설정되는 지역이며 이를 감시하기 위한 기구도 역시 국제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제도적 장치이다. DMZ는 통상 양자 혹은 다자조약에 의해 설치되는데, 적절한 통고(Due Notification)가 이루어지고 국제법상 구속을 받겠다는 의사가 명백히 확립된다면 일방적 선언(Unilateral Declarations)에 의해 비무장화가 행해질 수도 있다.[13]

한국에서 DMZ가 만들어진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로 6·25 당시 적대쌍방 간 전쟁행위를 정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었다.[14] 교전 쌍방 간에 적대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해 군사분계선과 DMZ를 설치하여 상호 접촉하고 있는 군사력을 분리시키는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군사분계선은 쌍방의 군사력을 격리시키는데 기준이 되는 경계선을 의미하며[15] DMZ는 교전 쌍방의 군사력을 격리시키는 지대로

12– 제성호, 『한반도 비무장지대론: DMZ(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서울: 서울프레스, 1997), pp. 22~23.

13– 위의 책, p. 23; Jost Delbrük, “Demilitarization,” p. 999.

14– DMZ의 협상과정을 살펴보면, 1951년 7월 10-11일 개최된 정전협상 제1-2차 본회의에서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은 회의 안건에 대해 협의하고, 제2안건인 ‘DMZ 설치를 위한 군사분계선’문제를 비롯한 6개 의제에 대해 합의하였다. 7월 12일부터 7월 26일간 제3-10차 본회의에서 공산군 측은 38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쌍방 10㎞의 DMZ의 설치를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유엔군 측은 현 접촉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하는 20마일 넓이의 DMZ를 설치할 것을 주장하였다. 1951년 8월 15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쌍방은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두고 비공개로 군사분계선과 DMZ 문제를 다루기로 합의하였다. 1951년 11월 23일 개최된 분과위원회에서 쌍방은 당시 전선의 접촉선을 기준으로 군사분계선을 설정하고 그 선을 중심으로 남과 북으로 2㎞씩 4㎞ 폭의 DMZ를 설치하는 지도를 만들었다.

15– 1953년 채택된 정전협정 제1조 제1-4항에 의거 1954년 9월까지 군사분계선은 임진강 장단반도에 세워진 표식물 제0001호에서 시작하여 동해안의 마지막 표식물 제1,292호까지 표식되었다. 그 중 696개는 유엔군 측이 나머지 596개는 공산군 측이 관리책임을 맡기로 했다. 표식물의 간격은 어느 표식판이든지 앞에 서거나 좌우로 보았을 때 다음 표식물이 보여야 하며, 군사분계선이 직선일 경

서 병력의 주둔과 무기배치, 군사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등 완충지대를 의미하는 것이다.[16] 이러한 취지에서 볼 때 당초 DMZ는 전쟁행위를 중지하고 이 땅에 평화를 정착시킬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다.

가. DMZ의 군사적 현황

정전협정에 의하면, 쌍방은 모두 DMZ 내에서 또는 DMZ로부터 또는 DMZ로 향하여 어떠한 적대행위도 감행하지 못한다. 또 군인이든 민간인이든 DMZ에는 그 지역 사령관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 민사행정과 구제(Relief) 집행관계자 그리고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 허가를 받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DMZ에 들어가도록 허가받는 군인과 민간인의 수는 각방 사령관이 결정하지만, 어느 일방이 허가한 인원의 총수는 언제나 1,000명을 초과하지 못한다. 민사행정 경찰의 인원수 및 휴대무기는 군사정전위원회가 규정하며, 다른 인원은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무기를 휴대할 수 없다.

그러나 휴전과 동시 즉각 민사행정 경찰을 투입할 수 없었다. 군사정전위원회는 우선 '군 경찰'인 헌병을 투입했다가 민사행정 경찰로 교체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 합의는 지켜지지 않았다. 양측은 처음 배치했던 사실상의 전투인원 헌병을 민정경찰이라고 부르며, 경찰로 교체

우에는 500m를 넘지 않고, 굴곡선일 경우에는 300m를 넘지 않는 거리를 유지하도록 했다.

16- 정전협정 제1조 군사분계선과 DMZ 제6항은 "쌍방은 모두 DMZ 내에서 또는 DMZ로부터 또는 DMZ에 향하여 어떠한 적대행위도 감행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8항에서는 "DMZ 내의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그가 들어가려고 요구하는 지역의 사령관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어느 일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지역에도 들어감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충돌방지를 위한 초보적인 조치이다.

하지 않았다. 또한 1953년 7월 31일에 개최된 군사정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군사정전위원회 쌍방은 민사행정 경찰을 보총과 권총만으로 무장시키자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즉, 방아쇠를 잡아당길 때마다 총탄 1발 이상 발사할 수 있는 자동식 무기를 금지시키기로 합의한 것이다.

그러나 DMZ와 인근지역은 휴전이후 '중무장지역'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 북한은 실제로 실전전력의 70%인 70만 명의 보병 및 기계화 부대와 8천문의 야포 및 2천대의 전차기 전력을 휴전선으로부터 80㎞ 이내의 근거리에 전진 배치하였다. 한국군도 북한 전력의 휴전선 근접배치에 대응하여 방어력을 배치함으로써 DMZ와 그 일원은 세계 최대의 화력이 대치하는 중무장지대가 되었다.[17]

특히 DMZ 내부에는 군사인원, 무기, 장비, 물자의 철수가 의무화되어 있는 곳이다. 그러나 정전협정의 내용과는 달리, 실제로는 쌍방이 2㎞씩 후퇴라는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DMZ의 남방한계선과 북방한계선을 따라 배치된 수많은 군인과 막강한 화력이 실제로는 'DMZ내'에 배치되어 있다. 양측은 휴전초기부터 한계선을 넘어 군사분계선 쪽으로 다수의 중화기 진지를 구축하고 무장병력을 배치해왔다.

특히 북한은 화력과 인력 이동의 엄밀성, 생존성 그리고 기습공격능력의 극대화를 위해 기습남침용 땅굴을 모든 전선의 주요 접근로에 설치하였다. 현재 휴전선 지역에서 우리 군이 발견한 4개의 땅굴들은 DMZ 내부 전선지역의 주요 접근로 상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북측은 66개의 중화기 진지, 4개의 땅굴, 30㎞에 달하는 지뢰지대, 283개의 감시초소 및 관측소, 철책선, 막사 등의 시설을 운영하고

17- 한국국방연구원, 『2010 동북아 군사력과 전력동향』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11), pp. 166~167, 254~257 참조.

있다. 우리 측도 북한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DMZ내 주요지점에 96개의 GP 및 OP를 운용하고 있다.[18]

나. DMZ에서의 군사적 충돌

앞서 언급한 DMZ의 설정 목적은 쌍방의 군사력을 분리시켜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자는데 있었다. 이처럼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분계선과 DMZ를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전협정 체결 직후부터 북한측은 DMZ 내에서 끊임없이 군사적 충돌을 야기시켜왔다.

먼저 그동안 북한이 저지른 DMZ 내에서의 도발행위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1954년 이후 북한이 육상에서 야기한 주요 충돌은 [표 II-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15건으로 집계되고 있다.[19] 이 현황은 해상과 공중에서 발생한 군사충돌사건은 배제하고 육상위주로 정리한 것이다.

[표 II-2] 주요 위반사건 현황

구분	총계	53~60	61~70	71~80	81~90	91~00	01~03	04~06	07~09
소계	219	13	82	32	21	40	18	10	3
육상	115	1	37	11	10	32	12	10	2
해상	82	7	40	14	7	8	5	0	1
공중	22	5	5	7	4	0	1	0	0

출처 : 국방정보본부, 『군정위편람』 (서울: 국방부, 2010), p. 222 참조.

---

[18]- 제성호, 『한반도 안보와 국제법』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10), pp. 161~162.

[19]- 휴전 이후 쌍방은 DMZ와 해상 및 공중에서 발생한 정전협정 위반 현황 통계를 작성하여 매월 1회 판문점에서 이를 상호 통보 및 교환해 왔었으나, 북측이 1994년 5월부터 일방적으로 중단함에 따라 유엔사도 이후부터는 위반 건수에 대한 공식통계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 이 글에서 제시하는 115건은 주요 사건만을 정리한 것이다. 군사분계선 월경침범, 상대측을 향한 총포격, 납치, 살상 등의 범주에 포함되는 사건 위주로 정리한 비공식집계임을 밝혀 둔다.

1950년대부터 10년 단위로 대표적인 사건과 통계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950년대의 경우 1건으로, 1953년 11월 16일, 북한군 장교 1명이 군사분계선을 월선하여 유엔사측 인도군 포로관리부대에 침투하려다 체포되어 북측에 인도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 도발이 급증하게 된다. DMZ 내에서 총 37건에 달하는 도발이 일어났다. 대표적인 사건을 보면, 1961년 8월 25일 북한군 정찰대가 군사분계선 표식물 0681호 부근 군사분계선을 월선, 남측 초소를 습격하여 남측 인원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1964년 1월 25일에는 판문점 방문객 일행 중 1명(김종호)이 북측 경비초소에 접근하여 월북을 시도하였다. 이를 목격한 다른 방문객 1명(최진영)이 월북을 저지하자 북한군이 최진영을 강제 납치한 사건이 발생했다.

1970년대에는 11건의 도발사건이 있었다. 1973년 3월 7일 군사분계선 표식물 0654호 교체작업을 하던 남측 민정경찰요원들에게 북측 진지에서 사격을 가해와, 남측 인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 시기로 부터 군사분계선 표식물에 대한 보수작업이 중단되었다.

1980년대에는 모두 10건으로, 1980년 3월 27일, 군사분계선 표식물 0715호 동남쪽 약 900m 지점에 북한군 3명이 침투하여 남측 순찰대에 총격 후 도주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으로 남측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북한군도 1명이 사살되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1990년대에는 모두 32건의 도발이 이어졌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1992년 5월 21과 22일, 북한 무장간첩 3명이 3사단 188GP 후방지역으로 침투하여, 남측과 교전 중에 사살된 사건을 들 수 있다. 1997년 10월 17일 대성동 영농지역 인근 야산(군사분계선표지판 0121호)에서 도토

리를 줍던 대성동주민 홍승순(여, 67세)과 아들 김용복(41세)이 북한군에 의해 강제 납치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우리 측의 강력한 항의와 소환 요구에 따라 나흘 후인 10월 21일에 피랍 현장에서 공동조사를 실시한 후 북한 측은 2명을 유엔사측에 인계한 바 있다.

2000년 이후에는 24건이 발생하였다. 대표적인 도발사건을 보면, 2001년 11월 27일, 북측의 242GP에서 남측 247GP(25사단)를 향하여 기관총 3발을 발사하였다. 북측이 쏜 3발 중 1발은 GP 총안구에, 2발은 GP 철책지역에 피탄되었으나,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다.

다. DMZ의 군사시설

(1) GOP(General Out Post, 일반전초)

GOP는 적과의 조우가 농후한 상태에서 부대가 행군 후 정지하고 있을 때, 야영지나 전투진지에 있을 때 주력부대가 적의 기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주력부대로부터 상당한 거리를 두고 배치되는 소대급 규모의 부대로서, 배치된 GOP는 적군의 접근을 조기에 탐지하여 주력부대에 경고함과 동시에 제한된 공격행동으로 적부대를 지연시키고 주력부대의 위치를 기만하여 가능하면 적이 아군 주력부대에 도달하기 전에 최대의 희생을 치르도록 강요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한국에서는 통상적으로 철책부대를 호칭하는 말이다.

여전히 휴전상태인 한반도에서는 GOP의 개념을 군단급으로 운영한다. 하나의 사단 내에 2개의 연대가 GOP로 편성되어 철책선에 투입(2교대), 나머지 하나는 후방에서 대기해 유사시 전술적 후퇴를 하는 전방 GOP연대와 합류하여 작전에 임한다. 대대 내의 3개 보병중대와 1개 중화기중대는 각각 주어진 섹터내의 경계 작전에 임하게 되는데 주

간에는 중화기중대와 보병중대 주간 근무자가, 야간에는 보병중대가 도맡아 경계근무에 임한다.

전술적 최소단위는 소대나 분대가 아닌 야간 2인 1조, 주간 3인 1조의 초병들로 구성되며, 전방경계근무의 특성상 선조치 후보고의 체계를 허용해야만 작전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의 작전수행능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수, 부사수의 초병 상호간의 신뢰가 그 어느 작전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장기간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해야하는 상황과 낮과 밤이 바뀌는 불규칙적인 근무형태는 병사들로 하여금 과도한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종종 화기사고로 연결되기도 한다. 이런 위험요소를 배제하기 위해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간격으로 후방부대와 교체한다. 연대를 기준으로 1대대는 GOP에서 2~3대대는 FEBA(Forward Edge of Battle Area, GOP라인 밖의 후방)근무를 도입하고 있다.

주요 시설물로는 관망대, 초소, 통문, 대기초소, 소초 등이 있다. 관망대는 주야간 근무시 높은 곳에서 경계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물로 1, 2층 구조로 되어 있고, 기관총이 항시 배치되어 있다. 초소는 콘크리트로 지어져 있고, 보통 단위거리당 4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다. 통문은 GP와 GOP간을 이어주는 통로에 설치하는 통행문이다. 대기초소는 주야간 근무자들이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하에 시설물이 있다. 소초는 철책과의 위치를 볼 때 능선 넘어 7, 8부 능선쯤에 설치되며, 소대규모의 초병들의 거주 공간 및 탄약 보관소이다. GOP내 특수 시설물로 외부인의 방문이 허락되는 유일한 건물인 전망대가 있는 GOP도 있다. 열쇠전망대, 승리전망대, 통일전망대, 도라산전망대 등이 유명하다.[20]

20_ 위키피디아백과사전에서 인용, <http://ko.wikipedia.org/wiki/%EC%9D%BC%EB%B0%98_%EC%A0%84%EC%B4%88>.

(2) GP(Guard Post)감시초소

DMZ내 남방한계선과 군사분계선 사이에 '전초(前哨)'로 부르는 'GP'가 있다. GP는 말 그대로 감시초소로서 북한군의 침투나 매복을 조기에 발견하고, 또한 북한의 동태 및 군사 활동을 감시하는 최전선에 위치한 초소로서 통상 민정경찰이라고도 하는 철책부대의 수색대대가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DMZ에 남북이 무장GP 100여 개를 설치, 운영하는 것 자체가 정전협정 위반이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같은 특징으로 인해 GP에서는 남북 간에 긴장을 고조시키는 사건이 자주 발생한다.

[표 II-3] GP사건일지

일시	사건개요 및 진행
1973.3.7	-3사단(백골 부대) 1개 소대 병력이 DMZ내 북한군의 559 GP 앞에서 표지판 보수작업을 하고 복귀하는 도중, 북한군이 기습사격을 가함. 대위 1명, 중사 1명 중상을 입음. -사단장 박정인 준장은 북한측에 즉각 사격중지를 요구했으나 무시됨. -오후 2시10분. 사단 포병부대에 사격준비를 명령함. -정찰기를 상공에 띄워 표적인 북한측 GP를 확인한 후 포격함. -주한 미군에서 과도한 대응이었다고 문책을 요구하여, 사단장 해임 및 예편 조치됨. -김일성, 북한 4사단장 해임 및 25사단으로 교체함.
1984.6.26	-조준희 일병이 22사단 GP 근무 중 내무반에 수류탄 3개를 투척, 총기를 난사해 병사 16명을 사망케 한 후 북으로 도주함. 이 와중에, 조 일병을 추적하던 수색대원 4명이 지뢰를 밟아 사망하는 사고마저 발생, 대한민국 군대 역사상 최악의 총기사고로 규정되고 있음.
1995.9.4.	-GP 근무중이던 육군 부소대장 한효수(24) 중사가 총기를 빼앗아 월북함. 소대장 국승기(25·학군 32기) 중위와 총기를 빼앗긴 사병 7명이 구속됨.

<표 계속>

일시	사건개요 및 진행
1996.4.11	-대한민국의 15대 총선일, 투표가 마감된 후인 밤 9시 30분, 북한측 GP에서 10명의 북한군이 나옴. -밤 10시 30분 4명이 북측 GP로 복귀, 6명은 남하함. -3명 1조는 군사분계선에 대기함.
1996.4.12	-3명 1조는 새벽 0시 37분 군사분계선을 넘어옴. 비무장. -0시 49분 군사분계선 남쪽 2백m의 고지에 도착함. -3시 17분까지 고지에서 대기함. -3시 42분 북측 GP로 복귀함.
1996.4.17	-북한군 병사 7명이 무장을 하고서 중부전선 군사분계선을 넘어옴. 한국 국방부가 중부전선 군사분계선 침범 사건을 발표하면서 11일의 군사분계선 침범 사실도 공개함.
1997.7.16	-오전 북한 병사 14명이 중동부전선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남북한 GP 간에 23분 동안 3백여발의 소총과 포사격을 가함. 한국군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GP 관측구와 지하벙커 입구 일부가 파손됨. 북측에는 엠뷸런스가 긴급출동하여 20분 동안 머무름.
	-오전 10시 57분 북한군 7명이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먹실리 중동부전선 3사단 DMZ내 군사분계선 남방 70m까지 월경함.
	-한국군이 경고 방송 후 정전협정에 의거해 오전 11시 2분 2백발의 공중 경고사격함. -이에 대응해 북측 GP에서 남측 GP 두 곳에 소총 및 기관총으로 70~80발의 조준사격을 가함. -23분간의 교전 중, 북한군은 종류 미상의 포탄 2발과 박격포로 추정되는 10여발의 포탄사격을 가해 한국군 GP 2곳을 공격함. -한국군은 대전차화기인 57㎜ 무반동총과 M2 중기관총으로 대응사격함. -12시 2분 군사분계선을 월경한 북한군이 복귀함. -오후 1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정전위 소속 영국군 장군을 비롯한 7명이 현장조사함.
1998.2.24	-판문점으로부터 1.5㎞ 떨어진 DMZ 내에 위치한 국군 241 GP에서 김훈(金勳) 중위가 권총에 의해 사망함. -1999년 국방부 특별조사단은 창군 이래 최대 조사요원을 투입시켜 4개월여 동안 진행한 김훈 중위 사망사건 재조사에서 자살로 결론내림.

<표 계속>

일시	사건개요 및 진행
1998.6.11	-경기도 파주군 파평면 장파리 DMZ에서 북측 GP에서 사격을 가해옴.
2001. 11.27	-오전 10시 42분, 경기 파주군 파평면 장파리 DMZ 북방 7㎞ 지점의 북측 GP에서 남측 GP를 향해 정전협정 상 DMZ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는 7.62㎜ 기관총 사격을 2, 3발 가함. -북한군이 쏜 총탄 1발은 북측 초소에서 770m 떨어진 남측 GP 벙커의 유리창을 파손. 한국군 인명피해 없음. -한국군은 교전규칙에 따라 "총격도발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다. 즉각 도발을 중지하라"는 경고방송과 함께 1분여 소총으로 15발가량 대응사격함.
2003.7.17	-오전 6시 10분,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북방 20㎞ 지점 DMZ내 북한군 GP에서 1.1㎞ 떨어진 남측 GP를 향해 4발의 총격을 가함. 기관총으로 추정. 4발 중 3발이 철근 콘크리트로 된 한국측 GP 옹벽 하단부에 맞음.
	-한국군은 교전규칙에 따라 피격 1분 뒤인 6시 11분 K3 기관총으로 17발을 응사 후, "너희들은 우리 GP로 총격도발을 했다. 즉각 사과하라. 이번 사건은 전적으로 너희들 책임이다"라고 북측에 경고방송을 함.
	-4발 중 3발이 1,100m나 떨어진 한국군 GP 옹벽에 정확히 꽂힌 것은 조준 사격이므로 이는 단순히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획적인 것이라는 주장도 한국군 내에 있었으나, 다수 의견은 우발적 사건이라고 판단함. -DMZ에서는 사용금지된 14.5㎜ 기관총탄으로 밝혀짐. K3 기관총으로 17발이 아니라 M60 기관총 17발을 대응사격했다는 보도도 있음.
2005.6.19	-새벽 경기도 연천군 중면 중부전선 DMZ 내 28사단 소속 GP에서 총기난사 사건 발생. -범인 김동민 일병(22세)는 내무실에 수류탄 1발을 던지고 K1 기관단총 44발을 난사해 6명이 현장에서 즉사. 이 사건으로 8명 사망, 2명 부상.

<표 계속>

일시	사건개요 및 진행
2006.5.26	-낮 12시 47분, 강원도 화천군 북방 DMZ안 북한강 지류 금성천 부근에서 북한군 5명이 군사분계선에 접근하는 상황을 확인하고 모두 4회의 경고방송함. -이중 비무장한 2명이 군사분계선을 20~30m 넘어와 남측 GP에서 K-3 기관총 12발의 경고사격을 실시했으며, 경고사격 뒤 북한군은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철수함. 북한군 병사들이 냄비 등을 들고 있었고, 5명 중 4명은 비무장이었기에, 군사분계선인 금성천에 물고기 잡으러 온 것으로 추정함.
2006.7.31	-저녁 시간, 강원도 양구군 동부전선 21사단 GP를 향해 북한군이 2발의 총격을 가함. 1발이 GP 시설물에 맞음. -한국군은 6발의 대응사격을 가함.
2007.8.6	-오후 1시 30분, 강원도 인제 북방 비무장 지대에서 북한군이 한국군 GP를 향해 총격을 가해 한국군이 10여 발의 경고사격을 가함. -한국군 인명피해 없음.
2008.11.23	-오전 1시 50분, 강원도 철원 모 사단 예하 최전방 GP 내무반에서 수류탄 폭발 사고 발생함. 자고 있던 병사 1명 중상, 4명 경상을 입음.
2010.10.29	-오후 5시 26분, 강원도 화천 15사단최전방 초소에서 북한군이 2발의 총격을 가해와 우리 군이 즉각 대응 사격을 가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힘.

출처: 위키피디아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D%9C%B4%EC%A0%84%EC%84%A0_%EA%B0%90%EC%8B%9C_%EC%B4%88%EC%86%8C>를 참고하여 작성.

(3) 땅굴

(가) 땅굴의 군사 전략적 가치

DMZ는 완충지대의 역할을 한다. 대치하는 군사의 충돌을 막기 위한 것으로 공격하는 입장에서 보면 장애물일 수밖에 없다. 북한은 장애물을 극복하는 방법의 하나로 남침용 갱도, 즉 땅굴을 활용하고 있다. 북한은 갱도전을 "아군의 인원과 전투기술·기재를 최대한으로 보

호하면서 적을 효과적으로 소탕할 수 있게 하는 위력적인 전법"이라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북한은 휴전선부근에 땅굴을 파고, 비행기 격납고, 행군기지, 포병기지 등을 갱도진지화하여 포격과 공중공격으로부터 방호노력을 강화해 왔다.

특히 1971년 9월 25일 김일성은 이른바 "9·25전투교시"를 내리는데, "하나의 땅굴은 10개의 핵폭탄보다 효과적이며, 요새화된 현 전선을 극복하는 최적의 수단," "속전속결전법을 도입 후 기습전을 감행할 수 있게 하라"라는 등의 지시를 내렸다.

이를 대남공작 총책 김중린(金仲麟)과 북한군 총참모장 오진우(吳振宇) 등이 그대로 실천에 옮겨 1974년 11월 15일에 발견된 고량포 동북쪽 8㎞ 지점의 제1땅굴, 1975년 3월 19일에 발견된 철원 동북쪽 13㎞ 지점의 제2땅굴, 1978년 10월 17일에 발견된 판문점 남쪽 4㎞ 지점의 제3땅굴, 그리고 1990년 3월 3일 양구 동북쪽 26㎞ 지점의 제4땅굴 등을 굴착함으로써 유사시 대규모 침투를 노린바 있다.

북한은 땅굴을 구축하여 4가지 전략적 이점을 확보할 수 있다. 첫째, 지하 땅굴을 이용하여 DMZ를 통과하므로 아군에게 탐지 당하지 않고 기습 달성이 가능하고, 둘째, 기습을 달성하고 비정규전 부대를 침투, 후방을 교란함으로써 전쟁초기에 작전지휘체제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셋째, 우리 방어진지를 적이 먼저 점령함으로써 아군 방어력이 약화될 것이다. 넷째, 기습전을 감행함으로써 아군의 전투준비의 제한 또한 초래할 것이다.

[그림 Ⅱ-5] DMZ 일원의 땅굴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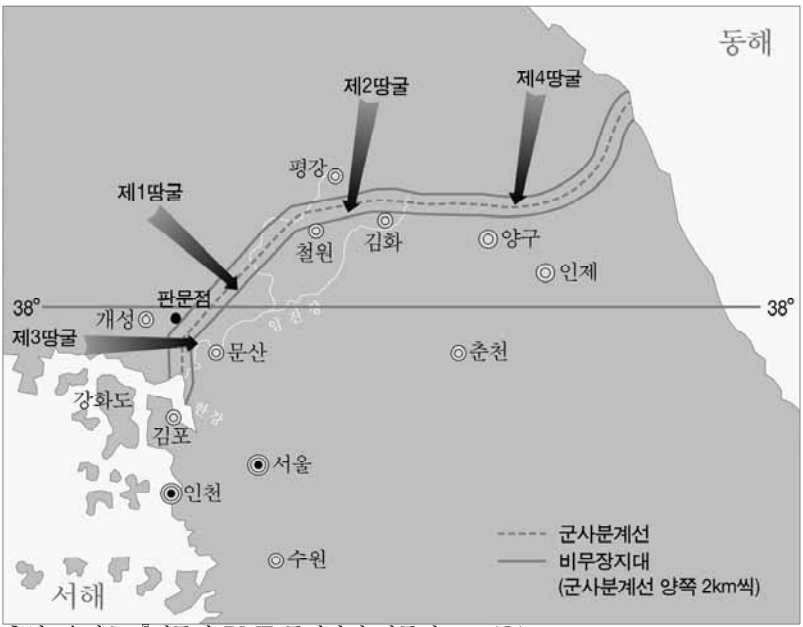

출처: 유영호, 『민통선-DMZ 통일맞이 나들이』, p. 184.

(나) 제1땅굴[21]

[그림 Ⅱ-6] 제1땅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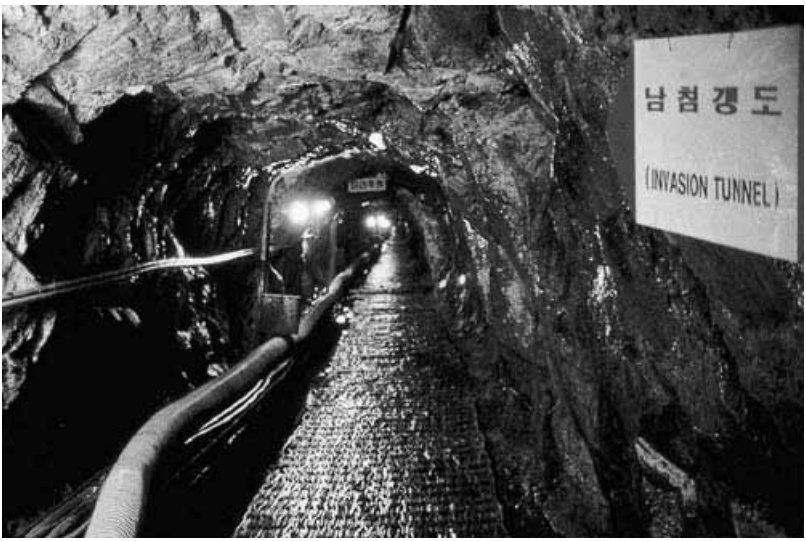

출처: 유용원의 군사세계, <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44&pn=0&num=47960> (검색일: 2001.9.5).

제1땅굴의 발견 위치는 경기도 연천군 배학면 석장리 제5보병사단 관할 전망 관측소인 상승전망대 앞이다. 제1땅굴은 DMZ 내에 있는 관계로 외부에 개방되지 않고 있다. 가까운 관측소인 상승 OP에 실제 크기의 모형을 만들어 두고 있다.

1974년 11월 5일 아침 7시 45분경 제25병사단 71연대 수색중대 선임하사인 구중섭 중사 외 8명이 수색 정찰중 지표면에서 수증기가 올라오는 것을 발견하고 수상히 여겨 야전삽으로 굴토하여 지하 45㎝ 지점에서 발견했다. 수색조는 오전 8시 5분쯤 북한 GP로부터 3분간 300여

---

[21] "고랑포 제1땅굴 발견과 교훈," 『국방일보』, 2009년 11월 23일; 국가기록원, <http://contents.archives.go.kr/next/content/listSubjectDescription.do?id=003335>.

발의 기관총 사격을 받았고, 아군도 즉각 대응하면서 1시간 15분 동안 교전을 벌이며 굴착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 사격으로 작업하던 병사들 중 3명이 전사하고 5명이 부상했다.

이 땅굴은 서울로부터 52㎞, 개성으로부터 24㎞, 남방한계선을 불과 800m 남겨놓은 지점에서 발견되었으며 지표에서 깊이 2.5m~4.5m 깊이로 굴착되었다. 폭은 90㎝ 높이 1.2m로 철근이 세 가닥 들어간 조립식 콘크리트를 사다리꼴로 엮어 튼튼하게 만들어졌다. 땅굴 내부에는 220V 전선에 60W 전구가 가설돼 있었으며 작업용 협궤 레일이 깔려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흙 운반용 수레차가 발견됐으며 터널의 곳곳에 우회 통로와 수레차를 돌리는 지점 및 취침장소와 배수시설 등이 확인됐다.

이 땅굴을 통해 시간당 연대 규모를 침투시킬 수 있는 규모다. 총길이 3,500m, 침투길이는 1,000m이다. 땅굴의 예상 기습로는 고랑포에서 의정부를 거쳐 서울로 향하는 방향이다.

우리 정부는 이 사태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으로 보고, 유엔사를 통해 북한에 항의하기 위해 군사정전위원회를 소집할 것을 요청했다. 또 휴전선 일대와 해안시설의 경계를 강화했다. 유엔사 측은 북한이 판 땅굴이 중대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도발이라고 대변인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북한의 행동을 비난했지만 북한은 미군과 대한민국이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고 억지를 부렸다.

땅굴 발견 후 5일째인 11월 20일 국군 2명과 미군 6명 등 8명으로 편성된 공동수색조가 땅굴의 구조와 제원을 정밀하게 조사하기 위해 땅굴 안에서 수색작전을 전개하던 중 군사분계선 남쪽 300m 지점에 이르렀을 때 북한이 매설한 부비트랩을 건드려 폭발사고가 일어났다. 이 폭발로 작업 중이던 우리 국군 장교 1명, 미군 장교 1명 등 2명이 전사했고, 미군 5명과 국군 1명 등 6명이 부상당했다.

당시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어 남북 화해무드가 조성되던 시기

라 한국 국민들의 충격이 컸다. 당시 북한측은 자신과는 무관하다며 억지주장을 폈다. 그러나 땅굴 속에서 발견된 다이너마이트, 북한제 전화기, 작업진척 기록지 등은 북한의 땅굴임을 입증하였다. 조사대는 흙운반차 3대를 비롯하여 총 45종 225점의 물건을 노획하였는데 일부가 상승전망대에 전시되어 있다.

북한 땅굴 설계에 참여했다가 후에 귀순한 설계기사 김부성에 의하면 북한은 1972년 2월 1일에 이 땅굴을 착공했다. 북한 수뇌부는 1970년 베트남과 중국의 갱도를 시찰한 뒤 '북한 실정에 맞는' 땅굴을 파기로 결정했다. 김일성은 1971년 9월 25일에 이른바 "통일을 위한 대통로" 즉 땅굴을 건설하라는 은밀한 명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땅굴 구축이 시작된 것이다. 남북대화를 통해 평화 제스처를 보이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대규모 후방침투용 땅굴을 구축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 제2땅굴[22]

1975년 3월 19일 남한지역에서 두 번째 발견된 북측의 기습남침용 지하땅굴이다. 제2땅굴은 제1땅굴보다 규모가 큰 것으로 서울북방 108㎞ 지점, 철원북방 13㎞ 지점, 군사분계선 남방 435m 지점 DMZ 안에 있다. 땅굴은 견고한 화강암층으로 지하 50~160m 지점에 있고 땅굴의 총 연장은 3.5㎞이며 그 중에서 군사분계선 남쪽으로는 1.1㎞까지 파내려 왔으며 그 규모는 높이 2m의 아치형 터널로 대규모 병력을 집결시킬 수 있는 광장까지 갖추어 1시간에 3만명의 무장병력을 이동시킬 수 있으며, 차량 소형 야포, 소형 지프차(지금의 경차와 비슷한 크

22- "제2땅굴 발견 스토리," <http://systemclub.co.kr/board/bbs/board.php?bo_table=ko08&wr_id=1&page=2>; 국가기록원, <http://contents.archives.go.kr/next/content/listSubjectDescription.do?id=003335>; "6사단 제2땅굴 발견 34주년 기념행사," 『환경일보』, 2009년 4월 28일.

기)와 함께 탱크까지 통과할 수 있는 규모이며, 출구는 세 갈래로 분산시켜 놓았다.

[그림 Ⅱ-7] 제2땅굴

출처: 유용원의 군사세계, <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44&pn=0&num=47960> (검색일: 2001.9.5).

1973년 11월 20일 오전 7시경 이기태 상병과 김효섭 일병이 DMZ 경계를 서던 중 지하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음을 감지하고, 수상히 여겨 즉시 사단에 보고했다. 6사단은 보고를 받고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 11월 20일 오전 7시 5분경부터 12월 3일까지 14일간 총 43회의 탐색작업을 벌여 571발의 폭음을 확인하고 지하 갱도를 포착했다. 이후 북한은 약 8개월간 땅굴작업을 중단했으나 1974년 7월 25일 오전 9시경에 다시 땅굴을 파기 시작하였고, 제7연대소속 박헌상 상병과 이삼택 일병이 경계근무를 서던 중 지하에서 폭발로 인한 지각변동을 느끼고 사단에 보고했다.

이에 6사단은 1974년 12월 16일부터 1975년 2월 7일까지 남방 한계선에서 북쪽으로 시추공사 작업을 착수하였다. 당시 농업진흥공사의

우물 파는 기계 10대를 들여와 영하 20도의 혹한 하에서 시추공을 뚫었는데 24시간 동안 6m밖에 팔 수 없는 악조건에서 총 45곳에 시추공사를 하던 중 북으로 부터 파내려온 땅굴에 7개의 시추공을 관통함으로써 북한의 남침용 땅굴을 발견하였다. 이후 현대건설이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역갱도 공사를 착공, 24일 만에 사갱 82m와 수평갱도 26.7m, 총길이 108.7m 터널을 굴진해 제2땅굴과 연결을 성공시켰다.

이후 북으로부터 파내려 온 땅굴에 특수 탐색조를 투입, 땅굴 내부에 북한이 설치한 총 3개의 차단벽을 제거하기 위한 특수작전을 실시했다. 1975년 4월 7일 북한이 설치한 폭발물에 의해 임무를 수행하던 김호영 중사, 김재대 중사, 김홍섭 하사, 이현기 하사, 김명식 하사, 송영복 병장, 김영용 병장, 김봉래 병장이 희생됐다. 결국 1975년 7월 19일부터 8월 10일까지의 작전 끝에 제2땅굴은 군사분계선 남쪽 50m지점에서 완전히 봉쇄되었다.

유엔군 사령부는 제361차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이 땅굴을 특수 카메라로 촬영하여 증거로서 제시하고 북한이 불법적으로 땅굴을 구축했다고 비난했었다. 북한은 제2땅굴에 대해서도 자신들과 무관하다며 극구 부인하였으나 당시 공법과 폭파 방향 등이 북쪽에서 파내려온 인위적 땅굴임을 입증하고 있다. 이후 귀순한 북한 노동당 연락부 소속 김부성이 자신이 직접 측량을 했고 '콤푸레샤' 요원으로 땅굴작업에 동원되었다고 증언함으로써 북한의 부인이 거짓임을 입증하였다.

(라) 제3땅굴[23]

[그림 Ⅱ-8] 제3땅굴

출처: 유용원의 군사세계, <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44&pn=0&num=47960> (검색일: 2001.9.5).

1978년 10월 17일 경기 파주시 군내면 점원리에서 발견된 제3호 땅굴은 문산까지 12㎞, 서울에서 불과 44㎞ 거리에 있다. 규모는 폭 2m, 높이 2m로 지하평균 73㎞ 지점을 1,635m 굴착해서 남쪽으로는 5갈래로 나누어진 출구를 냈다. 전술능력은 1시간당 3만 명의 병력이 통과할 수 있다.

제3갱도는 1974년 귀순한 개성 노동당 연락부 안내원 김부성이 자신이 1972년부터 이 갱도 작업을 했다는 제보에 따라 1975년부터 한미 양국에 의해 탐사가 시작됐다. 군은 문산 지역에서 예상지점 20여공을 굴착했으나 땅굴 징후를 포착하지 못하였다. 정보기관에서는 김부성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고 있었으며 보조금을 더 타내려는 거짓 제보가 아닌가 하는 의심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태인지라 혼란이 발생하였다. 그 와중에 김부성은 자신이 땅굴 작업 중 측량지점으로 잡은

[23] 국가기록원, <http://contents.archives.go.kr/next/content/listSubjectDescription.do?id=003335>.

DMZ안에 있는 미루나무로 가서 땅굴의 방향과 위치를 설명하다 지뢰를 건드려 한쪽 다리를 잃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1978년 6월 10일 작업을 하던 시추공 중 하나가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작업에 참여하던 김을수 상사가 시추공 속에서 지표층이 무너지지 않도록 받쳐놓은 것으로 추정되는 플라스틱파이프 조각을 발견하여서 땅굴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가 다시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 플라스틱파이프 조각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조사 결과 땅굴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2사단장이 전두환 소장이었는데 당시 한 조사관은 "인기위주의 쇼맨쉽이 강한 전두환 사단장이 고의로 시추공 속에 폭발물을 설치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냐?"는 말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조사는 계속 진행되었는데 결국 사흘 뒤 6월 13일에 갱도가 발견되었다.

1978년 10월 28일 유엔사는 제3땅굴 발견을 발표했다. 유엔사는 "이것은 명확하고도 중대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북측을 비난하며, 이 땅굴의 입구가 군사분계선 넘어 1,200m 지점의 북한 지역에 있다고 밝히고 유엔군측의 차단 터널이 지표 73m 지점에서 북한이 불법적으로 파놓은 땅굴과 관통했다고 발견 경위를 설명하였다.

한편 노재현 국방 장관도 담화문을 발표, "제3땅굴은 아직도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 전략을 계속 추구하고 있는 북괴의 호전성을 다시 한 번 실증한 것"이라며 "군사적 측면에서 볼 때 북괴는 이 땅굴을 통해 기습공격을 위한 대규모 병력을 단시간 내에 우리 주방어진지 후방으로 침투시켜 군사요충지를 조기에 점령하고 주요지휘시설을 파괴하려는 것이며 한편으로 비정규전병력을 은밀하게 잠입시키는 침투로로 사용하려 했던 것이 틀림없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이 땅굴이 적발되자 남한에서 북침용으로 뚫은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는데 착굴시 폭파흔적이 남쪽을 향하고 있고, 굴착공의 지름이

북측에서 사용하는 굴착기가 만들어내는 굴착공의 지름과 일치하고, 땅굴을 파는 동안 흘러나온 지하수가 흘러나갈 수 있게 북측으로 3/1000° 경사지게 뚫은 점 등 북측에서 파내려온 땅굴이라는 증거가 여러가지 발견되었다.

제3땅굴의 발견은 한반도만 아니라 국제적 안보태세에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 여의도 등지에서는 대대적인 규탄궐기대회가 있었고, 8월에는 보수성향의 박정희가 다시 대통령에 취임했으며, 일본도 한반도에서의 주한미군 철수에 즉각 우려를 표하고 나왔다. 당시는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의 감축이 진행되던 상황이었는데 1977년 5월 29일 주한 서전트미사일대대가 철수했고 그해 7월 이후에는 2개 미사일대대 총 1,023명의 주한미군이 한국을 떠났으나 제3땅굴 발견 직후 1978년 11월 7일 미 국방성은 한반도에서의 미군철수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마) 제4땅굴[24]

[그림 Ⅱ-9] 제4땅굴

출처: 유용원의 군사세계, <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44&pn=0&num=47960> (검색일: 2001.9.5).

24- 『경제풍월』, 2010년 1월 26일; 『데일리NK』, 1990년 3월 3일.

1990년 3월 3일, 양구에서 동북방 26㎞ 지점 DMZ내, 군사분계선에서 불과 1,200m 떨어진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후리에서 발견되었다. 지하 145㎞ 깊이에 폭 2m 전체 길이가 2.052m나 뻗어있으며, 군사분계선에서 '무려 1,502m나 남쪽'에서 발견되었다.

제4땅굴에 대한 조사 역시 귀순한 신중철의 증언으로부터 시작되었으나 그가 지목한 지점에서는 땅굴이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군은 KAIST의 나정웅 교수 등이 개발한 시추공 전자파 레이더[25]를 사용해 제4땅굴을 찾아냈다.

북한은 이번에도 전과 마찬가지로 이를 한국이 파놓은 북침용 땅굴이라고 선전하면서 오히려 유엔사측의 공동조사단 구성제의를 묵살하였다. 하지만 제3땅굴과 마찬가지로 폭약장치용 구멍의 방향이 남측으로 향해 있고 배수로 경사가 남에서 북으로 낮게 되어 있는 등 북한이 남침용으로 파놓은 땅굴임이 입증되었다.

5. 군사적 측면에서 DMZ 평화적 이용사례

1992년에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 12조에서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DMZ의 평화적 이용 문제를 논의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북한측이 기본합의서의 이행을 거부하여 실제 합의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DMZ의 평화적 이용문제가 실제로 거론된 것은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주석이 만난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조

25- 땅속에서 땅굴과 같은 유선원통형의 빈 공간에 전자파를 연속으로 쏘면 전자파의 진행이 특정하게 변화하는 원리를 이용한 땅굴 탐사장비. 지하 100~500m에 이르는 두 개의 시추공을 20여m간격으로 뚫고 그 구멍 안에서 장비를 통해 각각 전자파를 발산하여 파장의 변화 추이를 관찰함을 통해 땅 속의 빈 공간을 찾을 수 있다.

치가 바로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이다. DMZ의 일부구역을 개방하고 그 구역 내에 묻힌 지뢰를 제거하며 각종 장애물이나 군사시설을 이전 또는 철거하는 일들이 군사당국간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었다.

2000년 7월 31일 발표된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5항에서 "남과 북은 경의선 철도의 끊어진 구간을 연결하며, 이를 위한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하기로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같은 해 9월 1일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에서는 경의선 철도와 도로의 연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9월 안에 실무접촉을 하기로 하였다.[26]

이러한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군사회담이 9월 25일과 9월 26일 양일간 제주도에서 열린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이다. 이 회담에서는 남북 철도·도로연결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군사실무회담 가동에 합의하였다. 11월 28일 제1차 군사실무회담에서는 철도와 도로연결문제를 중점적으로 협의한 결과 2002년 9월 27일에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도로 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를 타결하였다.

비록 일부구역[27]이지만 남북이 최초로 DMZ의 평화적 이용을 합의한 것은 남북관계사에 있어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이를 중심으로 2000년대 DMZ 내에서 이루어진 군사적 측면에서의 세 가지 의미있는 실제 사례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

[26]– 동 회담에서는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이와 관련하여 쌍방군사당국자들의 회담을 가진다는 데 합의했다. 이와 함께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데도 합의하였다.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DMZ내에서 군사당국자간의 협조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27]– 남북관리구역은 서해지구(경의선) 250m이며, 동해지구(동해선)의 경우는 100m의 폭이다.

가. 군사분계선에서의 남북 군사접촉

남북군사당국자간 회담의 경우는 주로 DMZ내 공동경비구역의 남측의 평화의 집과 북측의 통일각에서 번갈아가며 개최되었다. 그러나 회담이 진행되면서 실무자간의 접촉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가령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데 필요한 통신선로를 가설하는 기술적인 문제나 기타 순수 실무적인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한 기능적 접촉이 필요하였다.

물론 군사보장합의서에 따르면 임시건물을 건설해야 하지만, 그 이전에 필요할 경우에는, 군사분계선 상에서 동·서해지구 남북군사실무책임자들이 만나 협상을 진행한 전례가 있다. 이 경우, 가건물을 세우지 않고 서로 군사분계선은 넘지 않은 상태에서 마주보고 이른바 스탠딩(Standing)협상을 한 것이다. 책상이나 의자도 없이 그냥 맨 하늘아래에서 마주하여 회담을 진행한 것이다. 그동안 수차례 이러한 방식으로 실무자 협상을 통해 동해지구와 서해지구의 통신선 연결문제를 협의하였다. 이러한 접촉은 군사보장합의서의 유동적인 적용으로서 작지만 DMZ의 평화적 이용의 중요한 선례라 할 수 있다.

나. DMZ에서의 남북 군인들의 지뢰제거 작업 상호검증

2003년 6월 11일에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작업 과정에서 남북관리구역 내 매설된 지뢰를 제거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남과 북의 군인들이 '도보'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상대측 지역을 방문하여 현장검증을 실시하는 일이 있었다.

DMZ가 만들어진 이후 현역군인들이 군사적시설의 제거 검증을 위해 걸어서 군사분계선을 넘고, 상대측 지역의 작업 현황을 실제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검증한 사례는 처음이었다. 공사개시 초부터 남북관

리구역 내 지뢰제거 문제는 중대한 걸림돌이 되었다. 당시 남측은 공사를 조기에 완료해 나가자는 입장이었다. 김대중 정부가 종료 이전에 개성공단을 가동하고 금강산 육로관광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공사가 신속하게 진전되기 위해서는 지뢰를 제거해야하는데 북측은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 사실 유엔사를 포함하여 우리 내부에서는 지뢰제거를 하되 남북 균형공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DMZ의 일부구역을 열어준다는 것 자체가 6·25 정전이후 처음 있는 일이고, DMZ의 일부를 개방하는 자체가 북한에게 남침통로를 열어주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남한은 DMZ내 연결지역 안에 있는 지뢰의 제거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북측에 현장방문을 제의했고 북측이 동의함에 따라 검증작업이 성사되었다. 이 같은 상호현장방문을 통해 남북간 검증이라는 중요한 이정표를 세운 것이다. 앞으로 남과 북 사이에 군비통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검증은 반드시 필요한 통제수단이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

다. 군사분계선일대에서 심리전 활동의 중지 및 수단 철거

동 사안이 'DMZ의 군사적 측면에서의 평화적 이용'이냐 하는 점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DMZ 내에서의 평화를 목적으로 실제 추진된 군사협력 사안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판단된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DMZ 일원에서는 군사시설의 설치와 함께 상대방에 대한 심리전이 진행되었다. 1980년대 까지는 북한의 대남심리전

이 남한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부터는 남측의 심리전 능력이 북한을 추월하였다. 장비의 성능 및 '전력공급능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남측의 심리전 수준이 한층 높아진 것이었다.

우리 측의 대북방송이나 전광판의 내용은 북한을 비방하기 보다도 사실 자체를 알리는데 중점을 두어왔다. 음악을 들려주거나 뉴스 위주의 방송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철저히 폐쇄체제를 이어가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그 자체를 체제유지에 매우 큰 위협으로 느끼고 있었던 듯하다.[28]

2004년 5월 서해해상충돌방지를 위한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이 개최되면서 북한은 회담개시 당시에는 거론하지 않았던 심리전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는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 절박한 사안이며 반드시 의제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이 사안이 회담의 제로 채택되었고,[29] 같은 해 6월 4일 설악산에서 개최된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합의서로 채택되었다.[30] 동년 6월 15일부로 모든 심리전활동(합의서에서는 선전활동으로 명시)을 중단하고 8월 중순까지 모든 수단을 철거하기로 한 것이다. 이 합의에 따라 6월 15일 이후에는 확성기 방송이나 전광판의 불빛을 더 이상 듣거나 볼 수 없게 되었다. 심리적 수단들은 그로부터 1년 후에 완전히 철거되었고 DMZ박물관 등으로 옮겨져 전시자료로 쓰이는 등 용도가 전용되었다.

동 사안의 합의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되었지만 결과적으

28– 북한의 천안함 폭침도발 이후, 우리측의 5·24조치의 일환으로 대북심리전 재개를 선언하고 확성기 설치를 시도하자 조준사격 운운하며 극렬한 반응을 보인 것만 해도 그들이 동 사안을 얼마나 중대하게 여기는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29– 당시 대북심리전 우위를 확보하고 있었던 국방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동 사안의 의제화에 반대였다. 심리전도 엄연한 군사력이며, 더구나 핵, 미사일, 화생무기 등 비대칭군사력의 열세를 보이고 있었던 우리로서는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

30– 동 합의서의 정식 명칭은,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일명 6·4 합의서)이다.

로는 DMZ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데 일조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있을 DMZ내 군사 활동의 제한이나 중지, 군사시설 및 장비 철거·철수의 선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31]

31– 관점에서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심리전 수단이 군사력이라는 점에서 심리전 수단의 철거사례는 남북간 군축의 중요한 선례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1. 단행본

김재한 외. 『DMZ III-접경지역의 화해·협력』. 서울: 소화, 2002.

녹색연합. 『DMZ 155마일을 걷다: 2008 비무장지대일원 환경실태 보고서』. 서울: 도서출판 작은것이 아름답다, 2008.

배리 부잔·레네 한센, 신욱희 역. 『국제안보론』. 서울: 을유문화사, 2010.

손기웅. 『비무장지대내 유엔환경기구 유치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0.

_____. 『DMZ 평화적 이용방안: 비판적 고찰과 실천적 추진방안』. 춘천: 강원발전연구원, 2008.

손기웅 외.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Ⅰ):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이론적 검토와 사례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9.

_____.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Ⅱ):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존 제안 검토』. 서울: 통일연구원, 2009.

_____.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Ⅲ): 정책제안』. 서울: 통일연구원, 2010.

_____.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Ⅳ): 2010년 「코리아접경포럼」 자료집』. 서울: 통일연구원, 2010.

유영호. 『민통선-DMZ 통일맞이 나들이: 하나를 위하여』. 서울: 선인, 2008.

제성호. 『한반도 안보와 국제법』.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10.

최성록·박은진. 『DMZ 일원의 주요자원의 보전가치 추정연구』. 춘천: 강원발전연구원·서울: 경기개발연구원, 2010.

코리아DMZ협의회. 『DMZ총람』. 서울: 늘품플러스, 2011.

평화문제연구소.『조선향토대백과 2: 남포시·개성시·라선시』. 서울: 평화문제연구소, 2005.

_____. 『조선향토대백과 11: 강원도』. 서울: 평화문제연구소, 2005.

한국국방연구원.『2010 동북아 군사력과 전력동향』.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11.

2. 논문

김영봉. "녹색평화의 시각에서 본 DMZ의 활용."『통일과 평화』. 제2권 1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2010.

김귀곤·박미영·최희선. "DMZ자연생태계의 현황과 보전."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엮음.『DMZ생태계와 한반도 평화』. 서울: 아카넷, 2004.

김창환. "DMZ의 공간적 범위에 관한 연구."『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3권 4호 (한국지역지리학회), 2007.

박헌옥. "북한의 휴전협정 위반 반세기."『군사논단』. 제16호 (한국군사학회), 1998.

손기웅. "DMZ 생태, 평화의 제문제: DMZ 관리·활용을 위한 남북협력."『북한학연구』. 제2권 2호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2006.

손기웅. "DMZ 평화 정착과 환경보호를 위한 이니셔티브."『DMZ 평화 정착과 환경보호를 위한 이니셔티브』. 코리아DMZ협의회 제2차 국제학술회의, 2011.10.17.

제성호. "한국휴전협정의 이행실태." 김영작 엮음.『6·25와 휴전협정』. 서울: 한국정치외교사학회, 1998.

Jost Delbrük. "Demilitarization." in Rudolf Bernhardt (eds.).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EPIL).* Vol. I. Amsterdam: Elsevier Science Publishers, 1992.

3. 기타자료

『경제풍월』.

『국방일보』.

『데일리NK』.

『매일경제』.

『신동아』.

『연합뉴스』.

『중앙일보』.

『한국일보』.

유용원의 군사세계, <bemil.chosun.com/nbrd>.

위키피디아백과사전, <ko.wikipedia.org>.

브리태니커백과사전, <100.daum.net>.

부 록

1. 정전협정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서 언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一方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 인민 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一方으로 하는 下記의 서명자들은 쌍방에 막대한 고통과 유혈을 초래한 한국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하여서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下記조항에 기재된 정전조건과 규정을 접수하며 또 그 제약과 통제를 받는데 각자 공동 상호동의한다. 이 조건과 규정들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며, 이는 오직 한국에서의 交戰 雙方에만 적용한다.

제1조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1. 한 개의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線으로부터 각기 2㎞씩 후퇴함으로써 適對군대간에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한다.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하여 이를 완충지대로 함으로써 적대행위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을 방지한다.
2. 군사분계선의 위치는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바와 같다.
3. 비무장지대는 첨부한 지면에 표시한 북방 경계선 및 남방 경계선으로써 이를 확정한다.
4. 군사분계선은 下記와 같이 설정한 군사정전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이를 명백히 標識한다.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비무장 지대와 각자의 지역간의 경계선에 따라 적당한 標識物을 세운다. 군사정전위원회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양 경계선에 따라 설치한 일체 標識物의 建立을 감독한다.
5. 漢江 河口의 水域으로서 그 한쪽 江岸이 일방의 통제하에 있고 그 다른 한쪽 江岸이 다른 일방의 통제하에 있는 곳은 쌍방의 民用선박의 航行에 이를 개방한다.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부분의 한강河口의 航行규칙은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규정한다. 각방 民用선박이 航行함에 있어서 자기측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유지에 배를 대는 것은 제한받지 않는다.
6. 쌍방은 모두 비무장지대내에서 또는 비무장지대로부터 비무장지대에 향하여 어떠한 적대행위도 감행하지 못한다.
7.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군사분계선을 통과함을 허가하지 않는다.
8. 비무장지대내의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그가 들어가려고 요구하는 지역사령관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어느 일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지역에도 들어감을 허가하지 않는다.

9. 民事行政 및 救濟事業의 집행에 관계되는 인원과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를 얻고 들어가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비무장지대에 들어감을 허가하지 않는다.
10. 비무장지대내의 군사분계선 以南의 부분에 있어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 사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책임진다. 비무장지대내의 군사분계선 이북의 부분에 있어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이 공동으로 책임진다. 민사행정 및 구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비무장지대에 들어갈 것을 허가받는 군인 또는 민간인의 인원수는 각방 사령관이 각각 이를 결정한다. 단, 어느 일방이 허가한 인원의 총수는 언제나 일천명을 초과하지 못한다. 민사행정, 경찰의 인원수 및 그가 휴대하는 무기는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규정한다. 기타 인원은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없이는 무기를 휴대하지 못한다.
11. 本條의 어떠한 규정이든지 모든 군사정전위원회, 그의 보조인원, 그의 共同監視小組 및 소조의 보조인원, 그리고 下記와 같이 설립한 중립국감독위원회, 그의 보조인원, 그의 중립국시찰소조 및 소조의 보조인원과 군사정전위원회로부터 비무장지대 출입과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두 지점이 비무장지대내에 전부 들어있는 도로로써 연락되지 않는 경우에 이 두 지점간에 반드시 경과하여야 할 통로를 왕래하기 위하여 어느 일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지역을 통과하는 이동의 편리를 許與한다.

제2조 停火 및 停戰의 구체적 조치

가. 총 칙

12.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육해공군의 모든 부대와 인원을 포함한 그들의 통제하에 있는 모든 武裝力量이 한국에 있어서의 일체 적대행위를 완전히 정지할 것을 명령하고 또 이를 보장한다. 본 항의 적대행위의 완전 정지는 본 정전협정이 조인된지 12시간 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본 정전협정의 기타 각항의 규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일자와 시간에 대하여서는 본 정전협정 제63항 참조)
13. 군사정전의 확고성을 보장함으로써 쌍방의 한級 높은 정치회담을 진행하여 평화적 해결을 달성하는 것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ㄱ. 본 정전협정 중에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72시간내에 그들의 일체 군사역량, 보급 및 장비를 비무장지대로부터 철거한 후 비무장지대내에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는 모든 폭발물, 地雷源, 철조망 및 기타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그의 공동감시소조인원의 통행안전에 위험이 미치는 위험물들은 이러한 위험물이 없다고 알려져 있는 모든 통로와 함께 이러한 위험물을 설치한 군대의 사령관이 반드시 군사정전위원회에 이를 보고한다. 그 다음에 더 많은 통로를 청소하여 안전하게 만들며, 결국에 가서는 72시간의 기간이 끝난 후 45일내에 모든 이러한 위험물은 반드시 군사정전위원회 지시에 따라, 또 그 감독하에 비무장지대내로부터 이

를 제거한다. 72시간의 기간이 끝난 후 군사정전위 원회의 감독하에서 45일의 기간내에 제거작업을 완수할 권한을 가진 비무장부대와 군사정전위원회가 특히 요청하였으며 또 적대 쌍방 사령관들이 동의한 경찰의 성질을 가진 부대 및 본 정전협정 제10항과 제11항에서 허가한 인원 이외에는 쌍방의 어떠한 인원이 든지 비무장지대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ㄴ.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10일 이내에 상대방은 한국에 있어서의 후방과 沿海島嶼 및 海面으로부터 그들의 모든 군사역량 보급물자 및 장비를 철거한다. 만일 철거를 연기할 쌍방이 동의한 이유없이 또 철거를 연기할 유효한 이유없이 기한이 넘어도 이러한 군사역량을 철거하지 않을 때는 상대방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떠한 행동이라도 취할 권리를 가진다. 上記한 沿海島嶼라는 용어는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할 때에 비록 일방이 점령하고 있더라도 1950년 6월 24일에 상대방이 통제하고 있던 島嶼중에서 白翎島(북위 37도 58분, 동경 124도 40분), 大靑島(북위 37도 50분, 동경 124도 42분), 小靑島(북위 37도 46분, 동경 124도 46분), 延坪島(북위 37도 38분, 동경 125도 40분) 및 隅島(북위 37도 36분, 동경 125도 58분)의 島嶼群들을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두는 것을 제외한 기타 모든 도서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의 군사 통제하에 둔다. 한국 서해안에 있어서 상기 경계선 이남에 있는 모든 도서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 둔다.

ㄷ. 한국 境外로부터 증원하는 군사인원을 들여오는 것을 중지한다. 단 아래에 규정한 범위내의 부대와 인원의 輪還臨時任務를 담당한 인원이 한국에의 도착 및 한국境外에서 단기휴가를 하였거나 혹은 임시임무를 담당하였던 인원의 한국에의 귀환은 이를 허가한다. '輪還'의 정의는 부대 혹은 인원이 한국에서 복무를 개시하는 다른 부대 혹은 인원과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輪還인원은 오직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을 경유하여서만 한국으로 들 어오며 또 한국으로부터 내어갈 수 있다. 輪還은 一人 對 一人의 교환기초위에서 진행한다. 단 어느 일방이든지 一曆月內에 輪還정책하에서 한국境外로부터 삼만오천명 이상의 군사인원을 들여오지 못한다. 만일 일방의 군사인원을 들여오는 것이 該當側이 본 정전협정 효력발생일로부터 한국으로 들여온 군사인원의 총수로 하여금 같은 날짜로부터 한국을 떠난 해당측 군사인원의 累計 總數를 초과하게 할 때는 해당측의 어떠한 군사인원도 한국으로 들여올 수 없다. 군사인원의 한국에의 도착 및 한국으로부터의 離去에 관하여 매일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시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보고는 入境과 出境의 지점 및 每個 지점에서 入境하는 인원과 出境하는 인원의 숫자를 포함한다. 중립국감시위원회는 그의 중립국시찰소조를 통하여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에서 上記의 허가된 부대 및 인원의 輪還을 감독하며 정찰한다.

ㄹ. 한국경외로부터 증원하는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들여오는 것을 정지한다. 단 정전기간에 파괴, 파손, 損耗 또는 소모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은 같은 성능과 같은 유형의 물건을 일대 일로 교환하는 기초위에서 교체할 수 있다. 이러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은 오직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을 경유하여서만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다. 교체의 목적으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한국으로 반입할 필요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러한 물건의 每次 반입에 관하여 군사 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보고중에서 교체되는 處理情況을 설명한다. 교체되어 한국으로부터 내어가는 물건은 오직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을 경유하여서만 내어갈 수 있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그의 중립국시찰소조를 통하여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에서 上記의 허가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의 교체를 감독하며 감시한다.

ㅁ. 본 정전협정중의 어떠한 규정이든지 위반하는 각자의 지휘하에 있는 인원을 적당히 처벌할 것을 보장한다.

ㅂ. 埋葬지점이 기록에 있고 墳墓가 확실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일정한 기한내에 그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지역에 상대방의 분묘등록인원이 들어오는 것을 허가하여 이러한 분묘소재지에 가서 해당측의 이미 죽은 전쟁포로를 포함한 죽은 군사인원의 시체를 발굴하고 또 반출하여 가도록 한다. 上記 사업을 진행하는 구체적 방법과 기한은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결정한다.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상대방의 죽은 군사인원의 매장지점에 관계되는 얻을 수 있는 일체 재료를 상대방에 제공한다.

ㅅ. 군사정전위원회와 그의 공동감시소조가 下記와 같이 지정한 그들의 직책과 임무를 집행할 때에 충분한 보호 및 일체의 가능한 幇助와 협력을 한다. 중립국감독위원회 및 그의 중립국시찰소조의 쌍방이 합의한 주요 교통선을 경유하여 중립국감독위원회본부와 본 정전 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간을 왕래할 때와 또 중립국감독위원회본부와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지점 간을 왕래할 때에 충분한 통행상의 편리를 준다.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요 교통선이 막히든지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통로와 輸送機材를 사용할 것을 허가한다.

ㅇ. 군사정전위원회 및 중립국감독위원회와 그 각자에 속하는 小組에 요구되는 통신 및 운수상 편리를 포함한 보급상의 원조를 제공한다.

ㅈ. 군사정전위원회 본부 부근 비무장지대내의 자기측 지역에 각각 한 개의 적당한 비행장을 건설, 관리, 유지한다. 그 용도는 군사정전위원회가 결정한다.

ㅊ. 중립국감독위원회와 중립국송환위원회의 전체위원 및 기타 인원이 모두 자기의 직책을 적당히 집행함에 필요한 자유와 편리를 가지도록 보장한다. 이에는 인가된 외교인원이 국제관례에 따라 통상적으로 향유하는 바와 동등한 특권, 대우 및 면제권을 포함한다.

14. 본 정전협정은 쌍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敵對中의 일체 地上軍事力量에 적용되며, 이러한 지상군사역량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지역을 존중한다.
15. 본 정전협정은 적대 중의 일체 海上軍事力量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육지에 인접한 海面을 존중하며 한국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봉쇄도 하지 못한다.
16. 본 정전협정은 적대 중의 일체 空中軍事力量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지역 및 이 지역에 인접한 海面의 上空을 존중한다.
17. 본 정전협정의 조항과 규정을 준수하며, 집행하는 책임은 본 정전협정에 조인한 자와 그의 후임 사령관에게 속한다.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각각 그들의 지휘하에 있는 군대 내에서 일체의 필요한 조치와 방법을 취함으로써 그 모든 소속부대 및 인원이 본 정전협정의 전체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을 보장한다.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상호 적극 협력하며 군사정전위원회 및 중립국감독위원회와 적극 협력함으로써 본 정전협정 전체 규정의 文句와 정신을 준수하도록 한다.
18.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 및 그 각자에 속하는 小組의 사업 비용은 적대쌍방이 균등하게 부담한다.

나. 군사정전위원회

1. 구 성

19. 군사정전위원회를 설립한다.
20. 군사정전위원회는 10명의 고급장교로 구성하되 그 중의 5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 중의 5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위원 10명 중에서 각방의 3명은 將級에 속하여야 하며 각방의 나머지 2명은 소장, 준장, 대령 혹은 그와 동급인 자로 할 수 있다.
21. 군사정전위원회 위원은 그 필요에 따라 參謀 보조인원을 사용할 수 있다.
22. 군사정전위원회는 필요한 행정인원을 배치하여 비서처를 설치하되, 그 임무는 동위원회의 기록, 서기, 통역 및 동 위원회가 지정하는 기타 직책의 집행을 협조하는 것이다. 쌍방은 각기 비서처에 비서장 1명, 보조 비서장 1명 및 비서처에 필요한 서기, 전문 기술인원을 임명한다. 기록은 영문, 한국문 및 중국문으로 작성하되 세가지 글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23.
   ㄱ. 군사정전위원회는 처음엔 10개의 공동감시소조를 두어 그 협조를 받는다. 소조의 수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쌍방 수석위원회의 합의를 거쳐 감소할 수 있다.
   ㄴ. 每個의 공동감시소조는 4명 내지 6명의 영관급장교로 구성하되 그 중의 半數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 중의 반수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공동감시소조의 사업상 필요한 운전수, 서기, 통역 등의 부속인원은 쌍방이 이를 제공한다.

2. 책임과 권한

24. 군사정전위원회의 전반적 임무는 본 정전협정의 실시를 감독하며 본 정전협정의 어떠한 위반사건이든지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다.

25. 군사정전위원회는

ㄱ. 본부를 판문점(북위 37도 57분 29초, 동경 126도 0분 00초) 부근에 설치한다. 군사정전위원회는 동 위원회의 쌍방 수석위원의 합의를 거쳐 그 본부를 비무장 지대내의 다른 한 지점에 移設할 수 있다.

ㄴ. 공동기구로서 사업을 진행하며 의장을 두지 않는다.

ㄷ. 그가 수시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절차규정을 채택한다.

ㄹ. 본 정전협정 중 비무장지대와 한강하구에 관한 각 규정의 집행을 감독한다.

ㅁ. 공동감시소조의 사업을 지도한다.

ㅂ. 본 정전협정의 어떠한 위반사건이든지 협의하여 처리한다.

ㅅ. 중립국감독위원회로부터 받은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에 관한 일체 조사보고 및 일체 기타 보고와 회의기록은 즉시로 적대 쌍방 사령관들에게 이를 전달한다.

ㅇ. 下記한 바와 같이 설립한 전쟁포로송환위원회와 失鄕私民歸鄕協調委員會의 사업을 전반적으로 감독하며 지휘한다.

ㅈ. 敵對 쌍방 사령관 간에 통신을 전달하는 중개역할을 담당한다. 단 上記의 규정은 쌍방 사령관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어떠한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相互통신을 전달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없다.

ㅊ. 그의 工作인원과 그의 공동감시소조의 증명, 문건 및 휘장 또 그 임무집행시에 사용하는 일체의 차량, 비행기 및 선박의 식별표지를 발급한다.

26. 공동감시소조의 임무는 군사정전위원회가 본 정전협정 중의 비무장지대 및 한강하구에 관한 각 규정의 집행을 감독함을 협조하는 것이다.

27.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그 중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은 공동감시소조를 파견하여 비무장지대나 한강하구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을 조사할 권한을 가진다. 단 동 위원회 중의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이든지 언제나 군사정전위원회가 아직 파견하지 않은 공동 감시소조의 반수이상을 파견할 수 없다.

28.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의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은 중립국감독위원회에 요청하여,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비무장지대 이외의 지점에 가서 특별한 감시와 시찰을 행할 권한을 가진다.

29. 군사정전위원회가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확정한 때에는 즉시로 그 위반사건을 적대 쌍방 사령관들에게 보고한다.

30. 군사정전위원회가 본 정전협정의 어떠한 위반사건이 만족하게 시정되었다고 확정한 때에는 이를 적대 쌍방 사령관들에게 보고한다.

3. 총 칙

31. 군사정전위원회는 매일 회의를 연다. 쌍방의 수석위원은 합의하여 7일을 넘지 않는 휴회를 할 수 있다. 단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이든지 24시간 전의 통고로써 이 휴회를 끝낼 수 있다.
32. 군사정전위원회의 일체 회의기록의 부본은 매번 회의 후 될 수 있는 대로 속히 敵對쌍방 사령관들에게 송부한다.
33. 공동감시소조는 군사정전위원회에 동 위원회가 요구하는 정기보고를 제출하며 또 이 소조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동 위원회가 요구하는 특별보고를 제출한다.
34. 군사정전위원회는 본 정전협정에 규정한 보고 및 회의기록의 문건철 두벌을 보관한다. 동 위원회는 그 사업진행에 필요한 기타의 보고기록 등의 문건철 두 벌을 보관할 권한을 가진다. 동 위원회의 최후 해산시에는 상기 문건철을 쌍방에 각 한 벌씩 나누어 준다.
35 군사정전위원회는 적대 쌍방 사령관들에게 본 정전협정의 수정 또는 增補에 대한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 건의는 일반적으로 더 유효한 정전을 보장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 중립국감독위원회

1. 구 성

36. 중립국감독위원회를 설정한다.
37. 중립국감독위원회는 4명의 고급장교로 구성하되, 그 중의 2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지명한 중립국 즉 스웨덴 및 스위스가 이를 임명하며, 그 중의 2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이 공동으로 지명한 중립국 즉 폴란드 및 체코슬로바키아가 이를 임명한다. 본 정전협정에서 쓴 중립국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그 전투부대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에 참가하지 않은 국가를 말하는 것이다. 동 위원회에 임명되는 위원은 임명하는 국가의 무장부대로부터 파견될 수 있다. 每個 위원은 후보위원 1명을 지정하여 그 正委員이 어떠한 이유로 출석할 수 없게 되는 회의에 출석하게 한다. 이러한 후보위원은 그 정위원과 동일한 국적에 속한다. 일방이 지명한 중립국 위원의 출석자수와 다른 일방이 지명한 중립국 위원의 출석자수가 같을 때에는 중립국감독위원회는 곧 행동을 취할 수 있다.
38.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위원은 그 필요에 따라 각기 해당 중립국가가 제공한 參謀보조인원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참모보조인원은 본 위원회의 후보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다.
39. 중립국감독위원회에 필요한 행정위원을 제공하도록 중립국에 요청하여 비서처를 설치하되 그 임무는 동 위원회에 필요한 기록, 서기, 통역 및 동 위원회가 지정하는 기타 직책의 집행을 협조하는 것이다.

40.

ㄱ.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처음엔 20개의 중립국감독소조를 두어 그 협조를 받는다. 소조의 수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쌍방 수석위원의 합의를 거쳐 감소할 수 있다. 중립국감독소조는 오직 중립국감독위원회에 대하여서만 책임을 지며 그에 보고하며 또 지도를 받는다.

ㄴ. 每個 중립국감독소조는 최소 4명의 장교로 구성하되 이 장교는 영관급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며, 이 중의 반수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지명한 중립국에서 내고, 또 그 중의 반수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지명한 중립국에서 낸다. 중립국시찰소조에 임명되는 組員은 임명하는 국가의 무장부대에서 이를 낼 수 있다. 각 소조의 직책집행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정황의 요구에 따라 최소 2명의 조원으로 구성되는 分組를 설치할 수 있다. 그 두 조원 중의 1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지명한 중립국에서 내며 1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지명한 중립국에서 낸다. 운전수, 서기, 통역, 통신원과 같은 부속인원 및 각 소조의 임무집행에 필요한 비품은 各方 사령관이 비무장지대내 및 자기측 군사통제 지역내에서 수요에 따라 이를 공급한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동 위원회 자체와 중립국시찰소조들에 그가 요망하는 상기의 인원 및 비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인원은 중립국감독위원회를 구성한 그 중립국의 인원이어야 한다.

2. 책임과 권한

41.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임무는 본 정전협정 제13항 ㄷ목, 제13항 ㄹ목 및 제28항에 규정한 감독, 감시, 시찰 및 조사의 직책을 집행하며 이러한 감독, 감시, 시찰 및 조사의 결과를 군사정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다.

42. 중립국감독위원회는

ㄱ. 본부를 군사정전위원회의 본부 부근에 설치한다.

ㄴ. 그가 수시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절차규정을 채택한다.

ㄷ. 그 위원 및 그 중립국감시소조를 통하여 본 정전협정 제13항 ㄷ목, 제13항 ㄹ목에 규정한 감독과 시찰을 진행하며 또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지점에서 본 정전협정 제28항에 규정한 특별감시와 시찰을 진행한다.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에 대한 중립국시찰소조의 시찰은 소조로 하여금 증원하는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한국으로 들여옴이 없도록 확실히 보장할 수 있게 한다. 단 이 규정은 어떠한 작전 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또는 탄약의 어떠한 비밀설계 또는 特點을 시찰 또는 검사할 권한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ㄹ. 중립국시찰소조의 사업을 지도하며 감독한다.

ㅁ.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내에 있는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

항에 5개의 중립국시찰소조를 주재시키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내에 있는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에 5개의 중립국시찰소조를 주재시킨다. 처음에는 따로 10개의 중립국이동 시찰소조를 後備로 설치하되 중립국감독위원회 본부 부근에 주재시킨다. 그 수는 군사정전위원회 쌍방 수석위원의 합의를 거쳐 감소할 수 있다. 중립국이동 시찰소조 중 군사정전위원회의 어느 일방 수석위원의 요청에 응하여 파견하는 소조는 언제나 그 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

ㅂ. 보고된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을 前目 규정의 범위내에서 지체없이 조사한다. 이에는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 중의 어느 일방 수석위원이 요청하는 보고된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에 대한 조사를 포함한다.

ㅅ. 그의 공작인원과 그의 중립국감시소조의 증명문건 및 휘장, 또 그 임무집행시에 사용하는 일체 차량, 비행기 및 선박의 식별표지를 발급한다.

43. 중립국감시소조는 下記한 각 출입항에 주재한다.

국제연합군의 군사통제지역

인천(북위 37도 28분, 동경 126도 38분)
대구(북위 35도 52분, 동경 128도 36분)
부산(북위 35도 06분, 동경 129동 02분)
강릉(북위 37도 45분, 동경 128도 54분)
군산(북위 35도 59분, 동경 126도 43분)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의 군사통제지역

신의주(북위 40도 06분, 동경 124도 24분)
청진(북위 41도 46분, 동경 129도49분)
흥남(북위 39도 50분, 동경 127도 37분)
만포(북위 41도 09분, 동경 126도 18분)
신안주(북위 39도 36분, 동경 125도 36분)

중립국시찰소조들은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지역내와 교통선에서 통행 상 충분한 편리를 받는다.

3. 총 칙

44. 중립국감독위원회는 매일 회의를 연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합의하여 7일을 넘지않는 휴회를 할 수 있다. 단 어느 위원이든지 24시간 전의 통고로써 이 휴회를 끝낼 수 있다.

45.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일체 회의기록 부본은 매번 회의 후 가급적 속히 군사정전위원회에 송부한다. 기록은 영문, 한국문 및 중국문으로 작성한다.

46. 중립국시찰소조는 그의 감독, 감시, 시찰 및 조사의 결과에 관하여 중립국감독위원회가 요구하는 정기보고를 동 위원회에 제출하며 또 이 소조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동 위원회가 요구하는 특별보고를 제출한다. 보고는 小組 總體가 이를 제출한다. 단 그 소조의 개별적 조원 1명 또는 수명이 이를 제출할 수 있다. 개별적 조원 1명 또는 수명이 제출한 보고는 다만 참고적 보고로 간주한다.
47.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중립국시찰소조가 제출한 보고의 부본을 그가 접수한 보고에 사용된 글로써 지체없이 군사정전위원회에 송부한다. 이러한 보고는 번역 또는 심의, 결정, 수속 때문에 지체시킬 수 없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실제 가능한한 속히 이러한 보고를 심의결정하며 그의 판정서를 우선 군사정전위원회에 송부한다. 중립국감독위원회의 해당 결정을 접수하기 전에는 군사정전위원회는 이런 어떠한 보고에 대하여서도 최종적 행동을 취하지 못한다. 군사정전위원회의 어느 일방 수석위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위원과 그 소조의 조원은 곧 군사정전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출된 어떠한 보고에 대하여서든지 설명한다.
48. 중립국감독위원회는 본 정전협정이 규정하는 보고 및 회의기록의 문건철 두 벌을 보관한다. 동 위원회는 그 사건진행에 필요한 기타의 보고, 기록 등의 문건철 두 벌을 보관할 권한을 가진다. 동 위원회의 최후 해산시에는 상기 문건철을 쌍방에 각 한 벌씩 나누어 준다.
49. 중립국감독위원회는 군사정전위원회에 본 정전협정의 수정 또는 증보에 대한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 건의는 일반적으로 더 유효한 정전을 보장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50. 중립국감독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의 每個 위원은 군사정전위원회의 任意의 위원과 통신연락을 취할 권한을 가진다.

제3조 전쟁포로에 관한 조치

51.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各方이 수용하고 있는 전체 전쟁포로의 석방과 송환은 본 정전협정 조인 전에 쌍방이 합의한 下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ㄱ.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60일 이내에 각방은 그 수용하에 있는 송환을 견지하는 전체 전쟁포로를 포로된 당시에 그들이 속한 일방에 집단적으로 나누어 직접 송환인도되며 이떠한 沮碍도 가하지 못한다. 송환은 본 조의 각 항 관계규정에 의하여 완수한다. 이러한 인원의 송환수속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각방은 정전협정 조인 전에 직접 송환될 인원의 국적별로 분류한 總數를 교환한다. 상대방에 인도되는 전쟁포로의 각 집단은 국적별로 작성한 명부를 휴대하되 이에는 성명, 계급(계급이 있으면) 및 收容番號 또는 軍番號를 포함한다.
    ㄴ. 각방은 직접 송환하지 않은 나머지 전쟁포로를 그 군사통제와 收容下로부터 석방하여 모두 중립국송환위원회에 넘겨 본 정전협정 부록 '중립국송환위원회 직권의 범위'의 각조 규정에 의하여 처리케 한다.

ㄷ. 세가지 글을 병용하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본 정전협정의 용어로서 일방이 전쟁포로를 상대방에 인도하는 행동을 그 전쟁포로의 국적과 거주지의 여하를 불문하고 영문 중에서는 "REPATRIATION" 한국문 중에서는 '송환', 중국문 중에서 '遣返'이라고 규정한다.

52. 各方은 본 정전협정의 효력발생에 의하여 석방되며 송환되는 어떠한 전쟁포로든지 한국충돌 중의 전쟁행동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

53. 송환을 견지하는 전체 病傷전쟁포로는 우선적으로 송환한다. 가능한 범위내에서 포로된 의무인원을 병상전쟁포로와 동시에 송환하여 도중에서 의료와 간호를 제공하도록 한다.

54. 본 정전협정 제51항 ㄱ목에 규정한 전체 전쟁포로의 송환은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60일의 기한내에 완료한다. 이 기한내에 各方은 책임지고 그가 수용하고 있는 상기 전쟁포로의 송환을 실제 가능한 한 속히 완료한다.

55. 판문점을 쌍방의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으로 정한다. 필요한 때에는 전쟁포로송환위원회는 기타의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을 비무장지대내에 증설할 수 있다.

56.

ㄱ. 전쟁포로송환위원회를 설립한다. 동 위원회는 영관급 장교 6명으로 구성하되 그 중 3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 중 3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동 위원회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전반적 감독과 지도하에서 책임지고 쌍방의 전쟁포로 송환에 관계되는 구체적 계획을 조절하며 쌍방이 본 정전협정 중의 전쟁포로 송환에 관계되는 일체 규정을 실시하는 것을 감독한다. 동 위원회의 임무는 전쟁포로들이 쌍방 전쟁포로수용소로부터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에 도달하는 시간을 조절하며 필요할 때에는 병상전쟁포로의 수송 및 복리에 요구되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며 본 정전협정 제57항에서 설립된 공동적십자소조의 전쟁포로송환 협조사업을 조절하며 본 정전협정 제53항과 제54항에 규정한 전쟁포로 실제 송환조치의 실시를 감독하며 필요할 때에는 추가적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을 선정하여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의 안전조치를 취하며 전쟁포로송환에 필요한 기타 관계임무를 집행하는 것이다.

ㄴ. 전쟁포로송환위원회는 그 임무에 관계되는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때는 이러한 사항을 즉시로 군사정전위원회에 제기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전쟁포로송환위원회는 군사정전위원회 본부 부근에 그 본부를 설치한다.

ㄷ. 전쟁포로송환위원회가 전쟁포로 송환계획을 완수한 때에는 군사정전위원회가 즉시로 이를 해산시킨다.

57.

ㄱ.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즉시로 국제연합군에 군대를 제공하고 있는 각국의 적십자 대표를 일방으로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 대표와 중화인민공화

국 적십자 대표를 다른 일방으로 하여 조직되는 공동적십자소조를 설립한다. 공동적십자소조는 전쟁포로의 복리에 요망되는 인도주의적 服務로서 쌍방이 본 정전협정 제51항 ㄱ목에 규정한 송환을 견지하는 전체 전쟁포로의 송환에 관계되는 규정을 집행하는 것을 협조한다. 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공동 적십자소조는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에서 쌍방이 전쟁포로 인도인수사업을 협조하며 쌍방의 전쟁포로수용소를 방문하여 위문하며 전쟁포로의 위문과 전쟁포로의 복리를 위한 선물을 가지고 가서 분배한다. 공동적십자소조는 전쟁포로수용소에서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전쟁포로에게 服務를 제공할 수 있다.

ㄴ. 공동적십자소조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하여 조직한다.

(1) 한 小組는 각방의 본국 적십자로부터 各其 대표 10명씩을 내어 쌍방 합하여 20명으로 구성하며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에서 쌍방 전쟁포로의 인도인수를 협조한다. 동 소조의 의장은 쌍방 적십자사 대표가 매일 윤번으로 담당한다. 동 소조의 사업과 복무를 전쟁포로송환위원회가 이를 조절한다.

(2) 한 소조는 각방의 본국 적십자사로부터 각기 대표 30명씩을 내어 쌍방 합하여 60명으로 구성하며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 관리하의 전쟁포로 수용소를 방문하며 또 전쟁포로수용소에서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전쟁포로에게 복무를 제공할 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사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적십자사의 대표가 동 소조의 의장을 담당한다.

(3) 한 소조는 각방의 본국 적십자사로부터 각기 대표 30명씩을 내어 쌍방 합하여 60명으로 구성하며 국제연합군 관리하의 전쟁포로수용소를 방문하며 또 전쟁포로수용소에서 전쟁포로 인도인수 지점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전쟁포로에게 복무를 제공할 수 있다. 국제연합군에 군대를 제공하고 있는 한나라의 적십자 대표가 동 소조의 의장을 담당한다.

(4) 각 공동적십자소조의 임무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정황이 필요로 할 때에는 최소 2명의 소조원으로 구성하는 분조를 설립할 수 있다. 분조내에서 각방은 동등한 수의 대표를 가진다.

(5) 각방 사령관은 그의 군사통제 지역내에서 사업하는 공동적십자 소조에 운전수, 서기 및 통역과 같은 부속인원 및 각 소조가 그 임무집행상 필요로 하는 장비를 공급한다.

(6) 어떠한 공동적십자소조든지 동 소조의 쌍방 대표가 동의하는 때 에는 그 인원수를 증감할 수 있다. 단 이는 전쟁포로송환위원의 인가를 거쳐야 한다.

ㄷ. 각방 사령관은 공동적십자소조가 그의 임무를 집행하는데 충분한 협조를 주며, 또 그의 군사통제지역내에서 책임지고 공동적십자소조 인원들의 안전을 보장한다. 각방 사령관은 그의 군사통제지역 내에서 사업하는 이러한 소조에 요구되는 보급, 행정 및 통신상의 편의를 준다.

ㄹ. 공동적십자소조는 본 정전협정 제51항 ㄱ목에 규정한 송환을 견지하는 전체 전쟁 포로의 송환계획이 완수되었을 때에는 즉시로 해산한다.

58.

ㄱ. 각방 사령관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속히 그러나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10일 이내에 상대방 사령관에게 다음과 같은 전쟁 포로에 관한 재료를 제공한다.

(1) 제일 마지막 번에 교환한 자료의 마감한 일자 이후에 도망한 전쟁포로에 관한 완전한 재료

(2)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수용기간 중에 사망한 전쟁 포로의 성명, 국적, 계급별 및 기타의 식별자료 또한 사망일자, 사망원인 및 매장지점에 관한 재료

ㄴ. 만일 위에 규정한 보충자료의 마감한 일자 이후에 도망하였거나 또는 사망한 어떠한 전쟁포로가 있으면 수용한 일방은 본 조 제58항 ㄱ목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자료를 전쟁포로송환위원회를 거쳐 상대방에 제공한다. 이러한 자료는 전쟁포로 인도인수계획을 완수할 때까지 10일에 1차씩 제공한다.

ㄷ. 전쟁포로 인도인수계획을 완수한 후에 본래 수용하고 있던 일방에 다시 돌아온 어떠한 도망 전쟁포로도 이를 군사정전위원회에 넘기어 처리한다.

59.

ㄱ.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에 있는 자로서 1950년 6월 24일에 본 정전협정에 확정된 군사분계선 이북에 거주한 전체 私民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귀향하기를 원한다면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은 그들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에 있는 자로서 1950년 6월 24일에 본 정전협정에 확정된 군사분계선 이남에 거주한 전체 私民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귀향하기를 원한다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은 그들이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각방 사령관은 책임지고 本目 규정의 내용을 그의 군사통제지역에 광범히 선포하며 또 적당한 民政당국을 시켜 귀향하기를 원하는 이러한 전체 사민에게 필요한 지도와 협조를 주도록 한다.

ㄴ.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은 군사통제지역에 있는 전체 외국적의 私民 중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으로 가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그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으로 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에 있는 전체 외국적의 사민 중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은 군사통제지역으로 가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그가 조선

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으로 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각방 사령관은 책임지고 본 목 규정의 내용을 그의 군사통제지역에 광범히 선포하며 또 적당한 민정당국을 시켜 상대방 사령관의 군사통제 지역으로 가기를 원하는 이러한 전체 외국적의 사민에게 필요한 지도와 협조를 주도록 한다.

ㄷ. 쌍방의 본 조 제59항 ㄱ목에 규정한 사민의 귀향과 본 조 59항 ㄴ목에 규정한 사민의 이동을 협조하는 조치는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될 수 있는 한 속히 개시한다.

ㄹ.

(1) 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를 설립한다. 동 위원회는 영관급 장교 4명으로 구성하되 그 중 2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 중 2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동 위원회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전반적 감독과 지도밑에 책임지고 上記 私民의 귀향을 협조하는 데 관계되는 쌍방의 구체적 계획을 조절하며 또 상기 사민의 귀향에 관계되는 본 정전협정 중의 일체 규정을 쌍방이 집행하는 것을 감독한다. 동 위원회의 임무는 運輸조치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상기 사민의 이동을 촉진 및 조절하며 상기 사민의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는 越境지점을 선정하며 越境지점의 안전조치를 취하며 또 상기 사민 귀향을 완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타 임무를 집행하는 것 이다.

(2) 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는 그의 임무에 관계되는 어떠한 사항이든지 합의에 도달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곧 군사정전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하게 한다. 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는 그의 본부를 군사정전위원회의 본부 부근에 설치한다.

(3) 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가 그의 임무를 완수할 때에는 군사정전위원회가 즉시로 이를 해산시킨다.

제4조 쌍방 관계정부들에의 건의

60.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쌍방 군사령관은 쌍방의 관계 각국 정부에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한 후 삼개월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급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 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이에 건의한다.

제5조 부칙

61. 본 정전협정에 대한 수정과 증보는 반드시 敵對 쌍방 사령관들의 상호 합의를 거쳐야 한다.

62. 본 정전협정의 각 조항은 쌍방이 공동으로 접수하는 수정 및 증보 또는 쌍방의 정치적 수준에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적당한 협정 중의 규정에 의하여 명확히 교체될 때까지는 계속 효력을 가진다.

63. 제12항을 제외한 본 정전협정의 일체 규정은 1953년 7월 27일 22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53년 7월 27일 10시에 한국 판문점에서 영문, 한국문 및 중국문으로써 작성한다.
이 3개 국어에 의한 각 협정의 본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국제연합군	조선인민군	중국인민지원군
총사령관	최고사령관	사령관
미 육군대장 마크 W.클라크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원수 김 일 성	팽 덕 희

<참석자>

국제연합군대표	조선인민군 및
미육군중장	중국인민지원군 대표
윌리암 K.해리슨	조선인민군 대장 남 일

2. 남북기본합의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1991년 2월 19일 발효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남북화해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3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5조 남과 북은 현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

제6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7조 남과 북은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한다.

제8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정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2장 남북불가침

제9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제11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제12조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군인사교류 및 정보교환문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 실현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 전화를 설치·운영한다.

제14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군사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3장 남북교류·협력

제15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 내부 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과학·기술, 교육, 문화·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제18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19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제20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전기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제21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제22조 남과 북은 경제와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들을 구성·운영한다.

제23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4장 수정 및 발효

제24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25조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서로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1년 12월 13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남측 대표단 수석 대표
대 한 민 국
국 무 총 리 정원식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북 측 대 표 단 단 장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 무 원 총 리 연형묵

2.1 남북기본합의서의 부속합의서 1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1992년 9월 17일 발효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 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체제(제도)인정·존중

제1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체제(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체제(제도)를 소개하는 자유를 보장한다.
제3조 남과 북은 상대방 당국의 권한과 권능을 인정·존중한다.
제4조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저촉되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의 개정 또는 폐기 문제를 법률실무협의회에서 협의·해결한다.

제2장 내부문제 불간섭

제5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법질서와 당국의 시책에 대하여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6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대외관계에 대해 간섭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7조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저촉되는 문제에 대하여서는 상대방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비방·중상 중지

제8조 남과 북은 언론·삐라 및 그 밖의 다른 수단·방법을 통하여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아니한다.
제9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특정인에 대한 지명 공격을 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상대방 당국을 비방·중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을 조작·유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남과 북은 사실에 대한 객관적 보도를 비방·중상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방송과 시각매개물(게시물)을 비롯한 그밖의 모든 수단을 통하여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아니한다.
제14조 남과 북은 군중집회와 군중행사에서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아니한다.

제4장 파괴·전복 행위금지

제15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테러, 포섭, 납치, 살상을 비롯한 직접 또는 간접, 폭력 또는 비폭력 수단에 의한 모든 형태의 파괴·전복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파괴·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선전선동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과 상대측 지역 및 해외에서 상대방의 체제와 법질서에 대한 파괴·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테러 단체나 조직을 결성 또는 지원·보호하지 아니한다.

제5장 정전상태의 평화상태에로의 전환

제18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준수한다.

제19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20조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 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성실히 준수한다.

제6장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제21조 남과 북은 국제기구나 국제회의 등 국제무대에서 상호 비방·중상을 하지 않으며 민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하여 긴밀하게 협조한다.

제22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상대방의 이익을 존중하며 민족의 이익과 관련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긴밀히 협의하고 필요한 협조조치를 강구한다.

제23조 남과 북은 민족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외 공관(대표부)이 함께 있는 지역에서 쌍방 공관(대표부) 사이에 필요한 협의를 진행한다.

제24조 남과 북은 해외동포들의 민족적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고 보호하며 그들 사이의 화해와 단합이 이룩되도록 노력한다.

제7장 이행기구

제25조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화해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따로 작성한다.

제26조 '남북화해공동위원회'안에 '법률실무협의회'와 '비방·중상중지실무협의회'를 두며 그 밖에 쌍방이 합의하는 필요한 수의 실무협의회를 둔다.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화해공동위원회'에서 별도로 작성한다.

제8장 수정 및 발효

제27조 이 부속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28조 이 부속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기: 북측이 제기한 '남과 북은 국제기구들에 하나의 명칭, 하나의 의석으로 가입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남과 북은 국제회의를 비롯한 정치행사들에 전민족을 대표하여 유일 대표단으로 참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남과 북은 제3국이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체 행위에 가담하거나 협력하지 않는다.', '남과 북은 다른 나라들과 맺은 조약과 협정들 가운데서 민족의 단합과 이익에 배치되는 것을 개정 또는 폐기하는 문제를 법률실무협의회에서 협의 해결한다'는 조항들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므로 앞으로 계속 토의한다.

1992년 9월 17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 한 민 국
국무총리 정원식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북측 대표단 단 장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형묵

2.2 남북기본합의서의 부속합의서 2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1992년 9월 17일 발효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 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무력불사용

제1조 남과 북은 군사분계선 일대를 포함하여 자기 측 관할 구역 밖에 있는 상대방의 인원과 물자, 차량, 선박, 함정, 비행기 등에 대하여 총격, 포격, 폭격, 습격, 파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무력사용 행위를 금지하며 상대방에 대하여 피해를 주 일체 무력도발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2조 남과 북은 무력으로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라도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남과 북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 관할 구역에 정규무력이나 비정규무력을 침입시키지 않는다.

제3조 남과 북은 쌍방의 합의에 따라 남북 사이에 오가는 상대방의 인원과 물자. 수송 수단들을 공격, 모의공격하거나 그 진로를 방해하는 일체 적대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 밖에 남과 북은 북측이 제기한 군사분계선 일대에 무력을 증강하지 않는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활동을 하지 않는 문제, 상대방의 영해·영공을 봉쇄하지 않는 문제와 남측이 제기한 서울지역과 평양지역의 안전보장문제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계속 협의한다.

제2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제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계획적이라고 인정되는 무력침공 징후를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상대측에 경고하고 해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것이 무력충돌로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한 사전 대책을 세운다.
남과 북은 쌍방의 오해나 오인, 실수 또는 불가피한 사고로 인하여 우발적 무력충돌이나 우발적 침범 가능성을 발견하였을 경우 쌍방이 합의한 신호규정에 따라 상대측에 즉시 통보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대책을 세운다.

제5조 남과 북은 어느 일방의 무력집단이나 개별적인 인원과 차량, 선박, 함정, 비행기 등이 자연재해나 항로미실과 같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상대측 관할구역을 침범하였을 경우

침범측은 상대측에 그 사유와 적대의사가 없음을 즉시 알리고 상대측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상대측은 그를 긴급 확인한 후 그의 대피를 보장하고 빠른 시일 안에 돌려보내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돌려보내는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며 그 이상 걸릴 수도 있다.

제6조 남과 북 사이에 우발적인 침범이나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같은 분쟁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쌍방의 군사당국자는 즉각 자기측 무장집단의 적대행위를 중지시키고 군사직통전화를 비롯한 빠른 수단과 방법으로 상대측 군사당국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제7조 남과 북은 군사분야의 모든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쌍방 군사당국자가 합의하는 기구를 통하여 협의 해결한다.

제8조 남과 북은 어느 일방이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이 합의서를 위반하는 경우 공동조사를 하여야 하며 위반사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한다.

제3장 불가침 경계선 및 구역

제9조 남과 북의 지상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

제10조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구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

제11조 남과 북의 공중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지상 및 해상 불가침 경계선과 관할구역의 상공으로 한다.

제4장 군사직통전화의 설치·운영

제12조 남과 북은 우발적 무력충돌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장 사이에 군사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한다.

제13조 군사직통전화의 운영은 쌍방이 합의하는 통신수단으로 문서통신을 하는 방법 또는 전화문을 교환하는 방법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 군사당국자들이 직접 통화할 수 있다.

제14조 군사직통전화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기술실무적 문제들은 이 합의서가 발효된 후 빠른 시일 안에 남북 각기 5명으로 구성되는 통신실무자접촉에서 협의 해결한다.

제15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50일 이내에 군사직통전화를 개통한다.

제5장 협의·이행기구

제16조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남북합의서 제12조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2조에 따르는 임무와 기능을 수행한다.

제17조 남북군사분과위원회는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더 필요하다고 서로 합의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협의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세운다.

제6장 수정 및 발효

제18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19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9월 17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남측 대표단 수석대표	북측 대표단 단장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총리 정원식	정무원 총리 연형묵

2.3 남북기본합의서의 부속합의서 3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1992년 9월 17일 발효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 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경제교류·협력

제1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현한다.

① 남과 북은 물자교류와 석탄, 광물, 수산자원 등 자원의 공동개발과 공업, 농업, 건설, 금융, 관광 등 각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사업을 실시한다.

② 남과 북은 자원의 공동개발, 합영·합작 투자 등 경제협력사업의 대상과 형식, 물자교류의 품목과 규모를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③ 남과 북은 자원의 공동개발, 합영·합작투자 등 경제협력사업의 규모, 물자교류의 품목별 수량과 거래조건을 비롯한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쌍방교류. 협력 당사자들 사이에 토의하여 정한다.

④ 남과 북 사이의 경제협력과 물자교류의 당사자는 법인으로 등록된 상사, 회사, 기업체 및 경제 기관이 되며 경우에 따라 개인도 될 수 있다.

⑤ 남과 북은 교류·협력 당사자간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 경제협력 사업과 물자교류를 실시하도록 한다.

⑥ 교류물자의 가격은 국제시장 가격을 고려하여 물자교류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⑦ 남과 북 사이의 물자교류는 상호성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실현한다.

⑧ 남과 북 사이의 물자교류에 대한 대금결제는 청산결제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따라 다른 결제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⑨ 남과 북은 청산결제은행 지정, 결제통화선정 등 대금결제와 자본의 이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⑩ 남과 북은 물자교류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남북 사이의 경제관계를 민족 내부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협의·추진한다.

⑪ 남과 북은 경제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공업규격을 비롯한 각종

자료를 서로 교환하며 교류·협력 당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자기측의 해당 법규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⑫ 남과 북은 경제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분쟁조정절차 등에 대해서는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⑬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서 경제교류와 협력에 참가하는 상대측 인원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편의를 보장한다.

제2조 남과 북은 과학·기술, 환경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현한다.

① 남과 북은 과학·기술, 환경분야에서 정보자료의 교환, 해당 기관과 단체, 인원들 사이의 공동연구 및 조사, 산업부문의 기술협력과 기술자, 전문가들의 교류를 실현하며 환경보호 대책을 공동으로 세운다.

②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데 따라 특허권, 상표권 등 상대측 과학·기술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3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① 남과 북은 우선 인천항, 부산항, 포항항과 남포항, 원산항, 청진항 사이의 해로를 개설한다.

②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교류·협력 규모가 커지고 군사적 대결상태가 해소되는데 따라 해로를 추가로 개설하고, 경의선 철도와 문산-개성 사이의 도로를 비롯한 육로를 연결하며 김포공항과 순안비행장 사이의 항로를 개설한다.

③ 남과 북은 교통로가 개설되기 이전에 진행되는 인원왕래와 물자교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임시교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④ 남과 북은 육로, 해로, 항로의 개설과 운영의 원활한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교환 및 기술 협력을 실시한다.

⑤ 남북 사이의 교류물자는 쌍방이 합의하여 개설한 육로, 해로, 항로를 통하여 직접 수송하도록 한다.

⑥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교통수단에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구제조치를 취한다.

⑦ 남과 북은 교통로 개설 및 운영과 관련한 해당 국제 협약들을 존중한다.

⑧ 남과 북은 남북 사이에 운행되는 교통수단과 승무원들의 출입절차, 교통수단 운행방법, 과 지점 선정 등 교통로 개설과 운영에서 제기되는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경제교류. 협력공동위원회에서 토의하여 정한다.

제4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과 전기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① 남과 북은 빠른 시일 안에 판문점을 통하여 우편과 전기통신을 교환, 연결하도록 하며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기술 협력을 실시한다.

②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서 공적사업과 인도적 사업을 우선 보장하며,

점차 그 이용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③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의 비밀을 보장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정치·군사적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

④ 남과 북은 우편 및 전기통신교류와 관련한 해당 국제 협약들을 존중한다.

⑤ 남과 북 사이에 교류되는 우편 및 전기통신의 종류와 요금, 우편물의 수집, 전달 방법 등 기타 실무적 문제들은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 남과 북은 국제경제의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① 남과 북은 경제분야의 여러 국제행사와 국제 기구들에서 서로 협력한다.

② 남과 북은 경제분야에서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

제6조 남과 북은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보장한다.

제7조 남과 북은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구설치문제와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 이 합의서 '제1장 경제교류·협력'부문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한다.

제2장 사회문화교류·협력

제9조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①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 및 연구·출판·보도자료와 목록 등 정보자료를 상호 교환한다.

②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기술협력을 비롯한 다각적인 협력을 실시한다.

③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국토종단행진, 대표단 파견, 초청·참관 등 기관과 단체, 인원들 사이의 접촉과 교류를 실시한다.

④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연구, 조사, 편찬사업, 행사를 공동으로 실시하며 예술작품, 문화유물, 도서출판물의 교환전시회를 진행 한다.

⑤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데 따라 상대측의 각종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① 남과 북은 모든 민족구성원들이 자기 의사에따라 자유롭게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도록하기 위한 조치를 공동으로 취한다.

② 민족구성원들의 왕래는 남북 사이에 개설된 육로, 해로, 항로를 편리한 대로 이용하여 하도록 하며, 경우에 따라 국제항로도 이용할 수 있다.

③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이 방문지역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하도록 하며, 신변안전

및 무사귀환을 보장한다.

④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이 상대측의 법과 질서를 위반함이 없이 왕래하고 접촉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⑤ 남과 북을 왕래하는 인원들은 필요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쌍방이 합의한 범위 내에서 물품을 휴대할 수 있다.

⑥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인원에 대하여 왕래와 방문목적 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⑦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왕래자에게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구제 조치를 취한다.

⑧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실무적 문제들을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국제무대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①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여러 국제행사와 국제기구들에서 서로 협력한다.

②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에서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

제12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보장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구설치 문제와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14조 이 합의서 '제2장 사회문화교류·협력' 부문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한다.

제3장 인도적 문제의 해결

제15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①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범위는 쌍방 적십자 단체들 사이에 토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②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왕래와 방문을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왕래 절차에 따라 실현한다.

③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상봉면회소 설치문제를 쌍방 적십자단체들이 협의·해결하도록 한다.

④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

⑤ 남과 북은 인도주의 정신과 동포애에 입각하여 상대측 지역에 자연재해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서로 도우며, 흩어진 가족·친척들 가운데 사망자의 유품처리, 유골이전 등을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이미 진행하여 오던 쌍방 적십자단체들의 회담을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열도록 적극 협력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불행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십자단체들의 합의를 존중하며 그것이 순조롭게 실현되도록 지원·보장한다.

제18조 이 합의서 '제3장 인도적 문제의 해결' 부문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쌍방 적십자단체들이 한다.

제4장 수정·발효

제 19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 20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기; 쌍방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왕래에 저촉되는 법적, 제도적 장치 철폐문제를 남북화해 공동위원회 법률실무협의회에서 토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1992년 9월 17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남측 대표단 수석대표	북측 대표단 단장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총리 정원식	정무원 총리 연형묵

3. 비무장지대 일부구역 개방에 대한 국제연합군과 조선인민군간 합의서

비무장지대 일부구역 개방에 대한 국제연합군과 조선인민군간 합의서

1. 쌍방은 정전협정에 따라 저진-온정리간 철도와 송현리-고성간 도로가 통과하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일부구역을 개방하여 그 구역을 남과 북의 관리구역으로 한다.
2. 쌍방은 비무장지대안의 일부구역 개방과 관련된 기술 및 실무적인 문제들과 남과 북의 관리구역에서 제기되는 군사적인 문제들을 정전협정에 따라 남과 북의 군대들 사이에 협의처리 하도록 한다.
3. 본 합의서는 판문점 장성급회담에서 비준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2년 9월 12일

제스 엔. 솔리건 소장
국제연합군측 대표

리찬복 상장
조선인민군측 대표

4.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도로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도로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

대한민국 국방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는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동해지구와 서해지구의 철도·도로를 하루빨리 연결하는 것이 남북사이의 긴장을 완화하고 교류와 협력을 보다 활성화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데 견해를 같이 하고 이를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북관리구역 설정

① 쌍방은 동해지구와 서해지구의 비무장지대에 남북관리구역을 설정한다.
동해지구 남북관리구역은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1289호-제1291호 구간에서 낡은 철도노반 중심을 기준으로 하여 동쪽으로 70m, 서쪽으로 30m, 계 100m,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은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0039호-제0043호 구간에서 낡은 철도노반 중심을 기준으로 하여 동쪽으로 50m, 서쪽으로 200m, 계 250m 폭으로 비무장지대 남과 북의 경계선까지로 한다.

② 남북관리구역들에서 제기되는 모든 군사실무적 문제들은 남과 북이 협의 처리한다.

③ 쌍방은 동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안에 동해선 철도와 도로를,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안에 서울-신의주간 철도와 문산-개성간 도로를 건설하여 운영한다.

④ 쌍방은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자기측 지역에서 지뢰제거(해제)와 철도 및 도로 연결작업 그리고 공사인원과 장비의 출입 및 통제 등 군사적제반 문제들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⑤ 쌍방은 남북관리구역들에서 지뢰제거(해제)가 끝나면 그의 외곽선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표시하고 상대측에 통보한다.

⑥ 쌍방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50m 떨어진 남북관리구역 자기측 도로주변에 각각 1개씩의 경비(차단)초소를 설치하며 그외 다른 군사시설물들을 건설하지 않는다.

⑦ 남과 북을 오가는 인원들과 열차 및 차량의 군사분계선 통과와 남북관리구역 안의 군사적 안전보장과 관련한 문제들은 별도로 날짜를 선정하여 협의 및 확정한다.

2. 지뢰제거(해제) 작업

① 쌍방은 철도와 도로건설 및 운행, 유지를 위하여 남북관리구역 자기측 지역의 지뢰와 폭발물을 제거(해제) 한다.

② 쌍방은 지뢰제거(해제)를 비무장지대 자기측 경계선으로부터 군사분계선 방향으로 나가면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하에 군사분계선 가까이에 있는 일부 구간에서 먼저 작업할 수 있다.

③ 쌍방은 작업인원수, 장비(기재)수량, 식별표식을 작업에 편리하게 정하며 사전에 상대측에 통보한다.
④ 쌍방은 작업을 09시에 시작하여 17시까지 하며 필요한 경우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⑤ 쌍방은 상대측 작업인원들에게 폭음으로 자극을 주거나 파편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폭발은 1일전 16시까지 상대측에 통보하며 이러한 폭발은 오후 작업시간에만 한다.
⑥ 쌍방 작업인원들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가까이 접근하여 그 거리가 400m로 좁혀지는 경우 안전보장을 위하여 그 구역안에서의 작업은 날짜를 엇바꾸어 월·수·금은 북측이, 화·목·토는 남측이 하도록 한다.
⑦ 군사분계선까지 지뢰제거(해제)를 먼저 끝낸 측에서는 지뢰제거(해제)구역을 다른 일방이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하고 상대측에 통보한다.
⑧ 쌍방은 지뢰제거(해제)와 관련한 장비 및 기술적 문제들을 협조한다.
⑨ 쌍방은 2002년 9월 19일부터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자기측 지역 안의 지뢰제거(해제) 작업을 동시에 착수한다.

3. 철도와 도로 연결작업

① 작업인원과 장비(기재)들의 수와 식별표식은 지뢰제거(해제)시와 같이하며 작업 시간은 각기 편리하게 정한다.
② 쌍방은 작업과정에 폭발을 비롯하여 상대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전화를 통하여 통보해 주며 필요한 협조를 한다.
③ 쌍방의 작업장 거리가 200m까지 접근하는 경우 그 구역 안에서의 작업을 남측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북측은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며 필요에 따라 협의하여 변경시킬 수 있다.
④ 쌍방은 군사분계선일대의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마감단계 공사를 위해 일방의 인원이나 차량들이 군사분계선을 20m범위까지 넘어서는 것을 허용한다.
⑤ 쌍방은 철도와 도로 연결작업에 따르는 측량 및 기술협의를 위해 남북관리구역 자기측 지역들에 출입하는 상대측 인원에 대한 신변안전 및 편의를 보장한다.

4. 접촉 및 통신

① 지뢰제거(해제) 및 철도, 도로 연결작업과 관련하여 수시로 제기되는 군사 실무적 문제들은 전화통지문을 통하여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작업과정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한 현장 군사실무책임자 사이의 접촉은 남북관리구역들에서 지뢰를 제거(해제)하고 철도, 도로 노반 공사를 끝내는 시기에 그 구역들의 군사분계선상에 지어 놓은 임시건 물에서 한다.
③ 그 전단계에서 부득이 만나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어느 일방의 요청에 따라 남측 「자유의 집」과 북측 「판문각」에서 접촉한다.

④ 쌍방은 공사현장들 사이의 통신보장을 위하여 동해지구와 서해지구에 각각 유선통신 2회선(자석식 전화 1회선, 팩스 1회선)을 연결한다.
서해지구에서는 합의서 발효 후 1주일 내에 판문점 회의장구역 서쪽 군사분계선에서 연결하고 동해지구에서는 지뢰가 완전히 제거(해제)된 다음 남북관리구역 동쪽 군사분계선상에서 연결하며 그 전단계에서의 통신연락은 서해지구 통신선로를 이용한다.
⑤ 쌍방은 매일 07시부터 07시 30분사이에 시험통화를 하며 통신이 두절되는 경우 기존통로를 이용하여 상대방에 통보해 주고 즉시 복구한다.

5. 작업장경비 및 안전보장
① 쌍방은 남북관리구역들에서 공사인원과 장비(기재)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각 100명을 넘지않는 군사인원으로 자기측 경비근무를 수행하며 그중 군사분계선방향 경계인원은 15명으로 한다.
② 경비인원들의 무장은 각기 편리한 개인무기로 하고 1인당 실탄 30발을 휴대 하며 그 외 모든 무기, 전투장비(기술기재)의 반입을 금지 한다.
③ 경비인원들의 식별표식은 작업인원과 구별되게 하며 경비인원 외에는 그 어떤 인원도 무기를 휴대할 수 없다.
④ 경비인원들은 군사분계선을 넘어 상대측 지역으로 들어갈 수 없으며 상대 측 작업인원들을 향하여 도발 행위를 할 수 없다.
⑤ 쌍방이 날짜를 엇바꾸어 작업하는 경우 작업을 하지 않는 측의 경비인원들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0m 떨어진 위치에서 경비근무를 수행한다.
⑥ 쌍방은 상대측 작업인원과 장비(기재)의 안전을 보장하며 예상치 않은 대결과 충돌을 막기 위하여 작업장과 그 주변에서 상대측을 자극하는 발언이 나 행동, 심리전 등을 하지 않도록 한다.
⑦ 쌍방은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모든 경비 및 작업인원들을 비무장지대 밖으로 철수시키며 전화통지문 또는 남북군사 실무회담을 통하여 사태를 해결하고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⑧ 쌍방은 작업장과 그 주변에서 산불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상대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즉시 서로 통보해주며 자기측 지역에 대한 진화 및 피해방지 대책을 신속히 세우고 피해확대를 막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한다.

6. 합의서 효력발생과 폐기 및 수정, 보충
① 본 합의서는 남측 국방부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장이 서명하여 문건을 교환 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② 본 합의서는 동해선 철도와 도로, 서울-신의주간 철도와 문산-개성간 도로가 지나가는 비무장지대 남북관리구역들에서만 적용된다.

③ 본 합의서의 철도, 도로 연결작업과 관련한 조항(1조 4항, 7항, 2조~5조)들은 작업이 완료되면 자동적으로 폐기된다.

④ 본 합의서는 남측 국방부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장이 합의하여 수정, 보충할 수 있다. 이 합의서는 2부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02년 9월 17일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부장관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장
이준	조선인민군 차수 김일철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 2009. 9.10] [법률 제9780호, 2009. 6. 9,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사기지"란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해군기지·항공작전기지·방공(방공)기지·군용전기통신기지,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를 말한다.
2. "군사시설"이란 전투진지,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전기통신설비,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供用)되는 시설을 말한다.
3. "해군기지"란 군의 해상작전의 근거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군항 : 해군 주세력의 근거지
나. 해군작전기지 : 함대별 작전근거지

4. "항공작전기지"란 군의 항공작전의 근거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전술항공작전기지 : 군의 전술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는 기지
나. 지원항공작전기지 : 군의 지원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는 기지
다. 헬기전용작전기지 : 군의 회전익항공기(回轉翼航空機)를 운용할 수 있는 기지
라. 예비항공작전기지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항공작전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 비상활주로, 헬기 예비 작전기지 및 민간비행장
5. "군용항공기"란 군이 사용하는 비행기·회전익항공기·비행선(비행선)·활공기(활공기), 그 밖의 항공기기를 말한다.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통제보호구역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중 고도의 군사 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과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역
나. 제한보호구역 : 보호구역 중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

7. “민간인통제선”이란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에서 군사작전상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선을 말한다.
8. “비행안전구역”이란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9. “대공방어협조구역”이란 대공(對空)방어 작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10. “착륙대(착륙대)”란 활주로와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는 경우에 항공기와 탑승자의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안전지대로서 별표 1에 따른 항공작전기지별 제1구역의 지표면을 말한다.
11. “기본표면”이란 착륙대의 긴 방향 중심선상부에 접하는 일직선에 중심을 둔 직사각형의 표면(수직투영면이 착륙대와 같은 표면을 말한다)을 말한다.
12. “표면높이”란 비행안전구역 안에서의 고도제한 높이로서 별표 1에 따라 산정되는 것을 말한다.
13. “최고장애물”이란 비행안전구역 안에서 각 구역의 표면높이를 초과하는 자연상태의 가장 높은 장애물로서 활주로를 중심으로 전·후·좌·우 지역별로 구분하여 제14호의 관할부대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4. “관할부대장”이란 작전책임지역 안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관리하거나 비행안전 또는 대공방어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의 장을 말한다.
15. “관리부대장”이란 관할부대장의 작전책임지역 안에 주둔하고 있으나 지휘계통이 달라 당해 지역의 관할 부대와 독립하여 일정한 범위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관리하거나 비행안전 및 대공방어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의 장을 말한다.

제2장 보호구역등의 지정

제3조 (보호구역등의 지정 원칙) 보호구역, 민간인통제선, 비행안전구역 및 대공방어협조구역(이하 “보호구역등”이라 한다)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 및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지정되어야 한다.

제4조 (보호구역등의 지정권자 등) ① 국방부장관은 합동참모의장(이하 “합참의장”이라 한다)의 건의(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에 따라 보호구역등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의 용도 해제, 군사시설의 철거, 작전환경의 변화, 그 밖의 사유로 보호구역등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때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 ① 보호구역의 지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제보호구역

가. 민간인통제선 이북(以北)지역. 다만, 통일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지역, 취락지역 또는 안보관광지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나. 가목 외의 지역에 위치한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다만, 방공기지[대공(대공)방어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대공(地對空) 무기 등을 운용하는 기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

2. 제한보호구역

가. 군사분계선의 이남(以南) 25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 이남지역. 다만,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 없거나 군사작전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의 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가목 외의 지역에 위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다만, 취락지역에 위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

다. 폭발물 관련 시설, 방공기지, 사격장 및 훈련장은 당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라. 전술항공작전기지는 당해 군사기지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지원항공작전기지 및 헬기전용작전기지는 당해 군사기지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마. 군용전기통신기지는 군용전기통신설비 설치장소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2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② 민간인 통제선은 군사분계선의 이남 10킬로미터 범위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군기지 중 군항의 보호구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해군작전기지의 수역(水域)에 대한 보호구역은 항만의 경계 안에서 지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경계,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비행안전구역의 지정범위 등) ① 비행안전구역은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로 구분하되, 그 지정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 위치, 비행안전구역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대공방어협조구역의 지정범위 등) ① 대공방어협조구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군 관할 구역을 기준으로 하여 지정한다.
② 대공방어협조구역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보호구역등의 고시 및 표지) ① 국방부장관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호구역등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보호구역 또는 민간인 통제선을 지정한 때에는 보호구역 또는 민간인통제선의 지정사실, 관할부대장 또는 관리부대장(이하 "관할부대장등"이라 한다), 보호구역에서의 제한 또는 금지사항 및 그 위반자에 대한 처벌의 취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인통제선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시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시 및 표지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행위의 제한

제9조 (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① 누구든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11호 또는 제12호의 경우 미리 관할부대장등(제1호의 경우에는 주둔지부대장을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출입. 다만, 군사작전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할 수 있다.
   가. 통제보호구역
   나.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2.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주택의 신축. 다만,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
4.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촬영·묘사·녹취·측량 또는 이에 관한 문서나 도서 등의 발간·복제.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을 위하여 미리 관할부대장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보호구역등의 표지(보호구역등임을 나타내는 표본·표석·부표·출입통제표찰 또는 수중부설물을 포함한다)의 이전 또는 훼손
6. 군함의 항로 방해
7. 표류물, 침몰물의 습득 또는 군사작전이나 항해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의 유기(遺棄)
8. 군용항공기를 제외한 항공기의 항공작전기지에의 착륙
9. 군사시설 또는 군용항공기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을 손상시키는 행위
10. 군용항공기를 향하여 물건을 던지거나 군용항공기 운항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
11. 제5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제한보호구역 안에서의 각종 총포의 발사, 폭발물의 폭발 등의 행위
12. 제5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제한보호구역 안에서의 군용통신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매설물 등(이하 "장애설비등"이라 한다)의 설치

②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보호구역 안에서 군용통신에 장애가 되는 장애설비 등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① 누구든지 비행안전구역(예비항공작전기지 중 민간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을 제외한다)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미리 관할부대장등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구역에서 군사시설(민간항공기의 항행을 지원하기 위한 항행안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재배 또는 방치
2. 제2구역부터 제6구역까지에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이들의 투영면이 일치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들 중 가장 낮은 표면으로 한다)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재배 또는 방치
3. 군용항공기를 제외한 항공기의 비행안전구역 상공의 비행
4. 항공등화의 명료한 인지를 방해하거나 항공등화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유사등화의 설치
5. 비행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연막·증기의 발산 또는 색채유리나 그 밖의 반사물체의 진열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비행안전구역 중 전술항공작전기지의 제3구역, 제5구역 또는 제6구역과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 또는 제5구역 안에서는 각 구역별로 최고장애물 지표면 중 가장 높은 지표면의 높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구역의 지표면으로부터 45미터 높이 이내에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설치 또는 재배할 수 있다. 다만,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제5구역의 경계부분이 연속적으로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능선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 경계부분의 높이가 최고장애물의 지표면 높이의 기준이 됨으로써 본문에 따른 높이까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최고장애물의 지표면 높이가 높은 구역의 최고장애물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구역 간의 경계부분에서의 표면높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술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 제2구역과 제3구역이 접하는 부분에서는 제3구역의 바깥쪽 상방향으로 50분의 1의 경사면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2. 전술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4구역이 제5구역과 접하는 부분 및 지원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3구역이 제4구역과 접하는 부분에서는 각각의 경계부분으로부터 상방향으로 7분의 1의 경사면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3. 전술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2구역이 제6구역과 접하는 부분 및 지원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2구역이 제5구역과 접하는 부분에서는 제2구역의 긴 변으로부터 상방향으로 7분의 1의 경사면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④ 관할부대장등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비상활주로의 비행안전구역에 식물 재배 및 이와 관련되는 임시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⑤ 관할부대장등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각 기지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에 있어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 또는 재배를 허용할 수 있다.

제11조 (장애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관할부대장등(제9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주둔지부대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1조에서 같다)은 제9조·제10조를 위반한 자 또는 그 위반으로 인한 장애물의 소유자와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퇴거를 강제하거나 장애물의 제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관할부대장등은 제1항에 따른 장애물의 제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제거 또는 이전하게 할 수 있다.

③ 관할부대장등은 제1항에 따른 소유자등을 알 수 없거나 급박한 위험이 존재하는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명령 없이 직접 이를 제거 또는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소유자등에게 이에 사용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④ 관할부대장등은 제10조제1항제2호,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장애물 외의 건축물·공작물·식물 등으로서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장애물에 대하여는 소유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비용을 지급하고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⑤ 관할부대장등은 제4항에 따른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의 설치명령을 받은 소유자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 (선박의 정박지 제한과 입항 시 선박명 표시) ① 선박은 보호구역 안에서 군의 작전이나 항해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정박하여야 한다.

② 관할부대장등은 보호구역 안에 정박 중인 선박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정박지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퇴거의 강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해군기지에 입항하는 선박은 보호구역 외곽의 3해리 지점으로부터 정박지점에 이르기까지 만국선박식별 신호에 따라 그 선박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다만, 보호구역의 보호·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의 신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도로·철도·교량·운하·터널·수로·매설물 등과 그 부속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변경
3. 하천 또는 해면의 매립·준설(준설)과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
4. 광물·토석(토석) 또는 토사(土砂)의 채취
5. 해안의 굴착
6. 조림 또는 임목(林木)의 벌채
7.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
8. 해저시설물의 부설 또는 변경
9. 통신시설의 설치와 그 사용
10. 총포의 발사 또는 폭발물의 폭발
11. 해운의 영위

12. 어업권의 설정,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
13. 부표(浮標)·입표(입표), 그 밖의 표지의 설치 또는 변경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등을 하려는 때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1. 비행안전구역 안에서 제10조제1항제2호·제4호 및 제2항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등화의 설치·변경 또는 식물의 재배
2. 대공방어협조구역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높이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③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 제15조에 따른 소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그 의견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제3항에 따른 통보기한을 1회에 한하여 10일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그 연장 사유, 처리현황, 연장 기한을 명시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의견을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당초 협의기관의 직근 상급기관을 말하되, 제10조제5항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6항 및 제7항에서 같다)에게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협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허가 등의 당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재협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⑦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재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제10조제5항의 사항에 대하여 재협의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갈음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합동참모본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⑧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협의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허가 등을 한 경우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허가 등의 취소, 행위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 (보호구역등에서의 협의업무의 위탁 등) ①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도시 지역 안의 보호구역, 농공 단지 등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면서 지역사회발전 및 주민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또는 대공방어협조구역에 있어서의 제13조에 따른 협의업무를 제15조에 따른 소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관할부대장등이 협의업무를 위탁하려는 때에는 제15조제3항에 따른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합참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협의업무의 범위와 위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심의위원회 및 관리기본계획 등

제15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국방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2항에 따른 합동참모본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보호구역등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따른 국방부장관 소관 협의에 관한 사항
3. 제14조에 따른 국방부장관 소관 협의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4.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참의장 소속으로 합동참모본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합참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합참의장의 건의사항
2. 제13조제7항 단서에 따른 심의사항
3.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합참의장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1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5. 그 밖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합참의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작전책임지역 또는 관리책임지역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할부대장등 소속으로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심의위원회(이하 "관할부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3조에 따른 관할부대장등 소관 협의에 관한 사항
2. 제14조에 따른 관할부대장등 소관 협의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3.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관할부대장등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④ 국방부심의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에서 추천하는 자 2인 이상을 포함한 9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합참심의위원회 및 관할부대심의위원회는 합참의장 및 관할부대장등이 지명하는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합참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제2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민간 항공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⑤ 국방부심의위원회, 합참심의위원회 및 관할부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방부장관은 보호구역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에 관한 기본방향, 보호구역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방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보호구역등의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사항,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관할부대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관할부대의 보호구역등 관리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부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토지 매수 청구 및 손실보상청구 등

제17조 (토지의 매수청구 등) 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구역등의 지정으로 인하여 그 구역 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 또는 당해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방부장관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보호구역등의 지정 당시부터 당해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2.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당해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가 제3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수하여야 한다.

③ 매수대상토지의 범위 및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의 매수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시기, 방법 및 매수청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비용의 부담) ① 국방부장관은 제17조제4항에 따른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따르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매수예상가격에 비하여 매수가격이 30퍼센트 비율 이상 하락한 경우
2. 법령의 개폐 등으로 인하여 매수청구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

③ 매수청구인이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9조 (협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 ① 국방부장관은 보호구역등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그 구역 안의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이하 이 조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을 매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협의 매수하는 경우 가격의 산정시기·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부터 제77조까지와 제7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손실보상) 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 및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애설비등의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2. 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장애물을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거함으로써 발생한 손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그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방법·산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21조 (이의신청) ①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관리의 협조) ① 관할부대장등은 군이 상주하지 아니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경찰서장은 그 시설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23조 (외국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적용) 이 법은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류(駐留)하는 외국군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7장 벌칙

제24조 (벌칙) ① 제9조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군사시설 또는 군용 항공기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을 손상시킨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9조제1항제6호, 제10호 또는 제10조제1항제5호를 위반한 자

③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주택을 신축한 자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장애물의 제거, 그 밖의 조치명령(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명령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1호·제7호·제8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설비 등을 사용한 자
3.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장애물의 제거, 그 밖의 조치 명령(제1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명령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12조제2항에 따른 관할부대장등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⑦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선박의 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⑧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조 (몰수) 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3호의 행위를 한 자가 소유하는 어획물·제품·어선 또는 어구는 몰수할 수 있다. 다만, 어선 몰수의 경우에는 최근 5년 이내에 제9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획물·제품·어선 또는 어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부칙 <법률 제8733호, 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및 「군용항공기지법」은 각각 폐지한다.

제3조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이 법 시행 후 제16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은 2009년 6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후 제16조제3항에 따른 최초의 보호구역등 관리계획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손실보상청구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같은 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손실보상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및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군용전기통신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보호구역과 관련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6조 (보호구역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군용항공기지법」 및 「군용전기통신법」에 따라 설정되거나 지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 민간인통제선, 해군기지구역, 기지보호구역 및 특별보호구역은 각각 이 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민간인통제선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되, 제5조에 따른 지정범위를 초과하는 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은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이 법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지뢰지대 등 안전과 관련한 지역의 변경은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변경시기를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사시설보호법」 및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대공방어협조구역 및 비행안전구역은 각각 이 법에 따른 대공방어협조구역 및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7조 (토지매수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토지매수를 청구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른다.

제8조 (손실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에 대하여는 「군용전기통신법」 및 「군용항공기지법」의 종전 규정에 따른다.

제9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군용항공기지법」 및 「군용전기통신법」에 따른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중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한다.

② 고도(古都)보존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으로 한다.

③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한다.

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④ 군용전기통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0조, 제11조제1항제5호, 제21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⑤ 금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⑥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⑦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⑧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⑨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08.3.21>

제25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⑩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호구역등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⑪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⑫ 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한다.

11.「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⑬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⑭ 외국인토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밖에 국방목적을 위하여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⑮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16>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17>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18> 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접경지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이남(以南)의 시·군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민간인 통제선 으로부터 거리 및 지리적 여건·개발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군사분계선 남방 2킬로미터 지점을 잇는 선으로부터 민간인통제선 사이의 지역으로서 집단취락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과 해상의 북방한계선 이남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접경지역으로 본다.

제3조 단서 중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하고, 제9조

제2항 중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 요청을 받은 관할 부대장"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요청을 받은 관할부대장등"으로 한다.

<19>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요청을 받은 관할 부대장"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요청을 받은 관할부대장등"으로 한다.

<20>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 제목 중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서 실시하는 특화사업은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한 것으로 본다.

<21>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삭제한다.

1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2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3호 중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1호"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로 한다.

<23>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24> 측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 후단 중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한다.

<2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연번 43란부터 46란까지, 48란 및 50란부터 55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별표의 연번 47란, 49란, 56란부터 65란까지 및 198란부터 200란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연번	근거법률	지역·지구 등 명칭
4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4조 및 제5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4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4조 및 제5조	통제보호구역
4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4조 및 제5조	제한보호구역
4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4조 및 제7조	대공방어협조구역
4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4조 및 제6조	비행안전구역
4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4조 및 제6조	비행안전 제1구역
4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4조 및 제6조	비행안전 제2구역
5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4조 및 제6조	비행안전 제3구역
5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4조 및 제6조	비행안전 제4구역
5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4조 및 제6조	비행안전 제5구역
5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4조 및 제6조	비행안전 제6구역

<26>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중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한다.

<27>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2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29>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삭제한다.

1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30>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중 "「군용항공기지법」의 적용을 받는 비행장"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항공작전기지"로 하고, 제96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7호를 삭제한다.

1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또는 「군용항공기지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8976호, 2008.3.21> (도로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9조제94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생략>…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3>까지 생략

<94> 법률 제8733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0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95>부터 <99>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9780호, 2009.6.9.> (항공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다목 중 "「항공법」제2조제13호의 장애물제한표면"을 "「항공법」제2조제16호의 장애물 제한표면"으로 한다.

⑥부터 <19>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별표 1] 항공작전기지별 비행안전구역의 지정범위 등(제6조제1항 관련) <개정 2009.6.9>

1. 전술항공작전기지
   가. 제1구역(장애제거구역)은 활주로 양끝에서 밖으로 각각 61미터의 거리에 있는 직선과 활주로 중심선 양쪽 밖으로 각각 300미터의 거리에 있는 직선으로 이루어지는 직사각형 내의 구역으로 하며, 이를 도시(圖示)하면 별표 2의 제1구역과 같다.
   나. 제2구역(접근경사표면)은 기본표면 양끝의 짧은 변 바깥쪽에 연접(連接)한 구역으로서 기본표면 양끝의 폭 600미터를 짧은 변으로 하고, 그 짧은 변으로부터 7,620미터의 거리에 있는 2,438.5미터의 평행선(활주로 중심선의 연장선에서 양쪽 밖으로 각각 1,219.25미터)을 긴 변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사다리꼴형 내의 구역으로서 기본표면의 짧은 변에 접하고 바깥쪽 상부로 향하여 50분의 1의 경사도를 이루는 구역으로 하며, 이를 도시하면 별표 2의 제2구역과 같다.
   다. 제3구역(접근수평표면)은 제2구역의 긴 변 바깥쪽에 연접한 구역으로서 제2구역의

긴 변을 짧은 변으로 하고, 그 짧은 변으로부터 7,620미터의 거리에 있는 4,877미터의 평행선(활주로 중심선의 연장선에서 양쪽 밖으로 각각 2,438.5미터)을 긴 변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사다리꼴형 내의 구역으로서 기본표면 양 끝으로부터 152미터의 높이를 이루는 구역으로 하며, 이를 도시하면 별표 2의 제3구역과 같다.

라. 제4구역[전이표면(轉移表面)]은 기본표면의 긴 변을 짧은 변으로 하고, 활주로 중심선 양끝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지름 2,286미터의 원이 제2구역 바깥쪽 변과 각각 만나는 점을 연결한 직선(활주로 중심선과 평행선)을 긴 변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사다리꼴형 내의 구역으로서 기본표면과 제2구역 외곽선으로부터 바깥쪽 상부로 향하는 7분의 1의 경사도를 이루는 구역으로 하며, 이를 도시하면 별표 2의 제4구역과 같다.

마. 제5구역(내부수평면)은 활주로 중심선 양끝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지름 2,286미터의 원이 제2구역 바깥쪽 변에서 시작하여 제1구역 짧은 변 연장선 교차점까지의 두 원호를 연결(활주로 중심선과 평행하게 연결)하는 선과 제4구역의 긴 변으로 이루어지는 구역으로서 기본표면의 중심선의 높이 중 가장 높은 점을 기준으로 하여 수직상방으로 45미터의 높이를 이루는 수평인 평면구역으로 하며, 이를 도시하면 별표 2의 제5구역과 같다.

바. 제6구역(원추표면)은 제5구역의 바깥쪽 변으로부터 2,134미터의 폭으로 제2구역 바깥쪽 변까지 이루어지는 구역으로서 제5구역 외곽선으로부터 바깥쪽 상부로 향하는 20분의 1의 경사도를 이루는 구역으로 하며, 이를 도시하면 별표 2의 제6구역과 같다.

2. 지원항공작전기지

가. 제1구역(장애제거구역)은 활주로 양끝에서 밖으로 각각 60미터의 거리에 있는 직선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활주로 등급에 따른 폭으로 이루어지는 직사각형 내의 구역으로 하며, 이를 도시하면 별표 3의 제1구역과 같다.

나. 제2구역(접근경사표면)은 기본표면의 양끝 짧은 변 바깥쪽에 연접한 사다리꼴형의 경사진 표면으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길이와 경사도를 가진 표면으로 하며, 이를 도시하면 별표 3의 제2구역과 같다.

다. 제3구역(전이표면)은 기본표면의 긴 변과 제2구역의 경사변에서 바깥쪽 상방 7분의 1의 경사도로 수평표면과 접하는 표면으로 하며, 이를 도시하면 별표 3의 제3구역과 같다.

라. 제4구역(수평표면)은 활주로 중심선 양끝 지점을 중심으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반지름을 가지는 원호들과 그 접선으로 이루어진 표면으로서 기본표면 중심선의 높이 중 가장 높은 점을 기준으로 하여 수직상방으로 45미터의 높이를 이루는 수평표면으로 하며, 이를 도시하면 별표 3의 제4구역과 같다.

마. 제5구역(원추표면)은 수평표면의 외측경계선으로부터 바깥쪽 상부로 20분의 1의 경사도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수평거리까지 연장한 표면으로 하며, 이를 도시하면 별표 3의 제5구역과 같다.

3. 헬기전용작전기지

가. 제1구역(장애제거구역)은 활주로 중심선에서 양쪽 밖으로 각각 40미터의 거리에 있는 직선과 활주로 양끝에서 밖으로 각각 30미터의 거리에 있는 직선으로 이루어지는 직사각형 내의 구역으로 하며, 이를 도시하면 별표 4의 제1구역과 같다.

나. 제2구역(접근경사표면)은 기본표면의 양쪽 짧은 변 바깥쪽에 연접한 구역으로서 제1구역 양끝의 폭 80미터를 짧은 변으로 하고, 그 짧은 변으로부터 1,000미터 떨어진 거리에 있는 480미터의 평행선(활주로 중심선의 연장선에서 양쪽 밖으로 각각 240미터)을 긴 변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사다리꼴형 내의 구역으로서 기본표면의 양쪽 짧은 변으로부터 바깥쪽 상부로 향하여 20분의 1의 경사도를 이루는 구역으로 하며, 이를 도시하면 별표 4의 제2구역과 같다.

다. 제3구역(전이표면)은 기본표면의 양쪽 긴 변 바깥쪽에 연접한 구역으로서 기본표면의 긴 변을 짧은 변으로 하고 그 짧은 변으로부터 200미터의 거리에 있는 평행선을 긴 변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사다리꼴형 내의 구역으로서 기본표면의 양쪽 긴 변으로부터 바깥쪽 상부로 향하여 4분의 1의 경사도를 이루는 구역으로 하며, 이를 도시하면 별표 4의 제3구역과 같다.

4. 예비항공작전기지

가. 비상활주로

(1) 제1구역은 비상활주로 중심선에서 양쪽 밖으로 각각 72.5미터 거리에 있는 직선과 비상활주로 양끝에서 밖으로 각각 300미터의 거리에 있는 직선으로 이루어지는 직사각형 내의 구역으로 하며, 이를 도시하면 별표 5의 제1구역과 같다.

(2) 제2구역은 기본표면의 양끝 짧은 변 바깥쪽에 연접한 구역으로서 기본표면 양끝의 폭 145미터를 짧은 변으로 하고, 그 짧은 변으로부터 2,000미터 떨어진 거리에 있는 945미터의 평행선(활주로 중심선의 연장선에서 양쪽 밖으로 각각 472.5미터)을 긴 변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사다리꼴형 내의 구역으로서 기본표면 양끝으로부터 바깥쪽 상부로 향하는 35분의 1의 경사도를 이루는 구역으로 하며, 이를 도시하면 별표 5의 제2구역과 같다.

(3) 제3구역은 기본표면의 긴 변 바깥쪽에 연접한 구역으로서 기본표면의 긴 변을 짧은 변으로 하고 그 짧은 변으로부터 500미터의 거리에 있는 7,300미터 평행선을 긴 변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육각형내의 구역으로서 기본표면의 긴 변의 외곽경계선으로부터 바깥쪽 상부로 7분의 1의 경사도를 이루는 구역으로 하며, 이를 도시하면 별표 5의 제3구역과 같다.

나. 헬기예비작전기지 : 헬기전용작전기지의 지정범위와 같다.

다. 민간비행장 : 「항공법」 제2조제16호의 장애물 제한표면의 설정기준에 따른다.

[별표 2] 전술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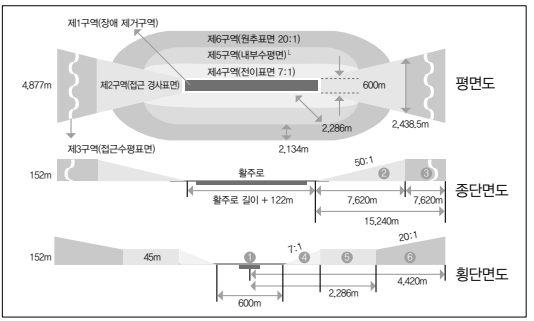

[별표 3] 지원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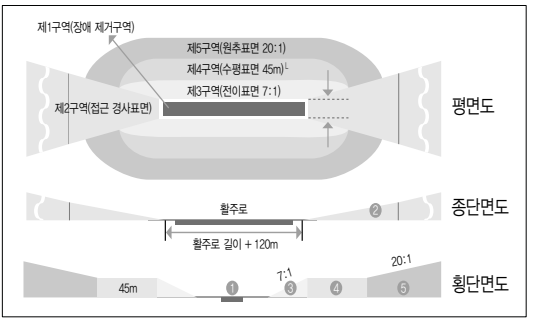

[별표 4] 헬기전용/예비항공 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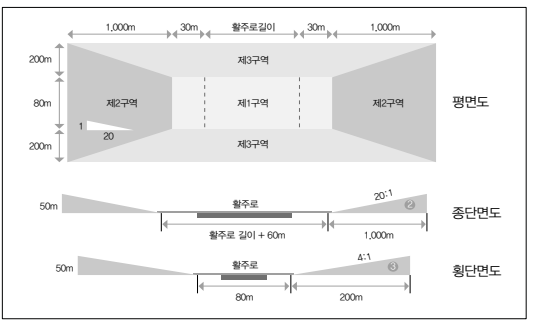

[별표 5] 비상활주로의 비행안전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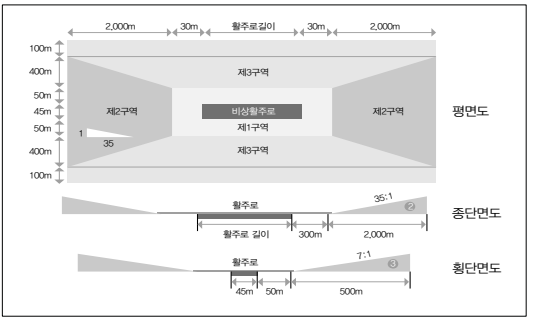

5.1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시행 2008. 9.22]
[대통령령 제21025호, 2008. 9.22, 타법폐지]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025호, 2008.9.2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해군기지법 시행령 및 군용항공기지법 시행령은 각각 폐지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시행 2008. 2.29]
[대통령령 제20675호, 2008. 2.29,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군사시설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사시설) 법 제2조제1호에서 "기타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이라 함은 군의 주요지휘시설 및 통신시설, 대공방호시설, 전쟁장비 및 물자의 연구·생산 또는 저장시설, 군용비행장 및 비상활주로, 군항 및 군용부두, 군용사격장 및 훈련장을 말한다.
제3조 (관할부대장) 법 제2조제4호에서 "관할부대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휘관을 말한다.
1. 육군에 있어서는 여단장급이상의 지휘관
2. 해군에 있어서는 전단장급이상의 지휘관. 다만, 해병에 있어서는 여단장급이상의 지휘관과 연평부대장으로 한다.
3. 공군에 있어서는 비행단장급이상의 지휘관. 다만, 방공포병사령부에 있어서는 여단장급이상의 지휘관으로 한다.

제4조 (관리부대장) 법 제2조제5호에서 "관리부대장"이라 함은 편제상 창장급 또는 단장급 이상의 지휘관을 말한다.
제5조 (군사시설보호구역등의 설정등) ① 합동참모의장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또는 민간인통제선(이하 "민통선"이라 한다)을 설정·변경 또는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와 관할부대장 또는 관리부대장(이하 "관할부대장등"이라 한다)을 명시하고, 보호구역 및 민통선을 지형도(지

번·지목 등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표시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의를 받거나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역 또는 민통선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이하 "국방부 보호구역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설정등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정된 내용이 표시된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역 또는 민통선의 설정등의 결과와 지형도를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4·14]

제6조 (보호구역의 설정범위) ① 법 제4조제4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1997·4·14>

1. 취락지역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역
2. 국민의 안보의식고취를 위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하는 안보관광지역
3. 통일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국가기관이 지정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 또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시설지역
4. 국가기간산업 또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대규모 개발이 계획된 지역
5. 기타 관할부대장의 건의에 의하여 군단장급 이상의 지휘관이 인정하는 지역

②법 제4조제4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1997.4.14, 2008.2.29>

1. 취락지역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역
2. 국토해양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는 지역
3. 기타 관할부대장등이 작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

③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외의 지역에서의 보호구역의 설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7·4·14>

1. 진지·장애물등과 같은 전투시설물이 있는 지역은 관측과 사계 및 개인화기의 유효사거리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전투시설물의 최외곽에 설치된 유자재시설물로부터 500미터 이내

2. 대공방호시설과 통신시설이 있는 지역은 장비운영과 시설보호에 지장이 없는 최소한의 범위
3. 군용비행장과 비상활주로 및 사격장이 있는 주변지역은 항공기 운용과 사격안전에 지장이 없는 최소한의 범위
4. 폭발물관련 시설이 있는 지역은 폭발물의 안전거리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5. 기타 군사시설이 있는 지역은 당해 시설의 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거리로서 울타리로부터 500미터 이내. 다만, 취락지역은 울타리로부터 300미터 이내로 한다.

제7조 (국방부 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개정 2003.8.16>) ① 국방부 보호구역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3.8.16>

② 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1997.4.14, 2003.8.16, 2008.2.29>

1. 통일부·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국토해양부 및 관련지방자치단체의 관계공무원 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2.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의 관계공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3.8.16>

④ 국방부 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3.8.16>

⑤ 국방부 보호구역심의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국방부의 군사시설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03.8.16>

제7조의2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 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이하 "관할부대등 보호구역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의 부지휘관 또는 참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관할부대장등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1.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의 참모 또는 직할부대장
2. 보호구역 관련부대의 장 또는 참모
3.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의 국유재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실무 관계관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관할부대 등 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관할부대등 보호구역심의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의 군사시설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⑥ 관할부대 등 보호구역심의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관계행정기관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들은 후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심의·의결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⑦ 관할부대 등 보호구역심의위원회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이 그 심의·의결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른 차상급 관할부대 등 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8.16]

제8조 (보호구역의 표지)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6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역의 표지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부대장등으로 하여금 보호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의 외곽경계선을 따라 별표의 표찰 또는 표석을 300미터마다 1개씩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민통선을 관보에 고시하고자 할 때에는 민통선의 설정범위를 행정좌표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 (보호구역 또는 군사시설에의 출입허가)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 또는 영농을 위하여 통제보호구역이나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부대주둔지를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관할부대장 등 또는 주둔지부대장에게 출입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3.4.4>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부대장등 또는 주둔지부대장은 출입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4.4>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 외에 특별한 사유로 통제보호구역이나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부대주둔지에 일일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 관할부대장등 또는 주둔지부대장에게 출입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관할부대장등 또는 주둔지부대장은 지체 없이 출입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2 (통제보호구역안의 출입허용지역) 법 제7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민통선이북지역에 설정되어 있는 통제보호구역중 제6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으로의 출입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지정하는 통행로 지역
2.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외의 지역 및 민통선이남지역중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

[본조신설 1997·4·14]

제9조의3 (통제보호구역안에서의 허용사항) 법 제8조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 시행하는 공공사업
2. 농기계 보관창고등 농림어업시설
3. 기존 주택의 증·개축
4. 섬의 해안양식장

[본조신설 1997·4·14]

제10조 (퇴거의 강제 등) 관할부대장등 또는 주둔지부대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거의 강제·장애물의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군사상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먼저 그 행위자에게 행위의 중지 또는 장애물의 제거 등을 명하여야 한다.

제11조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이 보호 구역안에서 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방부장관과, 기타 행정기관의 장은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절차 및 방법과 폭발물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에서의 협의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4.14, 2003.8.16>

②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협의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허가 기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허가 기타의 처분의 취소, 행위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6>

③ 대한민국에 주류하는 외국군의 군사시설에 관한 보호구역안에서의 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협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되, 관할부대장등 그 시설을 관리하는 외국군부대장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6>

④ 법 제10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7.4.14, 2003.8.16, 2006.8.4>

1. 기존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개축, 재축, 대수선
2.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어업·축산업 또는 기타 용도의 가설건축물로서 1가구당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인 것과 울타리의 설치. 다만, 전투진지 전방 500미터 이내 지역은 소각하거나 물리적으로 없애기 쉬운 시설에 한한다.
3. 입목의 간벌, 택벌, 피해목 벌채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및 산림훼손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경지정리, 배수개선, 수리시설 개보수 등 농업생산기반개량사업
6. 군사시설보호와 작전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관할부대장등이 인정하는 개인묘지의 설치

제12조 (보호구역 협의업무의 위탁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보호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1997.4.14, 2002.12.26>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안의 보호구역. 다만, 협의업무위탁조건을 정할 수 없는 특수통신시설이 있는 지역등은 제외한다.
2. 농림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농공단지 및 원예생산전문단지
3. 임야·하천부지 등을 개간하여 전·답 등으로 활용이 가능한 지역
4.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공유수면의 매립지
5. 기타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면서 지역사회발전 및 주민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

②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협의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한 허가, 기타의 처분을 위한 협의업무로 한다. <신설 1998·2·24>

1. 주택 기타 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
2. 조림 또는 임목의 벌채
3.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

③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지형적 여

건,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및 인접부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지역, 위탁대상이 되는 협의업무의 범위, 건축물등의 제한높이 및 표고기준점 등 위탁조건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이를 지형도 및 관계서류에 표시 또는 명기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1997·4·14>

④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신청에 의하되,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7.4.14, 1998.2.24, 2003.8.16>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업무를 위탁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내용이 명기된 지형도 및 관계서류 등을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범위 안에서 허가 기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분기마다 관할부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7·4·14, 1998·2·24>

⑥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은 이 영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기타 구조물의 높이 등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8·2·24>

제13조 (대공방어협조구역의 지정 등) ①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공방어협조구역(이하 "대공협조구역"이라 한다)은 관련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미리 협의한 후 국방부 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이를 지정한다. 이를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3.8.16>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공협조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그 구역을 표시한 도면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면을 송부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④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높이"라 함은 대공협조구역안의 대공방어진지에 배치된 대공화기의 사정거리안의 수평조준선 높이를 말한다.

[본조신설 1997·4·14]

부칙 <대통령령 제14329호, 1994.7.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447호, 1994.12.23>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건설부"를 "건설교통부"로 한다.

⑤ 내지 <205>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344호, 1997.4.14>

이 영은 1997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655호, 1998.2.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816호, 2002.12.2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⑪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한다.

⑫ 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952호, 2003.4.4> (읍면동기능전환에따른상훈법시행령등의일부개정령)

이 영은 200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085호, 2003.8.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639호, 2006.8.4>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4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및 산림훼손"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및 산림훼손"으로 한다.

⑨ 내지 <3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675호, 2008.2.29>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농림부·환경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국토해양부"로 한다.

⑪부터 <30>까지 생략

[시행 1973. 5. 2]
[대통령령 제6655호, 1973. 5. 2, 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군사시설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호구역의 설정) ①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규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구역을 지도상에 도시하고 관할부대장과 설정이유를 명시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상신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상신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이를 심사하여 보호구역의 설정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참모총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보호구역의 표지)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역을 설정한 때에는 별표의 내용을 게기한 표석·표목 또는 표찰(이하 "표찰등"이라 한다)을 보호구역의 외곽 경계선에 연하여 10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거리마다 1개씩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접적지역에 있어서는 국방부장관의 고시로써 이에 가름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표찰 등은 야간에도 이를 식별할 수 있도록 장치되어야 한다.

③ 관할부대장은 제1항의 표찰 등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호구역의 설정 사실만을 표시하는 표지를 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출입등의 제한) ① 법 제5조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행위의 내용과 기간을 정하여 관할부대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부대장은 지체 없이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부대장은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행위에 대하여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관할부대장은 전항의 허가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한 제한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사업 수행 시 또는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 법 제5조제2항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및 도지사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기타의 행정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관할부대장과 행하여야 한다.

제6조 (퇴거의 강제등) 관할부대장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거의 강제, 장애물의 제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군사상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그 위반자에게 행위의 중지 또는 장애물의 제거를 명한 다음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6655호, 1973.5.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5.2 군사시설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08. 9.22]
[국방부령 제654호, 2008. 9.22, 타법폐지]

군사시설보호법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654호, 2008.9.2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군사시설보호법 시행규칙, ···<생략>···은 각각 폐지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시행 2007. 4. 9]
[국방부령 제624호, 2007. 4. 9,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군사시설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사시설보호구역등의 설정 등) ① 관할부대장 또는 관리부대장(이하 "관할부대장 등"이라 한다)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또는 민간인통제선(이하 "민통선"이라 한다)의 설정·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합동참모의장에게 보호구역 또는 민통선의 설정 등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3.8.14>

1. 별지 제1호서식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군사시설일람표
2.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지형도(이하 "지형도"라 한다)
3. 관할부대장등의 소속·계급·성명을 기재한 보호구역 또는 민통선의 설정·변경 또는 해제에 대한 이유서
4.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
5.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서

②국방부장관은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역 또는 민통선을 설정·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군사시설보호구역(민간인통제선)의 설정(변경·해제)통보서에 지형도를 첨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4.28.]

제3조 (보호구역등의 심의)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가 보호구역 또는 민통선의 설정·변경 또는 해제를 심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4>

1. 보호구역 또는 민통선의 설정·변경 또는 해제의 목적에 따른 보호구역 및 민통선 범위의 타당성
2. 국민생활과 재산권의 규제정도
3. 지역개발을 위한 계획 기타 다른 계획과의 관련성

②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가 보호구역 또는 민통선의 설정·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군사시설보호구역(민간인통제선) 설정·변경 또는 해제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4>

제4조 (보호구역 또는 군사시설에의 출입허가 신청) ① 법 제7조 및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 또는 영농을 위하여 통제보호구역이나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부대주둔지의 출입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군사시설보호구역(군사시설)내출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7.4.28, 2004.12.10>

1. 삭제 <2007.4.9>
2. 영농의 경우 : 농지원부 1부
3. 기타의 경우 : 해당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법 제7조 및 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 또는 영농외의 사유로 통제보호구역이나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부대주둔지에 일일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군사시설보호구역(군사시설)내일일출입허가신청서에 출입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7.4.28, 2004.12.10, 2007.4.9>

1. 출입사유서 1부
2.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표초본(주민등록증사본을 포함한다) 1부

제5조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에게 협의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7.4.28, 2003.8.14>

1. 위치도(1:50,000 또는 1:25,000 지형도) 1부
2. 사업계획개요서 1부
3. 계획구역이 도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1부
4. 시설배치요도(평면) 1부(주택 기타 구조물에 한한다)
5. 시설단면요도(입면) 1부(주택 기타 구조물에 한한다)

②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협의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군작전에 미치는 영향과 그 해소대책에 관한 검토를 거쳐 동의 여부를 결정한 후 각각 다음의 기간내에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4.28>

1. 국방부장관 : 35일
2. 관할부대장등 : 10일(상급부대에 건의하여 조치할 사항이 있는 등 관할부대장등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25일)

③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하는 경우 군사적인 장애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수립·이행을 조건으로 동의할 수 있다. <신설 1997.4.28>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로 동의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군사적인 장애요소의 해소대책등에 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미리 합의한 후 허가 기타 처분을 하고, 허가 기타 처분에 의한 사업이나 행위등이 종료된 때에는 합의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7.4.28>

제6조 (협의기준)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폭발물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안에서의 허가 기타 처분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5, 2003.8.14>

1. 기존주택의 경우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이하로서, 지표면으로부터의 높이 9미터이하인 범위 안에서의 증축·개축 또는 이전(해당지역 안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

1의2.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 중 철도·도로·교량 및 하천에 관한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철거 후 3년 내에 행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9미터이하인 범위 안에서의 이축(주택의 철거당시 해당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하며, 폭발물관련 군사시설로부터 기존의 위치보다 멀리 이축하여야 한다)

2. 마을회관·복지회관·보건지소·농기구수리소등 공동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연면적 660제곱미터이하로서, 지표면으로부터의 높이 9미터이하인 범위 안에서의 신축·개축 또는 이전

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업 또는 수산업용 시설의 신축·개축 또는 이전

[전문개정 1997.4.28]

제7조 (보고) 관할부대장등은 보호구역 또는 민통선과 관련하여 중요한 위법사항이나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합동참모의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4.28]

부칙 <국방부령 제456호, 1995.3.13>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협의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규정은 이 규칙시행 후 최초로 협의 요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476호, 1997.4.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495호, 1999.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554호, 2003.8.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566호, 2004.12.10>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국방부 및병무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 및감독에관한규칙등중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624호, 2007.4.9>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하던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시행 1973.11.21]
[국방부령 제247호, 1973.11.21, 제정]

제1조 (보호구역의 설정) ① 각군 참모총장은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설정을 국방부장관에게 상신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 및 군사시설 일람표(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할 것)
2. 보호구역 및 군사시설을 도시한 지도(별표 1의 도시요령에 따라 작성할것)
3. 보호구역의 설정이유서(관할부대장의 소속, 계급, 성명을 명기할 것)
4. 보호구역 설정에 따르는 문제점과 그 대책에 관한 설명서

② 각군 참모총장은 보호구역의 설정을 상신함에 있어서는 보호하여야 할 군사시설의 용도와 장비의 성능 및 특성을 고려하여 그 구역이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내로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조 (보호구역의 해제) 각군 참모총장은 보호구역으로 설정된 지역내에 보호하여야 할 군사시설이 없게 되거나 그 보호가 필요없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명기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호구역의 해제를 상신하여야 한다.

제3조 (보호구역의 표지) ① 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찰등의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② 영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의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제4조 (보고) 보호구역의 관할부대장은 보호구역에 관한 중요한 위법사항이나 보호구역과 관련하여 야기될 문제점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국방부령 제247호, 1973.11.2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6. 접경지역지원법

[시행 2011.1.1]
[법률 제10220호, 2010. 3.3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남북의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지원하고,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며, 평화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1>

1. "접경지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이남(以南)의 시·군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민간인통제선으로부터 거리 및 지리적 여건·개발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군사분계선 남방 2킬로미터 지점을 잇는 선으로부터 민간인통제선 사이의 지역으로서 집단취락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과 해상의 북방한계선 이남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접경지역으로 본다.
2. "접경지역종합계획"이란 제4조에 따라 수립되고 확정된 계획으로서 접경지역의 다음 각 목에 관한 기본적인 중장기 계획을 말한다.

가. 종합적 이용과 주민 복지의 증진
나. 자연환경의 보전·관리
다. 통일 기반 조성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접경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토기본법」,「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21>

제4조(접경지역종합계획의 수립과 확정)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접경지역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접경지역종합계획수립지침(이하 "지침"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침을 해당 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관계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시·도지사는 지침에 따라 시·도 접경지역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시·도지사가 시·도 접경지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도 접경지역계획을 제출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접경지역종합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08.2.29>

④ 제3항의 접경지역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접경지역의 자연환경의 보전과 국가 안보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1. 접경지역종합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권역(圈域) 구분과 지구(地區) 지정에 관한 사항
3. 자연 생태 자원의 조사에 관한 사항
4. 자연환경의 보전·관리와 환경오염의 방지에 관한 사항
5. 평화 통일 기반 시설 또는 통일 지대(地帶)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7. 군사시설의 보전 및 보완 대책에 관한 사항
8. 도로·철도 등 교통 시설과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정비 및 확충에 관한 사항
9. 농어업·임업 등 산업 기초 시설의 확충·개선에 관한 사항
10. 전기·통신·가스 등 생활 기반 시설의 확충·개선에 관한 사항
11. 교육·의료·후생 등 문화 복지 시설 확충과 민군통합복지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
12. 주택·상하수도 등 주거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3. 풍수해 등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14. 문화재의 발굴과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광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투자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3항에 따라 수립된 접경지역종합계획은 제5조에 따른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확정된 접경지역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접경지역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5조(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①접경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2.4>

1. 접경지역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목표 및 지침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접경지역종합계획의 종합적 조정에 관한 사항

3. 접경지역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조정에 관한 사항
3의2. 접경지역 지원 사업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지원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청의 경우에는 차장을 말한다)과 관계 광역시·도의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민간 전문가로 한다. <개정 2008.2.29>
④ 위원회의 조직·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확정) ①관계 시·도지사는 제4조제5항에 따라 확정된 접경지역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08.2.29>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확정하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관계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과 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사업시행자)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정부투자기관
4. 제8조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

제8조(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자는 제외한다)는 시장 또는 군수(둘 이상의 시·군에 걸친 사업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사업승인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7조제4호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요와 투자 계획을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승인권자는 투자의 타당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는 사업의 시행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농림어민단체인 경우 그 사업의 시행을 우선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⑤ 사업승인권자는 제4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⑥ 사업승인권자는 사업의 시행승인을 하면 5일 이내에 승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에 관련된 사항의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야 한다)은 그 승인 내용이 관계 법령이나 접경지역종합계획에 위배되었다고 판단되면 10일 이내에 사업승인권자에게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사업 시행승인을 취소하거나 보완할 것을 요구받은 사업승인권자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업을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⑨ 사업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8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4.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시행할 수 없거나 뚜렷하게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⑩ 사업승인권자는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취소할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인·허가 등의 의제 등) ①사업시행자가 제8조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승인·해제·결정·신고수리 등(이하 “인·허가 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8.3, 2008.3.21, 2009.6.9>

1.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와 신고
2.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 승인
4.「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허가
5.「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인가
6.「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7.「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등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허가
8.「도로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토지형질변경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0.「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11.「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무연고(無緣故) 분묘개장의 허가. 다만, 같은 조에 따른 공고절차는 생략할 수 없다.
12.「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3.「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4.「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15.「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개설의 허가
16.「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관광농원의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17.「항만법」 제9조에 따른 항만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항만공사의 실시계획 승인
18.「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비관리청의 소하천(小河川)공사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19.「해운법」 제4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20.「어촌·어항법」 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
21.「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② 사업승인권자는 제8조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하는 경우 그 사업 개요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요청을 받은 관할부대장등을 포함한다)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③ 제2항에 따라 사전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 내용이 관계 법령에 맞지 아니하거나 공익을 뚜렷하게 해칠 만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에 따라야 한다.

제10조(공공시설의 귀속)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사업의 시행으로 종전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사업시행자인 경우 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시설의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無償)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귀속 또는 양도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의 재산 가치의 평가 기준이나 설치비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사업비의 조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7조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융자 또는 알선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접경지역종합계획에 따라 접경지역에서 회사를 설립하거나 공장을 신축·증축 또는 이전하는 자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접경지역 안에 있는 지방 중소기업이 업종 전환과 합리화로 존속하거나 기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사회간접자본 지원)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접경지역의 산업 단지·교통시설·전력 및 상수도 시설 등 기반 시설을 설치·유지 및 보수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도로법」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지방도로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1>

제14조(민자 유치 사업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접경지역에서 민자(民資) 유치(誘致)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사회복지 및 통일 교육 지원)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접경지역에서 양로원·장애인복지관·보육원·병원·청소년회관 등 사회복지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통일 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접경지역의 견학과 방문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자연환경 보전 대책의 지원) ①환경부장관은 남방 한계선 이남부터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과 접경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기초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자연환경 보전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초 조사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교육·문화·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접경지역에 각급 학교, 문예회관, 도서관, 박물관 등을 포함한 문화 시설, 관광·숙박·위락 시설 및 체육 시설(이하 "교육·문화·관광시설"이라 한다)이 적절히 설치되고 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접경지역에 교육·문화·관광시설을 설치하거나 접경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교육·문화·관광시설을 접경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에게는 우선적으로 인·허가 등을 할 수 있다.

제18조(농림 해양 수산업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접경지역 안에서의 농림 해양 수산업 생산 기반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지역 주민의 고용 및 지원) ①제7조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장 인근의 지역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0조(수로 보수 등의 지원) 국가는 접경지역에 있는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하천의 보수와 유지에 필요한 경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자료 제출과 출입·검사) ①사업승인권자는 필요하면 제7조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2조(청문) 사업승인권자는 제8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4.1]

부칙 <제8421호, 2007.5.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9조제1항제4호·제10호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9조제1항제4호·제10호 및 제20조를 적용한다.

제3조 (법률 제6185호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185호 접경지역지원법 시행 전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관하여 인·허가 등을 받거나 얻어 공사 또는 사업을 착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승인 없이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제4조 (접경지역종합계획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접경지역종합계획·접경지역종합계획수립지침 및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는 각각 이 법에 따른 접경지역종합계획·접경지역종합계획수립지침 및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로 본다.

제5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접경지역지원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616호,2007.8.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⑨ 및 ⑩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8733호,2007.12.2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접경지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이남(以南)의 시·군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민간인통제선으로부터 거리 및 지리적 여건·개발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군사분계선 남방 2킬로미터 지점을 잇는 선으로부터 민간인통제선 사이의 지역으로서 집단취락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과 해상의 북방한계선 이남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접경지역으로 본다.

제3조 단서 중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하고, 제9조제2항 중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 요청을 받은 관할 부대장"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요청을 받은 관할부대장등"으로 한다.

<19> 부터 <30>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18> 까지 생략

<219> 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6항, 제5조제1항·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22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976호,2008.3.21> (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3> 까지 생략

<64> 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8호 중 “제25조”를 “제24조”로,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제56조”를 “제67조”로 한다.
<65>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9573호,2009.4.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58호, 2009.6.9> (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3> 까지 생략

<34> 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농어촌정비법」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관광농원의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35>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10003호,2010.2.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20호, 2010.3.3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3> 까지 생략

<34> 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35>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시행 2010.12.1]
[법률 제10331호, 2010. 5.3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남북의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지원하고,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며, 평화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1>

1. "접경지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이남(以南)의 시·군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민간인통제선 으로부터 거리 및 지리적 여건·개발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군사분계선 남방 2킬로미터 지점을 잇는 선으로부터 민간인통제선 사이의 지역으로서 집단취락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과 해상의 북방한계선 이남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접경지역으로 본다.
2. "접경지역종합계획"이란 제4조에 따라 수립되고 확정된 계획으로서 접경지역의 다음 각 목에 관한 기본적인 중장기 계획을 말한다.

가. 종합적 이용과 주민 복지의 증진
나. 자연환경의 보전·관리
다. 통일 기반 조성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접경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21>
제4조(접경지역종합계획의 수립과 확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접경지역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접경지역종합계획수립지침(이하

"지침"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침을 해당 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관계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시·도지사는 지침에 따라 시·도 접경지역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시·도지사가 시·도 접경지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도 접경지역계획을 제출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접경지역종합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08.2.29>

④ 제3항의 접경지역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접경지역의 자연환경의 보전과 국가 안보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1. 접경지역종합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권역(圈域) 구분과 지구(地區) 지정에 관한 사항
3. 자연 생태 자원의 조사에 관한 사항
4. 자연환경의 보전·관리와 환경오염의 방지에 관한 사항
5. 평화 통일 기반 시설 또는 통일 지대(地帶)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7. 군사시설의 보전 및 보완 대책에 관한 사항
8. 도로·철도 등 교통 시설과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정비 및 확충에 관한 사항
9. 농어업·임업 등 산업 기초 시설의 확충·개선에 관한 사항
10. 전기·통신·가스 등 생활 기반 시설의 확충·개선에 관한 사항
11. 교육·의료·후생 등 문화 복지 시설 확충과 민군통합복지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
12. 주택·상하수도 등 주거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3. 풍수해 등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14. 문화재의 발굴과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광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투자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3항에 따라 수립된 접경지역종합계획은 제5조에 따른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확정된 접경지역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접경지역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5조(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접경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2.4>

1. 접경지역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목표 및 지침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접경지역종합계획의 종합적 조정에 관한 사항
3. 접경지역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조정에 관한 사항

3의2. 접경지역 지원 사업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지원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청의 경우에는 차장을 말한다)과 관계 광역시·도의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민간 전문가로 한다. <개정 2008.2.29>

④ 위원회의 조직·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확정) ① 관계 시·도지사는 제4조제5항에 따라 확정된 접경지역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08.2.29>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확정하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관계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과 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사업시행자)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정부투자기관
4. 제8조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

제8조 (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자는 제외한다)는 시장 또는 군수(둘 이상의 시·군에 걸친 사업의 경우에는 시·

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사업승인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7조제4호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요와 투자 계획을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승인권자는 투자의 타당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는 사업의 시행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농림어민단체인 경우 그 사업의 시행을 우선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⑤ 사업승인권자는 제4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⑥ 사업승인권자는 사업의 시행승인을 하면 5일 이내에 승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에 관련된 사항의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야 한다)은 그 승인 내용이 관계 법령이나 접경지역종합계획에 위배되었다고 판단되면 10일 이내에 사업승인권자에게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사업 시행승인을 취소하거나 보완할 것을 요구받은 사업승인권자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업을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⑨ 사업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8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4.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시행할 수 없거나 뚜렷하게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⑩ 사업승인권자는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취소할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인·허가등의 의제 등) ① 사업시행자가 제8조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승인·해제·결정·신고수리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8.3, 2008.3.21, 2009.6.9, 2010.5.31>

1.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와 신고
2.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 승인
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허가
5.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인가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7.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등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허가
8. 「도로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토지형질변경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0.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1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무연고(無緣故) 분묘개장의 허가. 다만, 같은 조에 따른 공고절차는 생략할 수 없다.
12.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3.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15.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개설의 허가
1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관광농원의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17. 「항만법」 제9조에 따른 항만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항만공사의 실시계획 승인
18.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비관리청의 소하천(小河川)공사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19. 「해운법」 제4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20. 「어촌·어항법」 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
2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② 사업승인권자는 제8조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하는 경우 그 사업 개요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요청을 받은 관할부대장등을 포함한다)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③ 제2항에 따라 사전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 내용이 관계 법령에 맞지 아니하거나 공익을 뚜렷하게 해칠 만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에 따라야 한다.

제10조(공공시설의 귀속)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사업의 시행으로 종전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사업시행자인 경우 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시설의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無償)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귀속 또는 양도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의 재산 가치의 평가 기준이나 설치비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사업비의 조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7조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융자 또는 알선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접경지역종합계획에 따라 접경지역에서 회사를 설립하거나 공장을 신축·증축 또는 이전하는 자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접경지역 안에 있는 지방 중소기업이 업종 전환과 합리화로 존속하거나 기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사회간접자본 지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접경지역의 산업 단지·교통시설·전력 및 상수도 시설 등 기반 시설을 설치·유지 및 보수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도로법」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지방도로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1>

제14조(민자 유치 사업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접경지역에서 민자(民資) 유치(誘致)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사회복지 및 통일 교육 지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접경지역에서 양로원·장애인복지관·보육원·병원·청소년회관 등 사회복지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통일 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접경지역의 견학과 방문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자연환경 보전 대책의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남방 한계선 이남부터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과 접경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기초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자연환경 보전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초 조사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교육·문화·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접경지역에 각급 학교, 문예회관, 도서관, 박물관 등을 포함한 문화 시설, 관광·숙박·위락 시설 및 체육 시설(이하 "교육·문화·관광시설"이라 한다)이 적절히 설치되고 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접경지역에 교육·문화·관광시설을 설치하거나 접경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교육·문화·관광시설을 접경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에게는 우선적으로 인·허가 등을 할 수 있다.

제18조(농림 해양 수산업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접경지역 안에서의 농림 해양 수산업 생산 기반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지역 주민의 고용 및 지원) ① 제7조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장 인근의 지역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0조(수로 보수 등의 지원) 국가는 접경지역에 있는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하천의 보수와 유지에 필요한 경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자료 제출과 출입·검사) ① 사업승인권자는 필요하면 제7조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2조(청문) 사업승인권자는 제8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4.1]

부칙 <법률 제8421호, 2007.5.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9조제1항제4호·제10호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9조제1항제4호·제10호 및 제20조를 적용한다.

제3조 (법률 제6185호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185호 접경지역지원법 시행 전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관하여 인·허가 등을 받거나 얻어 공사 또는 사업을 착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승인 없이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제4조 (접경지역종합계획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접경지역종합계획·접경지역종합계획수립지침 및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는 각각 이 법에 따른 접경지역종합계획·접경지역종합계획수립지침 및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로 본다.

제5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접경지역지원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8616호, 2007.8.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⑨ 및 ⑩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8733호, 2007.12.2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접경지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이남(以南)의 시·군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민간인통제선으로부터 거리 및 지리적 여건·개발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군사분계선 남방 2킬로미터 지점을 잇는 선으로부터 민간인통제선 사이의 지역으로서 집단취락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과 해상의 북방한계선 이남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접경지역으로 본다.

제3조 단서 중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하고, 제9조제2항 중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 요청을 받은 관할 부대장”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요청을 받은 관할부대장등”으로 한다.

<19>부터 <30>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8>까지 생략

<219> 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6항, 제5조제1항·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220>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8976호, 2008.3.21.> (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8호 중 "제25조"를 "제24조"로,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제56조"를 "제67조"로 한다.

<65>부터 <99>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9573호, 2009.4.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9758호, 2009.6.9.> (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농어촌정비법」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관광농원의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35>부터 <53>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003호, 2010.2.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0220호, 2010.3.3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35>부터 <4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331호, 2010.5.31.> (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65>부터 <89>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시행 2000. 7.22]
[법률 제6185호, 2000. 1.21, 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남북의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발전 및 주민복지향상을 지

원하고,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며,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접경지역"이라 함은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인통제선(이하 "민통선"이라 한다) 이남의 시·군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민통선으로부터 거리 및 지리적 여건·개발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군사분계선 남방 2킬로미터 지점을 잇는 선으로부터 민통선 사이의 지역으로서 집단취락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과 해상의 북방한계선 이남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은 접경지역으로 본다.
2. "접경지역종합계획"이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확정된 계획으로서 접경지역의 종합적 이용과 주민복지의 증진, 자연환경의 보전·관리 및 통일기반조성에 관한 기본적인 중장기계획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접경지역지원에 관한 사항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토건설종합계획법·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접경지역종합계획의 수립·확정) ①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접경지역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접경지역종합계획수립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침을 해당 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관계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시·도지사는 지침에 따라 시·도접경지역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관계 시·도지사가 시·도접경지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이해관계 있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접경지역계획을 제출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접경지역의 자연환경의 보전과 국가안보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종합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권역구분 및 지구지정에 관한 사항
3. 자연생태자원의 조사에 관한 사항
4. 자연환경의 보전·관리 및 환경오염의 방지에 관한 사항

5. 평화통일기반시설 또는 통일지대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7. 군사시설의 보전 및 보완대책에 관한 사항
8.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 및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정비 및 확충에 관한 사항
9. 농어업·임업 등 산업기초시설의 확충·개선에 관한 사항
10. 전기·통신·가스 등 생활기반시설의 확충·개선에 관한 사항
11. 교육·의료·후생 등 문화복지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12. 주택·상하수도 등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13. 풍수해 등 재해방지에 관한 사항
14. 문화재의 발굴과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광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16. 기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계획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종합계획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확정된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⑥ 행정자치부장관은 종합계획 수립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①접경지역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목표 및 지침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종합적 조정에 관한 사항
3. 접경지역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시·도지사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로 한다.
④ 위원회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확정) ①관계 시·도지사는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계 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관할 시장·군수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사업계획의 주요내용과 계획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사업의 시행자)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정부투자기관
4.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자

제8조 (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제7조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를 제외한다)는 시장 또는 군수(2 이상의 시·군에 걸친 사업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사업승인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가 승인을 얻은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요 및 투자계획을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승인권자는 투자의 타당성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는 사업의 시행승인(변경승인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같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농림어민단체인 경우 우선적으로 그 사업의 시행을 승인할 수 있다.

⑤ 사업승인권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시행승인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 사업승인권자는 사업의 시행승인을 한 경우 5일 이내에 그 승인내용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에 관련된 사항의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야 한다)은 그 승인내용이 관계 법령 또는 종합계획에 위배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사업승인권자로 하여금 그 승인의 취소 또는 보완을 하게 할 수 있다.

⑧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승인의 취소 또는 보완의 요구를 받은 사업승인권자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그 사업의 보완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⑨ 사업승인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은 경우
4.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⑩ 사업승인권자는 제7항 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시행승인을 취소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인·허가 등의 의제 등) ①사업시행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승인·해제·결정·신고수리 등(이하 "인·허가 등"이라 한다)을 얻거나 받은 것으로 본다.

1.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안에서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와 신고
2.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및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신고
3.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 승인
4.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허가
5.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동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및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 인가
6.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7. 관광진흥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등의 지정,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사업의 시행허가
8.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9.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 허가,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10.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 및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11.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연고 분묘개장의 허가. 다만, 동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절차는 생략할 수 없다.
12.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소유자의 시행인가 및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등의 시행인가
13.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4.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허가
15.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16. 농어촌정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의 승인,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휴양지개발사업의 승인 및 동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휴양지사업자의 지정
17. 항만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10조의 항만공사의 실시계획 승인
18.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의 소하천공사 시행허가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점용허가
19. 해운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20. 어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사업의 허가
21.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② 사업승인권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시행승인을 함에 있어 그 사업개요에 제1항 각호의 1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요청을 받은 관할 부대장을 포함한다)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협의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내용이 관계 법령에 부적합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공공시설의 귀속)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사업의 시행으로 종전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사업시행자인 경우 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공공시설의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 또는 양도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의 재산가치의 평가기준이나 설치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사업비의 조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융자 또는 알선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의한 보조율에 불구하고 이를 인상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기업 등에 대한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에 따라 접경지역에서 회사를 설립하거나 공장을 신축·증축 또는 이전하는 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 기타 조세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접경지역 안에 있는 지방중소기업이 업종전환 및 합리화로 존속하거나 기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사회간접자본 지원)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접경지역의 산업단지·교통시설·전력 및 상수도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에 있어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도로법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접경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지방도로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민자유치사업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접경지역에서 민자유치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 (사회복지 및 통일교육 지원)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접경지역에서 양로원·장애인복지관·보육원·병원·청소년회관 등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우선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접경지역의 견학 및 방문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자연환경보전대책의 지원) ①환경부장관은 남방한계선 이남으로부터 민통선이북 지역과 접경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하여 자연환경보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를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교육·문화·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접경지역에 각급 학교, 문예회관·도서관·박물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 관광·숙박·위락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교육·문화·관광시설"이라 한다)이 적절히 설치·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접경지역에 교육·문화·관광시설을 설치하거나, 접경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교육·문화·관광시설을 접경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인·허가 등을 할 수 있다.

제18조 (농림해양수산업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접경지역내에서의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지역주민의 고용 및 지원) ①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 인근의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0조 (수로보수 등의 지원) 국가는 접경지역의 지방1급하천 및 지방2급하천에 대한 수로의 보수와 유지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①사업승인권자는 필요한 경우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2조 (청문) 사업승인권자는 제8조제7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 (과태료) ①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시장·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시장·군수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법률 제6185호, 2000.1.21>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기타 시설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관하여 인·허가 등을 받거나 얻어 공사 또는 사업을 착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승인 없이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6.1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

[시행 2010. 3.19]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15,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접경지역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접경지역의 범위) ① 「접경지역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별표에서 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08.9.22, 2008.11.11, 2009.12.15>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이하 "민통선"이라 한다) 이남으로부터 25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시·군에 속한 읍·면·동 행정구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지표 중 셋 이상이 전국의 평균지표보다 낮은 지역. 다만, 주변지역의 여건과 비교하여 지역특성·개발정도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가. 인구증감률(최근 5년간)
나. 도로포장률
다. 상수도보급률
라. 제조업종사자 비율
마. 군사시설보호구역 점유비율

2. 군사분계선 남방 2킬로미터 지점을 잇는 선과 민통선 사이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사업지구 안의 농업생산지역
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사업지구 안의 집단 취락지역
다. 법 제4조제4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남북한 교류·협력사업 등 관련 사업 추진지역

3. 해상의 북방한계선 이남 지역으로서 백령도·대청도·소청도·대연평도·소연평도와 그 주변 도서(島嶼). 다만, 무인도서는 제외한다.

② 접경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관계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접경지역의 범위 설정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접경지역의 범위를 변경하려면 법 제1조의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조(접경지역종합계획의 수립)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한 접경지역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수립지침을 통보받은 관계 시·도지사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지침에 따라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도 접경지역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이 이미 수립된 경우에는 이를 시·도계획에 반영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시·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4조제4항에 규정된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2. 사업개요(사업규모·시행기간·사업효과 등) 및 투자계획
3. 사업으로 훼손되는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복원·복구계획
4. 그 밖의 참고사항

③ 시·도지사가 시·도계획,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면 환경 보전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시·도지사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그 내용을 검토·반영한 후 종합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올려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소관 구분에 따라 그 각 호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도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분담하여 검토하게 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사전 협의를 주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법 제4조제4항제2호·제8호 및 제12호에 관한 사항 : 국토해양부장관
2. 법 제4조제4항제5호 및 제6호에 관한 사항 : 통일부장관
3. 법 제4조제4항 중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 환경부장관
4. 법 제4조제4항제7호에 관한 사항 : 국방부장관
5. 법 제4조제4항제14호 및 제15호에 관한 사항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6. 법 제4조제4항제10호에 관한 사항 : 지식경제부장관
7. 법 제4조제4항 각 호 중 소관 부처가 지정되지 아니한 사항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⑤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협의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서를 보내야 하며, 의견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을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 제5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일괄 협의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⑦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사전 협의의 경우에는 제5항과 제6항을 준용한다.

⑧ 제4항에 따른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사업 상호간의 유기적 관련성
2. 사업별 우선순위 및 시행순서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내용(협의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 및 이유와 사전 협의 주관기관의 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⑨ 법 제4조제4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연도별 투자계획, 광역시설계획, 민자유치계획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⑩ 법 제4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변경된 종합계획상의 사업과 관련된 면적 또는 사업비의 규모가 당초 계획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사항
2. 사업의 기본목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제4조(권역 구분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제2호에 따라 구분되거나 지정된 권역이나 지구의 용도에 맞게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권역 구분 및 지구 지정과 관련된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종합계획의 수립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주민의 의견 청취) ① 관계 시·도지사는 법 제4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면 관할 시장·군수에게 시·도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공고하게 하여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시·도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에 관계 시장·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는 제1항의 열람 기간이 끝나면 제출된 의견과 그에 대한 검토의견을 지체 없이 관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계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견을 시·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으려면 해당

지역의 개발방향과 이를 위하여 필요한 개발사업 등에 관한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6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통일부차관·국방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문화체육관광부차관·농수산식품부차관·지식경제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환경부차관·국토해양부차관·농촌진흥청차장·산림청차장 및 관계 광역시·도의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해당 분야에 관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를 위촉직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사항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⑦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간사장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장 및 간사 1명씩을 둔다.

② 간사장과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8.2.29>

제8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연도별 사업계획) ① 관계 시·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마다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전년도 10월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연도별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사업의 우선순위
2. 사업의 기본목표와 개요
3. 전년도 사업시행 실적 및 결과 분석

4. 사업별 자금조달계획
5. 사업비 명세
6. 사업시행 기간
7. 사업의 효과
8. 접경지역을 관할하는 해당 시·군의 재정 현황
9.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훼손되는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복원·복구계획

③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검토한 후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도별 사업계획은 늦어도 전년도 11월 말일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협의에 관하여는 제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관계 시·도지사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사업계획을 지체 없이 관련 시장·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⑥ 관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사업계획을 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관계 시·도지사는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의 내용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전년도 10월 말일까지 사업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전년도 11월 말일까지 그 사업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1조(사업의 시행승인)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개요 및 투자계획을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필요성
3. 사업의 내용과 규모
4. 예상 사업비의 규모 및 재원조달 방법
5. 사업시행 기간
6. 사업장소(위치도를 포함한다)
7. 필요한 토지의 확보방안
8. 예상고용효과 및 그 밖에 사업으로 인한 효과
9. 관계 도면

②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발사업의 명칭
2. 개발사업의 목적
3. 사업시행 기간
4. 시설의 위치 및 규모
5. 투자규모 및 재원조달 방법
6. 사업시행 방법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사항이 포함된 변경승인신청서를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환경오염의 방지대책
가. 개발대상지 및 인근지역의 자연환경 훼손 및 복원·복구계획의 적정성
나.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훼손되는 자연환경의 복원·복구 및 오·폐수처리시설계획의 적정성

2. 투자능력의 적정성
가.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의 타당성
나. 대상지역의 토지소유 현황 및 개발·이용권의 확보 가능성

3. 투자재원의 확보
가. 총 투자비 중 자기자본의 비율 및 조달계획의 적정성
나. 자기자본과 유입자본의 비율 및 부채비율의 적정성

4. 그 밖의 사항
가.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에 관한 사항의 적정성
나. 인근지역 주민 고용비율 및 관련 산업진흥 기여도

⑤ 사업승인권자는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라 사업의 승인신청 또는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⑥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고시와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공고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지방공고·일간신문 또는 컴퓨터통신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⑦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승인권자는 법 제8조제8항에 따라 사업의 보완을 명하려는 때에는 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보완방법에 관한 의견을 들은 후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의 요구)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제7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내용 중 그 소관 사업에 관한 예산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관이 아닌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보조하여야 할 예산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관계 시·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 중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3조(공공시설의 귀속)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재산 가치의 평가 기준 또는 설치비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63조, 제64조, 제67조, 제68조,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71조, 제74조제1항·제4항,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7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82조에 따른 평가 기준과 보상 원칙 등의 관계 규정을 적용하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제14조(국고보조율) 법 제11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보조율(이하 이 조에서 "지원보조율"이라 한다)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에 따른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로 하되,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이 100분의 80을 초과하면 100분 80을 지원보조율로 한다. 다만, 기준보조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준보조율을 지원보조율로 한다.

제15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9.11.20.>

1. 업종 전환 및 합리화의 경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 전환과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중소기업의 자동화, 같은 법 제2조제3호의 중소기업의 정보화 및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협동화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자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만 총 투자비의 100분의 1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는 지원
2. 고용 유지의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관할 지청장의 승인을 받은 고용조정계획상 감원대상인 근로자 평균임금총액의 100분의 1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는 지원

제16조(농림 해양 수산업의 지원) 법 제18조에 따른 농림 해양 수산업의 생산 기반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은 사업계획에서 확정된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자금의 융자를 알선하거나 관련 특별회계 또는 기금에서 대부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17조(지역주민의 고용 및 지원)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의 승인을 받은 자(이

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시·군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려면 분야별 채용계획서와 특수기술자 및 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고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 착수 전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고용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고용 추천 의뢰를 받으면 지역주민이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고용 추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관계 공무원 출입증표)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출입검사원증과 같다.

제19조(과태료) ① 삭제 <2008.11.11>

② 삭제 <2008.11.11>

③ 삭제 <2008.11.11>

④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 과태료 부과 고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 과태료납부 독촉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11.11>

⑤ 시장·군수는 과태료처분을 하면 그 과태료의 부과 및 수납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304호, 2007.10.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2.29>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접경지역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제5항·제6항, 제4조제1항, 제5조제5항, 제10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제7항 및 제1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차관·교육인적자원부차관·통일부차관·국방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문화관광부차관·농림부차관·산업자원부차관·정보통신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환경부차관·건설교통부차관·해양수산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농촌진흥청차장·산림청차장”을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통일부차관·국방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문화체육관광부차관·농수산식품부차관·지식경제부차관·보건복지가족부차관·환경부차관·국토해양부차관·농촌진흥청차장·산림청차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8>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025호, 2008.9.2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3호”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로 한다.

<21>부터 <26>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109호, 2008.11.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835호, 2009.11.2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47>부터 <6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887호, 2009.12.15>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가목 중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

<28>부터 <38>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3.15>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5>까지 생략

<146>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147>부터 <187>까지 생략

[별표] 접경지역의범위[제2조제1항관련]

접경지역의 범위(제2조제1항 관련)

구분	시·군별	행정구역(읍·면·동)
합계	15 시·군	98 읍·면·동(18읍·73면·7동)
인천광역시 (17)	강화군 (1읍·12면)	강화읍·교동면·삼산면·서도면·송해면·양사면·하점면·내가면·선원면·불은면·길상면·양도면·화도면
	옹진군(4면)	대청면·백령면·연평면·북도면
경기도 (46)	동두천시(4동)	불현동·소요동·보산동·상패동
	고양시(3동)	송산동·고봉동·송포동
	파주시 (4읍·9면)	문산읍·파주읍·법원읍·교하읍·적성면·탄현면·광탄면·파평면·월롱면·군내면·장단면·진동면·진서면
	김포시(1읍4면)	통진읍·월곶면·하성면·대곶면·양촌면
	양주시(1읍4면)	백석읍·남면·은현면·광적면·장흥면
	연천군(2읍·8면)	연천읍·전곡읍·군남면·미산면·청산면·중면·장남면·신서면·백학면·왕징면
	포천군(6면)	관인면·창수면·영북면·영중면·신북면·이동면
강원도 (35)	춘천시(2면)	사북면·북산면
	철원군(4읍·7면)	철원읍·김화읍·동송읍·갈말읍·서면·근남면·근북면·근동면·원동면·원남면·임남면
	화천군(1읍·4면)	화천읍·사내면·하남면·간동면·상서면
	양구군(1읍·4면)	양구읍·동면·방상면·해안면·남면
	인제군(1읍·5면)	인제읍·서화면·남면·북면·기린면·상남면
	고성군(2읍·4면)	간성읍·거진읍·현내면·토성면·죽왕면·수동면

주 : 군사분계선 남방 2킬로미터 지점을 잇는 선과 민통선 사이의 지역에 해당하는 읍·면·동의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지역으로 한정한다.

[서식 1] 출입검사원증

[서식 2]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

[서식 3] 과태료 부과 고지서·납부서·영수확인 통지서·영수증

[서식 4] 과태료납부독촉장

[서식 5] 과태료수납부

7. 자연환경보전법

[시행 2011.1.28]
[법률 제9982호, 2010. 1.27,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10.4>

1.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제외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자연환경보전"이라 함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존·보호 또는 복원하고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연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이라 함은 현재와 장래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자연생태"라 함은 자연의 상태에서 이루어진 지리적 또는 지질적 환경과 그 조건 아래에서 생물이 생활하고 있는 일체의 현상을 말한다.
5. "생태계"라 함은 일정한 지역의 생물공동체와 이를 유지하고 있는 무기적(無機的) 환경이 결합된 물질계 또는 기능계를 말한다.
6. "소(小)생태계"라 함은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야생동·식물의 서식지간의 이동가능성 등 생태계의 연속성을 높이거나 특정한 생물종의 서식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생물서식공간을 말한다.
7. "생물다양성"이라 함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해양생태계를 제외한다)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8. "생태축"이라 함은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생태계 기능의 연속성을 위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 또는 생태적 기능의 유지가 필요한 지역을 연결하는 생태적서식공간을 말한다.
9. "생태통로"라 함은 도로·댐·수중보(水中洑)·하구언(河口堰) 등으로 인하여 야생동·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야생동·식물의 이동 등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식생 등의 생태적 공간을 말한다.

10. “자연경관”이라 함은 자연환경적 측면에서 시각적·심미적인 가치를 가지는 지역·지형 및 이에 부속된 자연요소 또는 사물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자연의 경치를 말한다.
11. “대체자연”이라 함은 기존의 자연환경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12. “생태·경관보전지역”이라 함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으로서 제12조 및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13. “자연유보지역”이라 함은 사람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생태계의 훼손이 방지되고 있는 지역중 군사상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외에는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무인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과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부터 2년간의 비무장지대를 말한다.
14. “생태·자연도”라 함은 산·하천·내륙습지·호소(湖沼)·농지·도시 등에 대하여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하여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지도를 말한다.
15. “자연자산”이라 함은 인간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유형·무형의 가치를 가진 자연상태의 생물과 비생물적인 것의 총체를 말한다.
16. “생물자원”이라 함은 사람을 위하여 가치가 있거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용도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또는 생물의 구성요소를 말한다.
17. “생태마을”이라 함은 생태적 기능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이를 지속가능하게 보전·이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마을로서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마을을 말한다.

제3조(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되고 현재와 장래의 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하게 이용되어야 한다.
2. 자연환경보전은 국토의 이용과 조화·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3. 자연생태와 자연경관은 인간 활동과 자연의 기능 및 생태적 순환이 촉진되도록 보전·관리되어야 한다.
4. 모든 국민이 자연환경보전에 참여하고 자연환경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증진되어야 한다.
5.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는 때에는 생태적 균형이 파괴되거나 그 가치가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생태와 자연경관이 파괴·훼손되거나 침해되는 때에는 최대한 복원·복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자연환경보전에 따르는 부담은 공평하게 분담되어야 하며, 자연환경으로부터 얻어지는 혜택은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이 우선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자연환경보전과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은 증진되어야 한다.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국토의 개발 및 이용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방지 및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대책의 수립·시행
2. 자연생태·자연경관 등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토지의 이용,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의 수립·시행
3. 생태통로의 설치 등 생태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
4. 자연환경 훼손지에 대한 복원·복구 대책의 수립·시행
5. 생태복원기술의 개발, 생태복원전문기관의 육성 등 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
6. 민간단체·사업자·국민 등이 자연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시책의 추진 및 여건의 조성
7. 자연환경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과학기술의 진흥
8.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자연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식의 증진
9. 자연환경보전 및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

② 사업자는 사업 활동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연생태·자연경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2. 사업 활동으로부터 비롯되는 자연환경훼손에 대하여 스스로 복원·복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연환경보전대책 등에 참여하고 협력할 것

제5조(자연보호운동) 정부는 모든 국민이 자연보호운동에 참여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등을 지원하고 지역별로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보호운동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①환경부장관은 제1조의 목적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중앙환경정책위원회"라 한다)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본방침(이하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②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10.4>

1.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관리,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2. 중요하게 보전하여야 할 생태계의 선정, 멸종위기에 처하여 있거나 생태적으로 중요한 생물종 및 생물자원의 보호
3. 자연환경 훼손지의 복원·복구
4.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관리 및 해당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5. 산·하천·내륙습지·농지·섬 등에 있어서 생태적 건전성의 향상 및 생태통로·소생태계·대체자연의 조성 등을 통한 생물다양성의 보전
6. 자연환경에 관한 국민교육과 민간 활동의 활성화
7.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
8.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따른 추진방침 또는 실천계획(시·도지사의 경우 실천계획에 한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주요시책의 협의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연환경보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등"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지침을 작성하여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대상이 되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의 종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①환경부장관은 전국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은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0.2.4>

③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과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통보하는 추진방침 또는 실천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확정된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2.4>

제9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내용)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기본방향 및 보전목표설정에 관한 사항
3.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할 주요 자연보전시책에 관한 사항
5. 자연경관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생태축의 구축·추진에 관한 사항
7. 생태통로 설치, 훼손지 복원 등 생태계 복원을 위한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8.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종합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9.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0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 ①환경부장관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내용을 소관업무와 관련된 정책 및 계획에 반영하는 등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성과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자연환경보전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 등) ①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보급 등을 위하여 생태·자연도, 생물종(生物種)정보 등을 전산화 한 자연환경종합지리정보시스템(이하 "자연환경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정보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 및 전문기관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관리 등

제12조(생태·경관보전지역) ①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자연생태·자연경관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자연 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역
2.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3.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생태계의 표본지역
4. 그 밖에 하천·산간계곡 등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② 환경부장관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한 보전·관리를 위하여 생태적 특성, 자연경관 및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관리할 수 있다.

1.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이하 “핵심구역“이라 한다) :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
2. 생태·경관완충보전구역(이하 “완충구역”이라 한다) : 핵심구역의 연접지역으로서 핵심구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생태·경관전이(轉移)보전구역(이하 “전이구역”이라 한다) : 핵심구역 또는 완충구역에 둘러싸인 취락지역으로서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③ 환경부장관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이 군사목적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역을 해제·변경할 수 있다.

제13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변경절차) ①환경부장관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지정계획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형도를 첨부하여 당해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2.4.>

1. 지정사유 및 목적
2. 지정면적 및 범위
3. 자연생태·자연경관의 현황 및 특징
4. 토지이용현황
5. 핵심구역·완충구역 및 전이구역의 구분개요 및 해당 구역별 관리방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청취 또는 협의의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 환경부장관은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자연생태·자연경관과 생물다양성의 보전·관리
2. 생태·경관보전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이해관계인의 이익보호
3. 자연자산의 관리와 생태계의 보전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사항
4. 그 밖에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5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누구든지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가 포함된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핵심구역 안에서 야생 동·식물을 포획·채취·이식(移植)·훼손하거나 고사(枯死)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그물·함정 등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주입(注入)하는 행위
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의 신축·증축(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3. 하천·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4. 토석의 채취

5.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8.4, 2009.6.9>

1.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생활향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환경부장관이 당해 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시행하는 경우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보호와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나무를 베어내거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7. 다른 법률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8. 환경부장관이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및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완충구역 안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09.6.9>

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대지(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이전의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한다)인 토지에서 주거·생계 등을 위한 건축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등의 설치
2. 생태탐방·생태학습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경영계획과 산림보호 및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산림사업
4. 하천유량 및 지하수 관측시설, 배수로의 설치 또는 이와 유사한 농·임·수산업에 부수되는 건축물 등의 설치

5.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묘지의 설치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이구역 안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제3항 각호의 행위
2. 전이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생활향상 등을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등의 설치
3.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방문하는 사람을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음식·숙박·판매시설의 설치
4. 도로, 상·하수도 시설 등 지역주민 및 탐방객의 생활편의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 및 생활편의시설의 설치

⑤ 환경부장관은 취약한 자연생태·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 사업을 제한하거나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농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생태·경관 보전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버리는 행위
2. 환경부령이 정하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 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핵심구역 및 완충구역에 한한다)
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판 그 밖의 표지물을 오손 또는 훼손하거나 이전하는 행위
4. 그 밖에 생태·경관보전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서 풀·나무의 채취 및 벌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제17조(중지명령 등) 환경부장관은 생태·경관 보전지역 안에서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체자연의 조성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8조(자연생태·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한 토지 등의 확보) ①환경부장관은 생태·경관보전

지역, 생태적 가치가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소재하는 국유의 토지·건축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이 군사목적 또는 문화재의 보호목적 등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문화재청장 등 당해 토지 등의 관리권을 보유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유재산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관리전환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의 규정과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 제4항에의한 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30>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전환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을 선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문화재청장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토지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제19조(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 등의 매수) ①환경부장관은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자연유보지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 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제20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주민지원) ①환경부장관은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수질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인접지역"이라 한다)에서 그 지역의 주민이 주택을 증축하는 등의 경우 「하수도법」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9.27>

② 환경부장관은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인접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오수 및 폐수의 처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조치 및 환경 친화적 농·임·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의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우선이용 등) ①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주민이 당해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은 그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자연유보지역) ①환경부장관은 자연유보지역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생태계의 보전과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 또는 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자연유보지역의 행위제한 및 중지명령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제2항·제5항,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비무장지대 안에서 남·북한간의 합의에 의하여 실시하는 평화적 이용사업과 통일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하는 통일정책 관련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보전) ①시·도지사는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당해 지역을 대표하는 자연생태·자연경관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기준·구역구분·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절차 등) ①시·도지사는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정계획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형도를 첨부하여 당해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환경정책위원회(이하 "지방환경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도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지방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청취 또는 협의의 요청을 받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당해 지역의 위치·면적·지정연월일 그 밖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5조(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 시·도지사는 제14조의 규정에 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조례에 따라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6조(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행위제한 등) 시·도지사는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조례에 따라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7조(자연경관의 보전)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관적가치가 높은 해안선 등 주요 경관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視界)가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자연경관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28조(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등) ①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 등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개발사업 등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개발 사업등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을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또는 환경영향평가협의 내용에 포함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 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에서의 개발 사업등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나.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습지보호지역
다. 생태·경관보전지역

2. 제1호외의 개발 사업등으로서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 사업등

②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 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당해 개발 사업등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은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지방 환경관서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2.4>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호의 개발 사업등으로서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및 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사업이 아닌 개발 사업등과 그 밖에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개발 사업등에 대하여 인·허가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연경관에 관한 검토기준을 따라야 한다. 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지방 환경관서의 장이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요청받는 경우 이에 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검토·심의를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소속하에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생물다양성의 보전

제30조(자연환경조사) ①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10년마다 전국의 자연환경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생태·자연도에서 1등급 권역으로 분류된 지역과 자연 상태의 변화를 특별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구역의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계획 및 조사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내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정밀조사와 생태계의 변화관찰 등) ①환경부장관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새롭게 파악된 생태계로서 특별히 조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생태계에 대한 정밀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한 지역 중에서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내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구역에 대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관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관찰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자연환경조사원) ①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0조의 자연환경조사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정밀·보완조사와 그 밖의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기간 중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원의 자격·위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3조(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①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0조의 자연환경조사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정밀·보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조사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그 토지의 나무·흙·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출입할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④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지 못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4조(생태·자연도의 작성·활용) ①환경부장관은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전국의 자연환경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생태·자연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1. 1등급 권역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이하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이라 한다)의 주된 서식지·도래지 및 주요 생태축 또는 주요 생태통로가 되는 지역

나.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경관이 특히 수려한 지역

다. 생물의 지리적 분포한계에 위치하는 생태계 지역 또는 주요 식생의 유형을 대표하는 지역

라.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하고 보전가치가 큰 생물자원이 존재·분포하고 있는 지역

마. 그 밖에 가목 내지 라목에 준하는 생태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2. 2등급 권역 : 제1호 각목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장차 보전의 가치가 있는 지역 또는 1등급 권역의 외부지역으로서 1등급 권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3등급 권역 : 1등급 권역, 2등급 권역 및 별도관리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외의 지역으로서 개발 또는 이용의 대상이 되는 지역
4. 별도관리지역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되는 지역 중 역사적·문화적·경관적 가치가 있는 지역이거나 도시의 녹지보전 등을 위하여 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② 환경부장관은 생태·자연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권역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등급을 정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생태·자연도를 작성함에 있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전문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사목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료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생태·자연도는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도에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그 밖에 생태·자연도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등 작성에 필요한 사항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자연도의 활용대상 및 활용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생태·자연도를 작성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국민의 열람을 거쳐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생태·자연도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작성한 생태·자연도를 기초로 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관할구역의 상세한 생태·자연도를 작성할 수 있다. 그 밖에 생태·자연도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5조(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의 보전대책 수립 및 국제협력) ①정부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생물자원의 적절한 관리와 국가가 가입한 생물다양성에관한협약·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및 물새서식처로서국제적으로중요한습지에관한협약(이하 "생물다양성에관한협약등"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보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서식지 및 서식지외에서의 보전
2. 생물자원의 보호·증식사업 등의 육성·지원
3. 생물자원보전시설의 운영, 생물다양성의 연구를 위한 전문 인력 및 시설의 확충
4. 생물자원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연구·기술개발
5. 생명공학적 변이생물체를 자연환경에 노출시키는 경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6. 그 밖에 생물다양성에관한협약등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정부는 국제기구 및 관련국 정부와 협조하여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술·정보 등의 교환에 노력하여야 한다. 생물다양성에관한협약등의 당사국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련된 기술의 습득 및 이전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고 생명공학의 관리 및 그 이익의 배분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36조(생물다양성의 연구·기술개발 등) ①정부는 자연환경의 조사, 생태계의 체계·기능·복원에 대한 연구,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서식지 및 서식지외에서의 보전, 생물자원의 관리 및 야생 동·식물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 교란 야생동·식물의 관리상황 등에 관하여 연구 및 기술개발을 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별도의 보전조치가 필요하거나 사회적·경제적·문화적·과학적 가치가 있는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분포상태·변화추이 등과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 사업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물다양성구성요소 등의 조사결과를 분석·평가·기록하여 그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생물자원의 보전에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보전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대상·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생물다양성관리계약) ①환경부장관은 다음의 지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감소, 습지의 조성 그 밖에 토지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1.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생물다양성의 증진이 필요한 지역
3. 생물다양성이 독특하거나 우수한 지역

② 환경부장관·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서 수익이 감소된 자에게 실비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③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그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3월 이전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자연자산의 관리

제38조(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환경의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2.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 또는 복구하기 위한 시설
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시설, 생태관찰을 위한 나무다리 등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관찰하기 위한 시설
4. 자연보전관·자연학습원 등 자연환경을 보전·이용하기 위한 교육·홍보시설 또는 관리시설
5. 그 밖의 자연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유지·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구역은 자연공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의 금액·징수절차 및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자연휴식지의 지정·관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관광단지·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에서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생태교육 등을 위하여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휴식지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지에 대하여는 미리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휴식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연 휴식지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유지·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연휴식지로 지정된 후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광단지·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식지의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0조(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거나 출입·취사·야영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해수욕장 등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장소에 인접한 숲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장소의 가치가 크게 감소되거나 상실되는 경우
2. 도로 또는 철도변에 있는 숲·거목(巨木) 등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경관적 가치가 크게 상실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제41조(생태관광의 육성) ①환경부장관은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자연친화적인 관광(이하 "생태관광"이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관광사업자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한 민간단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환경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여 생태관광에 필요한 교육, 생태관광자원의 조사·발굴 및 국민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42조(생태마을의 지정 등) ①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을 생태마을로 지정할 수 있다.

1. 생태·경관보전지역안의 마을
2. 생태·경관보전지역 밖의 지역으로서 생태적 기능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는 마을. 다만, 산림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촌진흥지역의 마을을 제외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마을을 지정한 때에는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주민소득증대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마을의 지정기준·지정절차 및 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시지역중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도시의 자연환경보전 및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생태축의 설정, 생물다양성의 보전, 자연경관의 보전, 바람통로의 확보, 생태복원 등 도시의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물·에너지를 적게 사용하거나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도록 하는 기술 또는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생태적 기술의 개발과 이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도시의 생물다양성 증진 등을 위하여 녹지와 소생태계의 조성 등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 또는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사항이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4조(우선보호대상 생태계의 복원 등)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조하여 해당 생태계의 보호·복원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주된 서식지 또는 도래지로서 파괴·훼손 또는 단절 등으로 인하여 종의 존속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경우
2. 자연성이 특히 높거나 취약한 생태계로서 그 일부가 파괴·훼손되거나 교란되어 있는 경우
3. 생물다양성이 특히 높거나 특이한 자연환경으로서 훼손되어 있는 경우

제45조(생태통로의 설치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 사업등을 시행하거나 인·허가 등을 함에 있어서 야생 동·식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생태통로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생태통로 설치를 위한 조사연구 및 생태통로 시범사업 또는 생태통로 설치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통로의 설치 대상지역 및 설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생태계보전협력금

제46조(생태계보전협력금) ①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자연자산을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다만,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

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을 제외한다. <개정 2006.10.4, 2007.4.11, 2007.5.17, 2008.3.28, 2010.1.27>

1.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2.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천탐사·채굴사업
3.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개발 사업으로 개발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4. 그 밖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자연자산을 이용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은 10억원의 범위 안에서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부과한다. 다만, 국방목적의 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생태계보전협력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의 일부를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징수절차·감면기준·단위면적당 부과금액 및 지역계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훼손된 생태계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계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의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6.10.4>

제47조(사업 인·허가 등의 통보) ①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허가 등의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납부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의 내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강제징수) ①환경부장관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납부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생태계보전협력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사람이 기한 이내에 생태계보전협력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49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용도)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제4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금액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으로서 산림 및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조성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이를 산림 및 산지 훼손지의 생태계복원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07.4.11>

1. 생태계·생물종의 보전·복원사업
2. 야생 동·식물보호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원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의 시행
4.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 보전을 위한 토지 등의 확보
5.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 등의 매수
6.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등의 설치 지원
7.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유보지역의 생태계 보전
8.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이행
9.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
10.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보호대상 생태계의 보호·복원
11.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통로 설치사업
12.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제50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지원) ①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 또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로부터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시행 및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에 관한 동의를 얻은 자(이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라 한다)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체자연의 조성, 생태계의 복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납부한 생태계보전협력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돌려줄 수 있다. 다만, 산림 또는 산지에서 시행하는 제4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인하여 부과된 생태계보전협력금에 대하여는 반환금 또는 반환예정금액의 범위 안에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산림 또는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훼손지 복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승인,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의 동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과 범위,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5.17>

제6장 보칙

제51조(관계기관의 협조) ①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과 자연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생물다양성의 가치와 기능을 평가하여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2조(토지등의 수용·사용)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결정·고시가 있는 때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53조(손실보상) ①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실시하고 있는 개발사업·영농행위 등을 할 수 없음에 따라 초래되는 재산상의 손실 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때에는 3월 이내에 청구인과 협의하여 보상할 금액 등을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환경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청구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54조(국고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의 사업에 대하여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연보호 관련단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호운동 지원 사업
2. 제20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인접지역 및 생태마을의 주민 지원 사업
3.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사업

4.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통로 설치사업
5. 제49조 각호의 사업
6.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제55조(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①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1. 자연환경의 실태 및 보전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2. 훼손된 생태계나 종의 복원, 소생태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
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영상물의 제작 및 출판 등 자연교육과 홍보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회비,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6조(자연상징표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종) ①국가는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자연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그 지역의 유형별로 자연상징표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상징표지의 일부를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중요 야생 동·식물 또는 생태계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종(象徵種) 또는 상징생태계로 지정하여 이를 보전·활용할 수 있다.

제57조(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1. 국제 자연환경보전단체·기구와의 협조와 교류
2.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보호
3. 그 밖의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자산의 보전

제58조(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①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지도·계몽 등을 위하여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회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사람 또는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의 위촉방법·활동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자연환경안내원) ①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휴식지 및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자연환경보전의 인식증진 등을 위하여 자연환경해설·홍보·교육·생태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연환경안내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안내원의 자격, 운영 및 활동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자연환경학습원) ①시·도지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호운동 활성화 및 국민들에 대한 자연환경보전 중요성의 인식증진 등을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하에 자연환경교육·연수·홍보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연환경학습원을 둘 수 있다.

② 자연환경학습원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②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2조 삭제 <2006.10.4>

제7장 벌칙

제63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핵심구역 안에서 제15조제1항(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연생태·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한 사람
2. 완충구역 안에서 제15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연생태·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한 사람
3. 제17조(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중지·원상회복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사람

제64조(벌칙) 전이구역 안에서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연생태·자연경관을 훼손시킨 사람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3조 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66조(과태료) ①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조치를 위반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6조(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
2.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3.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의 벌채, 토지의 형질변경, 출입·취사·야영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7297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태계보전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생태계보전지역은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한 시·도생태계보전지역은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생태계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

하여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생태계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으로 본다.

제4조 (재결신청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 고시된 사업의 재결신청 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한국자연보전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연보전협회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로 본다.

제6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② 산지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나목(10)중 “생태계보전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한다.

③ 야생동·식물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제5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④ 外國人土地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⑤ 草地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⑥ 環境犯罪의團束에관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동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유보지역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678호,2005.8.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84>생략

<85>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6호 및 제3항제3호중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경영계획"으로 한다.

<86>및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8014호,2006.9.27.> (하수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3>생략

<34>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오수 및 분뇨의 처리시설"을 "「하수도법」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로 한다.

<35>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8045호,2006.10.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지표(해양을 포함한다)"를 "지표(해양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제7호중 "육상생태계, 해양 그 밖의 수생생태계"를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해양생태계를 제외한다)"로 하며, 동조제14호중 "산·하천·습지·호소(湖沼)·농지·도시·해양 등"을 "산·하천·내륙습지·호소(湖沼)·농지·도시 등"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5호중 "산·하천·습지·농지·섬·해양 등"을 "산·하천·내륙습지·농지·섬 등"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중 "토지 또는 공유수면"을 각각 "토지"로 한다.

제46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을 제외한다.

제46조제6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훼손된 생태계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계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의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으로서 산림 및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조성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이를 산림 및 산지 훼손지의 생태계복원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61조제1항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해양수산관서의 장"을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62조를 삭제한다.

③ 내지 ⑥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8355호,2007.4.11> (광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제2호 및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16>내지 <20>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8466호,2007.5.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33>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8468호,2007.5.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전환경성검토 대상 개발사업의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2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요청하는 개발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5> 까지 생략

<51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및 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51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037호,2008.3.28> (환경영향평가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6조제2항제1호 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을 각각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③ 부터 <22>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9401호, 2009.1.30> (국유재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7> 까지 생략

<58>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국유재산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환(管理換)"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관리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59>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9763호, 2009.6.9> (산림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9> 까지 생략

<4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6호 중 "산림보호·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산림보호와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한다.

<41>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9774호, 2009.6.9>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1호 중 "지적법에 의한"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33> 부터 <4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9982호, 2010.1.27.> (광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제2호 중 "노천탐광"을 "노천탐사"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시행 2010. 5. 5] [법률 제10032호, 2010. 2. 4, 타법개정]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총서

2009-01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전략적 협력에 관한 연구	전성훈	7,500원
2009-02	세계경제위기와 미·중관계 변화 연구: 북한 핵문제에 미치는 영향	황병덕, 신상진	9,000원
2009-03	북한의 국력 평가 연구	전현준 외	10,000원
2009-04	북한경제의 시장화 실태에 관한 연구	임강택	9,000원
2009-05	21세기 한국의 동아시아국가들과 전략적 협력 강화방안	여인곤 외	10,000원
2009-06	북한체제 전환을 위한 전략적 과제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협력전략	배정호 외	10,000원
2009-07	북한 '변화'의 재평가와 대북정책 방향	박형중 외	10,000원
2009-08	북한 개방 유도 전략: 목표, 기본방향 및 단계별 과제	최진욱 외	10,000원
2009-09	북한주민 인권의식 고취를 위한 전략적 인권외교의 방향	홍우택 외	6,500원
2009-10	통일대비 북한토지제도 개편방향 연구	허문영 외	9,000원
2009-11	북한인권 침해구조 및 개선전략	이금순, 김수암	7,500원
2009-12	통일대계 탐색연구	조 민 외	8,000원
2009-13	Modernization and Opening-Up of North Korean Economy: Roles and Efforts of Neighboring Countries	김규륜 외	7,500원
2009-15	Peace-Keeping on the Korean Peninsula: The Role of Commissions	Gabriel Jonsson	20,000원
2010-01	북한 핵 보유 고수 전략의 도전과 대응	박형중 외	9,500원
2010-02	탈사회주의 경제이행 국가의 권력구조 유형과 개혁 경로: 포스트-김정일 체제에 대한 시사점	최진욱, 김진하	8,000원
2010-03	북한 개방화와 인권개선 방안연구	김국신, 김연수, 서보혁	7,000원
2010-04	북한의 체제위기와 사회갈등	조한범, 양문수, 조대엽	7,500원
2010-05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동북아전략 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통일외교전략	배정호 외	12,500원
2010-06	북한주민 인권의식 실태연구	이금순, 전현준	8,500원
2010-07	라진·선봉지역 물류분야 남북 협력방안 연구	김영윤, 추원서, 임을출	8,000원
2010-08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새로운 접근과 추진방안: 3대 공동체 통일구상 중심	박종철 외	11,500원
2010-09	통일한국의 정치체제	허문영 외	6,000원
2010-10	북한 핵에 대한 억지방향 연구	홍우택	5,000원
2010-11	북한의 포스트 김정일체제 전망	정영태 외	11,000원
2010-12	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조정아 외	17,000원
2010-13	북·중 경제관계와 남북경협의 대북 파급효과 비교분석	최수영	7,500원
2010-14	East Asian Community Building: Issue Areas and Perspectives of Regional Countries	김규륜 외	10,000원

2010-15(Ⅰ)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Ⅰ	김규륜 외	13,000원
2010-15(Ⅱ)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Ⅱ	김규륜 외	13,000원
2011-01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와 북한 핵문제	전성훈	14,500원
2011-02	북한군의 기강 해이에 관한 연구	이교덕 외	11,000원
2011-03	통일 진입과정에서의 북한 재건 방향	최진욱, 김진하	5,500원
2011-04	북한의 부문별 조직실태 및 조직문화 변화 종합연구	정영태	16,000원
2011-05	북한형사재판제도 연구: 특징과 실태	이규창, 정광진	8,000원
2011-06	북한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인식	김수암 외	12,000원
2011-07	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 협력적 위협감축(CTR)의 적용방안	박종철 외	10,000원
2011-08	대북한 핵협상 전략구상방향	홍우택 외	6,000원
2011-09	중국의 부상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허문영, 마민호	10,000원
2011-10	북한 핵의 국제정치와 한국의 대북 핵전략	배정호 외	11,000원
2011-11	평화통일을 위한 통일외교 전략	박영호 외	13,500원
2011-12(Ⅰ)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1부	황병덕 외	15,500원
2011-12(Ⅱ)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2부	황병덕 외	13,500원
2011-12(Ⅲ)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3부	황병덕 외	18,000원

학술회의총서

2009-01	북핵 문제 해결 방향과 북한 체제의 변화 전망	6,500원
2009-02	북핵 일괄타결(Grand Bargain)방안 추진방향	5,500원
2010-01	이명박 정부 2년 대북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8,000원
2010-02	독일 통일 20년과 한반도 통일비전	6,000원
2010-03	분단관리에서 통일대비로	5,500원
2010-04	독일 통일 20년과 한국의 통일대비	7,000원
2011-01	한반도 통일비전과 국제협력	4,000원
2011-02	제1차 샤이오 인권포럼-북한인권 실상과 개입방안	8,500원

협동연구총서

2009-15-01	북한개발지원의 포괄적 추진방안(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8,500원
2009-15-02	북한개발지원의 이론과 포괄적 전략	박형중 외	10,000원
2009-15-03	북한개발지원의 쟁점과 해결방안	김정수 외	10,000원
2009-15-04	북한개발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장형수 외	10,000원
2009-15-05	북한개발지원체제의 구축방안	이종무 외	9,000원
2009-15-06	지방자치단체의 북한개발지원 전략과 접근방법	양현모 외	10,000원
2009-16-01	복잡계 이론을 통한 북한의 정상국가화 방안 연구 (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6,000원
2009-16-02	북한체제의 행위자와 상호작용	이교덕 외	8,000원
2009-16-03	북한 계획경제의 변화와 시장화	이 석 외	9,000원
2009-16-04	탈냉전 이후 국제관계와 북한의 변화	민병원 외	8,000원

2009-17-01	비핵·개방·3000 구상: 추진전략과 실행계획(총괄보고서)	여인곤 외	7,500원
2009-17-02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및 추진환경과 전략	박종철 외	8,000원
2009-17-03	비핵·개방·3000 구상: 한반도 비핵화 실천방안	조 민 외	9,000원
2009-17-04	비핵·개방·3000 구상: 북한의 개방화 추진방안	함택영 외	7,500원
2009-17-05	비핵·개방·3000 구상: 남북경제공동체 형성방안	조명철 외	7,000원
2009-17-06	비핵·개방·3000 구상: 행복공동체 형성방안	이금순 외	7,500원
2010-14-01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2,000원
2010-14-02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上)	황병덕 외	14,000원
2010-14-03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下)	황병덕 외	13,000원
2010-15-01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총괄보고서)	여인곤 외	9,000원
2010-15-02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추진환경 및 전략과 실천방안	박영호 외	9,500원
2010-15-03	이명박 정부 대북통일정책의 세부실천방안	허문영 외	7,000원
2010-15-04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실천방안(1): 협력 네트워크 외교 분야	남궁영 외	7,500원
2010-15-05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 실천방안(2): 포괄적 실리외교 분야	전재성 외	9,500원
2010-15-06	이명박 정부 안보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이수훈 외	7,500원
2010-16-01	북한의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연구(총괄보고서)	이교덕 외	7,000원
2010-16-02	북한의 정치부문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전현준 외	7,500원
2010-16-03	북한 시장 진화에 관한 복잡계 시뮬레이션	조정아 외	14,000원
2010-16-04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방안	민병원 외	7,500원
2011-14-01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4,500원
2011-14-02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上)	황병덕 외	13,000원
2011-14-03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中)	황병덕 외	12,000원
2011-14-04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下)	황병덕 외	13,500원
2011-15-01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연구: 국제사회의 경험 분석(총괄보고서)	임강택, 이상연	11,000원
2011-15-02	부패의 개념과 실태 및 반부패 개혁	박형중 외	10,000원
2011-15-03	체제전환국의 시장 – 민주제도 건설 지원	박영호, 캐스린버티니, 린리	13000원
2011-15-04	국제사회의 개발지원전략과 협력체계 연구	장형수, 김석진, 김정수	9,500원
2011-15-05	수원국의 역량발전을 위한 개발협력 전략과 사례	이종무, 김태균, 송정호	9,500원
2011-15-06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사례와 시사점	이상준, 남경민, 임을출	9,000원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18권 1호 (2009)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8, No. 1 (2009)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8권 2호 (2009)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8, No. 2 (2009)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9권 1호 (2010)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9, No. 1 (2010)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9권 2호 (2010)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9, No. 2 (2010)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0권 1호 (2011)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0, No. 1 (2011)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0권 2호 (2011)		1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9	이금순 외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9	이금순 외	20,000원
북한인권백서 2010	박영호 외	2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0	박영호 외	20,000원
북한인권백서 2011	김국신 외	17,5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1	김국신 외	17,500원

기타

2009	Lee Myung-bak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Suh, Jae-Jean	5,500원
2009	김정일 현지지도 동향 1994-2008		15,000원
2009	The U.S.-ROK Alliance in the 21st Century	Bae, Jung-Ho, Abraham Denmark	10,000원
2009	북한의 주요현안과 한·미 전략적 공조	배정호	10,000원
2009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에 따른 미·중관계의 변화와 한반도	배정호	10,000원
2010	김정일 현지지도 동향 1994-2009		15,000원
2010	2010 독일통일백서		13,000원
2010	21세기 러시아의 국가전략과 한·러 전략적 동반자관계		10,500원
2010	Russian National Strategy and R.O.K.-Russian Strategic Partnership in the 21st Century		13,500원
2010	NPT 체제와 핵안보		13,000원
2010	Nuclear Security 2012: Challenges of Proliferation and Implication for the Korean Peninsula		15,000원
2010	통일 환경 평가(통일대계 연구 2010-01)	박종철 외	18,000원
2010	통일비전 개발(통일대계 연구 2010-02)	조민 외	12,000원
2010	독일의 평화통일과 통일독일 20년 발전상(통일대계 연구 2010-03)	황병덕 외	16,000원
2010	사회주의 체제전환 이후 발전상과 한반도통일-중국, 베트남 및 중동부 유럽 국가들의 사회주의 체제전환 중심 (통일대계 연구 2010-04)	황병덕 외	15,000원
2010	전환기의 북한과 통일담론(통일대계 연구 2010-05)	배정호 편저	11,000원

2010	한반도 통일과 주변 4국(통일대계 연구 2010-06)	최진욱 편저	11,000원
2010	Korean Unification and the Neighboring Powers (통일대계 연구 2010-07)	최진욱 편저	13,000원
2011	통일대비를 위한 북한변화 전략(통일대계연구 2011-01-1)	박형중 외	17,000원
2011	북한 변화를 위한 한·중 협력방안(통일대계연구 2011-01-2)	임강택, 김철, 민해봉	6,500원
2011	남북 친화력 확대 방안(통일대계연구 2011-02)	조 민 외	6,000원
2011	통일대비를 위한 국내과제(통일대계연구 2011-03)	박종철 외	13,000원
2011	통일외교 과제와 전략(통일대계연구 2011-04)	최진욱 외	13,000원
2011	US-China Relations and Korean Unification (Grand Plan for Korean Unification 2011-05)	최진욱 편저	12,000원
2011	통일 비용·편익 연구의 새로운 접근: 포괄적 연구요소의 도입과 대안의 모색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1)	김규륜 외	19,000원
2011	체제전환 비용·편익 사례연구(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2)	조한범 외	10,500원
2011	통일 비용·편익 추계를 위한 북한 공식경제부문의 실태 연구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3)	임강택, 양문수, 이석기	9,500원
2011	2011년 통일예측시계구축	박영호, 김형기	7,500원
2011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4국의 입장과 역할	배정호 외	6,500원
2011	Korean Unification and the Positions and Roles of the Four Neighboring Powers	배정호 편	8,500원
2011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북아 전략환경의 변화와 한반도	배정호 편	12,000원
2011	2011 Unification Clock: When We See a Unified Korea?	Park Young-Ho, Kim Hyeong Ki	4,000원
2011	알기쉬운 통일교육 12주제	허문영 외	15,0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09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9~2010	7,000원
2010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0~2011	7,000원

통일정세분석

비매품

2008-12	한·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2009-01	2009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최진욱, 전현준, 정영태, 조정아, 최수영, 박영호, 박형중
2009-02	하반기('08년 7월~12월) 북한의 정세 분석	최진욱, 임순희, 전현준, 정영태, 조정아, 최수영
2009-03	북한의 대남 비방 공세의 의도와 전망	최진욱, 전현준, 정영태
2009-04	북한의 제1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결과 분석	전현준
2009-05	2008년 북·중무역의 주요 특징	임강택, 박형중
2009-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 결과 분석	최수영, 정영태
2009-07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2010-01	2010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임강택 외

2010-02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2차 회의 결과 분석 최수영
2010-03 김정일 방중과 중국의 전략외교 배정호, 박영호, 전병곤
2010-04 2010상반기 북한정세 분석 보고서 정영태, 이교덕, 최수영, 임순희, 조정아
2010-05 독일통일 20주년 조망: 독일통일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황병덕
2010-06 야로슬라블 한· 러 정상회담 결과 분석 여인곤
2010-07 북한 3대 세습 후계구도 분석 및 정책변화 전망 김진하
2011-01 2011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최진욱 외
2011-02 미·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한국의 전략적 고려사항 배정호 외
2011-03 2011년 미·중 정상회담 평가: 동북아 및 한반도에의 함의 황병덕 외
2011-04 2009년 헌법 개정 이후 북한 노동법제 동향 이규창
2011-05 최근 북한 주민의 의식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임순희
2011-06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4차 회의 결과 분석 임강택, 최진욱
2011-07 중동 민주화 혁명과 한반도 전략적 함의 배정호, 박영호, 박재적, 이기현
2011-08 북한의 여성권·아동권 관련 법 제정 동향 임순희, 김수암, 이규창
2011-09 상반기 북한정세 분석 보고서 최진욱, 임강택, 임순희, 정영태, 김진하, 한기범

KINU정책연구시리즈

2009-01 신평화구상 실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 김규륜 외
2009-02(Ⅰ)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Ⅰ):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이론적 검토와 사례연구 손기웅 외
2009-02(Ⅱ)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Ⅱ):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존제안 검토 손기웅 외
2009-03 대북정책의 대국민 확산방안 조한범 외
2009-04 통일 예측 시계 구축 박영호, 김지희
2009-05 북핵일지 1955-2009 조 민, 김진하
2009-06 미국 대북방송 연구: 운용실태 및 전략을 중심으로 이원웅
2010-01 한반도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한 산림협력 법제 개선방안 예비연구 이규창
2010-02 2010년 통일예측시계 박영호 외
2010-03 북한 경제개발계획 수립방안 연구: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2010-04(Ⅲ)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Ⅲ): 정책제안 손기웅 외
2010-04(Ⅳ)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Ⅳ):
2010년 「코리아 접경포럼」 자료집 손기웅 외
2011-01 재스민혁명의 분석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박종철 외
2011-02 창지투(長吉圖) 선도구와 북한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 과제 림금숙
2011-03 6자회담과 남북관계: 전망과 대책 박종철 외
2011-04 보호책임(R2P)의 이론 및 실행, 그리고 한반도에의 함의:
리비아 및 코트디부아르 사태를 중심으로 조정현
2011-05 남북러 가스관 사업의 효과, 쟁점, 과제 이윤식
2011-06 DMZ 총람: 개요, 정치·군사적 현황 손기웅 외
2011-07 DMZ 평화적 이용의 국가적 의미 손기웅 외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2009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4권 1호	박영호, 이금순, 김수암, 홍우택
2009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4권 2호	박영호, 이금순, 김수암, 홍우택
2010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5권 1호	김국신, 김영윤, 전현준, 이금순, 이규창
2010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5권 2호	김국신, 전현준, 이금순, 이규창
2011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6권 1호	김수암, 전현준, 이규창
2011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6권 2호	김수암, 김국신, 이규창

Studies Series

2009-01 The Evaluation of Regime Stability in North Korea:Scenario Workshop
Choi Jin Wook, Kim Kook Shin, Park Hyeong Jung, Cheon Hyun Joon, Cho Jeong Ah
Cha Moon Seok, Hyun Sung Il

2009-02 Developing Inter-Korean Economic Relations for the 'Advancement of the Korean Peninsula'
Lim Kang Teag, Kim Kyu Ryoon, Jang Hyung Soo, Cho Han Bum, Choi Tae Uk

2009-03 The Everyday Lives of North Koreans
Cho Jeong Ah, Suh Jae Jean, Lim Soon Hee, Kim Bo Geun, Park Young Ja

2009-04 North Korea's Regime Maintenance Policy Since the Kim Jong-il Regime and Prospects for Change
Chon Hyun Joon, Jeung Young Tae, Choi Soo Young, Lee Ki Dong

2010-01 Strategy for Encouraging North Korean Opening: Basic Direction and Sequential Tasks
Choi Jin Wook, Lee Kyo Duk, Cho Jeong Ah, Lee Jin Yeong, Cha Moon Seok

2010-02 Unification Clock: Predicting Korean Unification Park Young Ho

2011-01 A New Approach to the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
Park Jong Chul, Hong Woo Taek, Lee Kyu Chang, Kim Philo, Chun Chae Sung,
Cho Seong Ryoul, Hong Ihk Pyo, Hwang Sun Hye

기타

2010	2010 Unification Clock: When Will We see a Unified Korea	Park Young Ho
2010	In Search of New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Kim Kyu-Ryoon

통일연구원 회원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통일정세분석 등 우송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라) 구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가)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출판정보관리팀 도서회원 담당자(pcm@kinu.or.kr)
나)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변경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신청서

성 명		입금자 (입금일자)		
근 무 처				
	직 위			
간 행 물 받을 주소	(우편번호 :)			
연 락 처	전 화		내선 전화	
	핸드폰		FAX	
	전자메일			
전 공 및 관심분야				
회원구분	학생회원 ( ) 일반회원 ( ) 기관회원 ( )			

본인은 통일연구원의 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 본 신청서를 보내주십시오.
(우142-728)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E-Mail: pcm@kinu.or.kr

※ 신한은행 온라인 140-002-389681 (예금주: 통일연구원)

KINU 정책연구시리즈 11-06

DMZ 총람:
개요, 정치 · 군사적 현황

KINU 통일연구원

93340
9 788984 796188
ISBN 978-89-8479-618-8